

정책연구 2012-3

한국 다문화가족 정책연구 III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머 리 글

우리나라는 과거 세계 최빈국에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로서 많은 나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며 이주해 살고 싶은 나라가 되었으며, 이러한 국가위상의 변화는 급격한 국제결혼이주자와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결혼이주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은 경제적 문제, 육아 및 자녀 교육문제, 언어와 문화 차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혈연을 강조하면서 타 문화에 대해 배타적인 경향이 강하며, 이와같은 사회적 편견은 다문화가족에게는 차별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우리정부와 사회의 노력은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과 제도의 효과는 정책수요자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입장에서 살펴봄으로써 보다 더 효과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장중심적인 정책연구와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해결의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정책과 제도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사회의 다문화가족이 겪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 및 애로사항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지원 방안의 제시를 위하여 저희 연구원은 2010년도의 9개, 2011년도의 8개 정책과제와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에 이어 금년에도 9개의 정책연구와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충청다문화포럼을 발족하여 5회에 걸친 포럼에서 저희 연구원의 정책연구와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거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본 정책연구와 실태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연구원의 변평섭 이사장님, 이인구 상임고문님, 이사님, 후원협찬기관 여러분과 관계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정책연구와 실태조사를 수행한 연구원의 연구위원과 전문가 여러분과 원활한 연구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운 연구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12월

사단법인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원 장 조 원 권

다문화가정 학생의 인적자원 개발 전략

연구책임자: 백 두 주(라오스 수파노봉대학교)

연구 요약

I.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세계화의 진전은 자본의 이동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동을 가속화시켜 전 세계적으로 이민인구(foreign-born)의 증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이민인구의 증가율도 점차 높아져 국경을 초월한 전 세계적 인구 이동은 '비가역적'(irreversible) 사회현상이 되었음. 인구의 이동은 가치, 문화, 행위양식, 사회적 관계 등의 새로운 재편을 초래하며, 각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선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는 한국사회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우리 사회의 성격을 '단일문화' 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촉진시키고 있음. 국내 외국인수는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외국계 주민 자녀 등 외국인 주민수의 증가율도 OECD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은 전 사회적인 변화를 초래함. 새로운 문화의 유입은 기존의 문화와 갈등(충돌), 변형, 조화, 융합을 이루면서 다문화사회의 특성을 나타냄. 본 연구에서 주목한 연구대상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인적자원 개발 및 이를 둘러싼 사회제도(정책) 및 환경과 관련된 것임.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임.
- 현재 다문화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복합위기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학생을 '주변적 존재' 혹은 교정해야 할 사회적 존재로 간주하는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소중한 인재(인적자원)로 성장, 활용할 수 있는 '긍정의 인식', 즉 이들이 갖는 특성(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인적자원 개발전략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본 연구는 다문화학생들의 글로벌 인적자원화라는 정책적 수요에 따라 기획된 것임. 즉,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인적자원 개발전략 및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II. 기존 연구 검토 및 연구내용

1. 기존연구검토

- 다문화와 관련한 개념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통상적인 의미에서 다문화주의란,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인종, 민족 집단들이 문화적 차이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특성을 가짐. 소수집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의 언어, 가치, 행동양식, 정체성 등 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함. 다문화정책은 차별적 배제모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동화모형(assimilationist model), 다문화주의 모형(multicultural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러나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정책기조는 동화주의에 기초해 왔기 때문에 진정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는 평가가 다수임.
- 다문화주의에 대한 사회적 '편익'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진전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다른 문화와의 공존이 초래할 미래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한편,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기존연구의 대부분은 이들의 '문제 및 부적응'에 초점을 맞춰왔음. 이들 연구들이 제안한 정책방안은 정부정책에서 반영되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화'를 위한 근거가 되기도 했음.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정책의 '대상화'에 국한되었을 뿐 '주체화' 혹은 '역능화'(empowerment)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계속되었음.
- 최근 들어, 다문화학생의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연구가 제출되고 있음. 이들 이전과 달리,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보유한 잠재적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잠재적 역량에 기초해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언어와 문화적 차이는 '문제'라기 보다는 세계화 시대에 오히려 유용한 인적자원의 토대가 된다는 것임. 즉 다문화가족 부모 및 자녀들은 '다문화주의의 전파자(propagators)이며, 다언어 환경을 갖추고 있어 글로벌 환경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함.

2. 연구내용

- 본 연구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됨. 첫째는 현황 및 특성분석임. 다문화가정 자녀(학생)의 현황을 국가통계자료 등을 통해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둘째, 정책(전략) 분석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중앙정부, 기업들의 최근 정책 및 전략을 분석했음. 셋째, 정책제안임. 위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실행가능하고,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Ⅲ. 다문화가정 학생의 실태분석

1. 외국계 주민수의 현황 및 변화추이

- 2012년 1월 현재 외국인 주민 수는 1,409천명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했으며, 이는 주민등록인구의 2.8%에 해당됨. 이중 외국인 근로자가 4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가 15.7%로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자(한국계 중국인 포함)가 55.4%로 절반을 넘고 있으며, 다음으로 베트남(11.5%), 미국(4.9%), 남부아시아(4.5%)순임. 한편,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의 국적별 현황은 중국(54.9%), 동남아(31.8%)순임. 시계열적 변화추이는 중국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동남아지역이 증가하는 추세임.
- 지역별 전체 주민대비 비중은 서울이 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기도 3.6%, 충남 3.2%순임. 상당수의 외국인들은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및 그 인근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외국인 주민자녀수 역시 대체적으로 동일한 지역적 분포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외국인 주민수의 지역별 분포현황은 지역별 거주외국인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생산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 정책자원의 지역별 배분과정에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2. 결혼이민자 현황분석

- 2010년 현재 전체 혼인건수 중 다문화 혼인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8%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전체 출생아는 2008년 465,892명에서 2010년 470,171명으로 0.9% 증가한 반면, 다문화 출생아수는 2008년 13,443명에서 2010년 20,312명으로 51.1%로 대폭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
- 국내 체류 결혼이민자수는 2002년 이후 매년 28%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2007년부터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었으며, 2009년에는 결혼이민자 국적국의 국제결혼제도 강화 등의 영향으로 현저히 감소하여 전년대비 2.1% 증가하는데 그침. 2010년도에는 국제결혼희망 내국인 증가 및 각 국의 국제결혼제도 정상화 등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사증 발급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조치 등으로 인하여 증가율이 전년대비 2.1%로 다시 하락했음. 이를 통해 제도적 환경변화에 따라 증가율이 크게 영향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9년~2020년까지 국제결혼이민자수는 연평균 6.7% 증가하여 총 110.0%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중국 중심에서 다국화(동남아시아국가 등) 경향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수 증가율도 같은 기간 캄보디아 1107.4%, 베트남 456.6% 등 대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러한 결혼이민자의 자녀수의 증가 속도 및 규모는 보육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등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3.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 2012년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46,954명임. 이는 2006년에 비해 431.5% 증가한 수치임. 전체 학생대비 다문화학생 비중은 2008년 0.26%에서 2014년에는 1.1%로 추산되고 있음. 즉 한국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다문화학생들의 폭발적인 증가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임.

- 다문화가정 학생들 중 94.4%는 국제결혼가정 학생이고, 외국인 근로자가정 학생은 5.6%임. 학급별로는 초등학생 72.0%, 중학생 20.5%, 고등학생 7.5%이지만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상급학생수가 한동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지역별 분포를 보면, 국제결혼가정 학생들 중 21.8%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14.4%), 전남(8.4%) 순임. 부모 출신국 별로 보면 일본이 32.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 17.1%, 필리핀 16.9%임. 현재로서는 일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향후에는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도입국 학생 수는 모두 4,288명(9.7%)이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출산한 학생(40,040명, 90.3%)들임.

IV. 다문화가정 학생의 인적자원 개발정책

1. 중앙정부

-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의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정부차원의 최초 종합대책이었음. 특히 다문화가정 학부모 및 자녀들을 다문화주의 전파자, 다언어를 구사하는 '글로벌 인적자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취지는 이후 제시된 정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음. 보건복지가족부(2008년)의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은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에 맞춰 상호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의의가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2009년)의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계획'은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추진이라는 점에서 기존 정책들과 다소 차이가 있음.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를 중요한 인적자원 개발대상으로 본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정책은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취업기회 확대는 물론 다문화학생들이 부모출신국의 언어를 제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중효과가 있음. 최근 이중언어 교육은 여성가족부(2012년)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음. 주요 정책목표는 다문화가족 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수업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는 것

임. 그러나 분석결과, 정책추진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더라도 다문화가정 학생 수에 비해 이중언어 강사수가 너무 부족해 정책수혜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 편차도 심하게 나타났음.

- 교육과학기술부(2012년)의 '다문화교육 선진화 방안'은 그동안 추진되었던 정책을 종합하여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정책적 비전은 '다양성을 이해하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양성'이며, 목표는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다문화 친화적 학교 육성'임. 이 정책에서도 이중언어 교육을 활성화하여 다문화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자 함. 부족한 이중언어 강사수도 대폭 확충하고 소수언어에 대한 배려 역시 주목할 만함. 교육과학기술부(2012년) 글로벌 브릿지(global bridge) 사업은 대학의 역량을 활용한 다문화학생들의 글로벌 인재화 사업임.

2. 기업

가. 하나금융그룹: Hana Kids of Asia

- 하나금융그룹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및 문화지원을 위한 'Kid of Asia' 프로젝트를 시행중임. 이 프로젝트는 이중언어 구사를 위한 체계적인 언어교육,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문화교육지원 등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주요 사업은 토요베트남학교, 심리정서지원사업, 교재개발 및 연구조사 사업으로 구분됨.

나. LG그룹: LG와 함께 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

- 'LG와 함께 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2010년)는 다문화가정 학생 중 과학과 이중언어 분야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키워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전문교수진의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내용임. 현재 과학인재양성은 KAIST에서, 언어인재양성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진행 중임.

다. STX 그룹: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

- STX그룹은 기존 한국어교육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한국어 교육을 넘어 다양한 언어가 상징적으로 어우러져 문화적 다양성을 확장하는 차원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현재 7개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운영 중에 있으며 도서관은 다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사회적 공간’을 제공함. 도서관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를 말하고, 만들고, 놀이로 체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면서 다양성의 가치를 배워나가게 됨. 즉, 국적과 인종은 달라도 함께 육아를 고민하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줌.

라. POSCO: 이중언어 역량강화를 위한 언어영재 교실사업

- POSCO는 2010년부터 다문화가정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MOU를 체결하고,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특히 한국외국어대와 ‘이중언어 역량강화를 위한 언어영재 교실사업’ 진행과 함께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POSCO 패밀리사 방문을 통한 직업체험, 직원들의 멘토링 봉사활동도 적극 지원할 방침임.

V. 다문화가정 학생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방안

1.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수립

- 다문화가정은 사회경제적 빈곤화의 ‘위험요인’과 글로벌 성장이라는 ‘기회요인’이 동시에 존재함. ‘위험요인’을 통제하고, ‘기회요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문화학생의 성장배경 차별화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정책 수립의 수립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정책실행은 정책효과 소실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자원투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밀한 계획 및 실행전략 마련이 요구됨.

2.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정책역량 강화

-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에 자치단체의 정책기획 및 수행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주요 사례들과 달리,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다문화가정 정책은 매우 빈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자치단체 정책을 분석, 평가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인적자원개발의 정책기획 및 수행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함. 이를 위한 정책생산 및 집행, 예산과 관련된 권한을 ‘하향분권화’할 필요가 있음.

3. 해외진출 기업의 인적자원화

- 현재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현지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 즉 글로벌 기업의 해외지사 근무를 위한 인적자원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잠재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정부, 기업, NGO 등이 앞서 살펴본 이중언어 및 문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이후 이들의 취업영역을 국내에 국한시키지 않고 부모출신국으로 확장해 나간다면 ‘글로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이는 기업들에게는 글로벌 경쟁력을,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는 취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4. 해외 공관의 적극적 역할

- 해외주재 한국대사관 등 해외공관들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현지 경험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지 정부 및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제도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함. KOTRA는 전 세계 9개 지역본부, 81개국에 118개의 해외무역관을 가지고 있음. KOTRA는 사회공헌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현지 언어 및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전 세계에 산재한 KOTRA 해외무역관은 현지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해외중심기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임.

5. 다문화학생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사회적 책임투자 활성화

- 최근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에서 기업의 역할이 되고 있는 추세임. CSR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글로벌 인재육성 전략의 연계를 통해 부족한 정부의 정책자원을 보완할 수 있음. 기업특유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토대로 한 '교육 기부'의 활성화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글로벌 인재육성 전략을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임. 대부분 기업들의 경우 CSR 관련 부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만큼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동시에 NGO에 대한 프로젝트형 지원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6. 다문화가정 학생의 부모출신국 유학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이중언어 및 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 출신국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 역시 중요함.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또한 현장의 정책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광역시도별 장학기금 조성이 필요함. 장학기금 관리주체는 광역시도 자치단체가 맡되, 기금출연은 자치단체 자체 기금, 지역 내 개인, 개인과 단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지역 내 대학들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해외경험 및 유학을 위한 해외협력대학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차 례

I.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II. 기존 연구 검토 및 연구내용	5
1. 기존연구 검토	5
2. 연구내용	9
III. 다문화가정 학생의 실태분석	11
1. 외국계 주민수의 현황 및 변화추이	11
2. 결혼이민자 현황분석	12
3. 다문화가정 학생현황	15
IV. 다문화가정 학생의 인적자원 개발정책	21
1. 중앙정부	21
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교육인적자원부, 2006)	24
나.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24
다.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26
라. 언어영재교실(여성가족부, 2012년)	27
마. 다문화학생 교육선진화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30
바. Global Bridge 사업(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33
2. 기업	34
가. 하나금융그룹: Hana Kids of Asia	34
나. LG그룹: LG와 함께 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	36
다. STX 그룹: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 건립	40
라. POSCO: 이중언어 역량강화를 위한 언어영재 교실사업	44

V. 다문화가정 학생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제안	45
1.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수립	45
2.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정책역량 강화	45
3. 해외진출 기업의 인적자원화	46
4. 해외 공관의 적극적 역할	46
5. 다문화학생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사회적 책임투자 활성화	47
6. 다문화가정 학생의 부모 출신국 유학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48
 참 고 문 헌	 49
 <부표 1> 국제결혼가정 학생들의 부모 출신국별 현황(2011년)(단위: 명, %)	 52
<부표 2> 세부사항별 외국인 수 현황(2012년 1월 현재)	53
<부표 3> 국적별 외국인 수 현황(2012년 1월 현재)	54

표 차 례

<표 III-1> 외국계 주민 및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수 변화추이	11
<표 III-2> 다문화 혼인 및 출생아 수 현황	12
<표 III-3> 결혼 이민자수 현황	13
<표 III-4> 지역별 결혼이민자 분포 현황(명, %)	13
<표 III-5> 결혼이민자 및 자녀수의 장래추계 결과	14
<표 III-6> 전국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및 증가 추이(2006년~2012년)	16
<표 III-7> 국제결혼가정 학생들의 지역별 분포 현황(2012년)	17
<표 III-8> 국제결혼가정 학생의 분류(국내출산 자녀/동반중도입국) 현황(2012년)	18
<표 III-9> 출신국적별/연령별 중도입국 자녀 현황(2012년)	19
<표 IV-1>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의 정책분야별 주요사업 현황	21
<표 IV-2> 중앙정부의 다문화학생을 위한 주요 정책	23
<표 IV-3> 다문화가정의 생애주기별 7대 정책과제(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25
<표 IV-4>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2009년)	26
<표 IV-5> 이중언어강사 자격 및 역할	28
<표 IV-6> 다문화학생 교육선진화 방안(2012년)	30
<표 IV-7> 토요 베트남 학교 참여자 현황	35
<표 IV-8> 과학인재양성교육 개요(LG-KAIST)	37
<표 IV-9> LG 사랑의 다문화학교 언어인재 양성과정 프로그램 주요 내용	39
<표 IV-10> LG 사랑의 다문화학교 이중언어과정 프로그램 소개	40
<표 IV-11>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의 주요 프로그램 현황	42

그림 차례

[그림 IV-1] 지역별 이중언어 강사 배치 현황(2012년)	29
[그림 IV-2] 지역별 이중언어 강사 1인당 다문화가정 학생수 현황(2012년)	29
[그림 IV-3] Hana Kids of Asia 사업수행 모델	35
[그림 IV-4] LG-KAIST 과학인재양성 프로그램	38

I.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세계화의 진전은 자본의 이동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동을 가속화시켜 전 세계적으로 이민인구(foreign-born)의 증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2010년 현재 자신의 출생지가 아닌 국가에서 거주하는 인구는 2.1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69억명)의 3.1%를 차지하고 있음(최홍 외, 2010). 이민인구의 증가율도 1990년~2000년까지는 연평균 1.4% 증가수준에 있었으나, 2001-2010년 기간에는 1.8%로 높아지는 등 국경을 초월한 전 세계적 인구 이동은 '비가역적(irreversible)' 사회현상이 되었음. 인구의 이동은 가치, 문화, 행위양식, 사회적 관계 등의 새로운 재편을 초래하며, 각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선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는 한국사회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 1990년대 초반부터 시행된 산업연수제도와 2000년 이후 급증한 결혼이주여성의 유입은 우리 사회의 성격을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촉진시키고 있음. 2012년 1월 현재 국내 외국인수는 1,409,577명으로 한국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등 '정주형 이주민'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외국계 주민 자녀도 168,583명에 이룸. 최근에는 '중도·동반입국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들의 수는 약 4,288여명으로 집계됨. 특히 2008년~2011년 기간 동안 외국인 주민수의 증가율은 18.8%를 나타내고 있고, 이는 OECD 평균 5.9%에 비해 매우 높은 증가율임(교육과학기술부, 2012b; 관계부처합동, 2012; 윤인진, 2012).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의 '압축적 이행'을 경험하고 있음.
-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은 전 사회적인 변화를 초래함. 새로운 문화의 유입은 기존의 문화와 갈등(충돌), 변형, 조화, 융합을 이루면서 다문화사회의 특성을 나타냄.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연구대상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인적자원 개발 및 이를 둘러싼 사회제도(정책) 및 환경과 관련된 것임. 결혼이민자는 2008년 145,077명에서 2011년 205,352명으로 41.5%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인구수(결혼이민자+배우자+자녀)도 같은 기간 340,472명에서 550,974명으로 61.8% 증가했음. 본 연구의 직접적 연구대상인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2008년 58,007명에서 2011년

151,154명으로 160% 급증했음(김정근 외, 2012).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우 2015년 201,942명, 2020년 302,692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들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임.

-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조건은 매우 취약한 상태임. 다문화학생은 정체성의 혼란은 물론이고, 집단따돌림, 소극적 대인관계, 취약한 학교학습능력, 낮은 상급학교의 취학을 등 사회부적응 및 사회적 차별에 더하여 다문화 가족이 처한 경제적 빈곤화가 자녀들에게도 대물림되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김승권 외, 2010), 다문화가족의 59.7%가 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에 불과했음. 국민의 다문화수용성지수(KMAI)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¹⁾ 다문화학생들의 사회적 토대는 취약한 상태임(안상수 외, 2012).
- 현재 다문화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복합위기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학생을 ‘주변적 존재’ 혹은 교정해야 할 사회적 존재로 간주하는 ‘부정의 인식’에서 벗어나 소중한 인재(인적자원)로 성장·활용할 수 있는 ‘긍정의 인식’, 즉 이들의 갖는 특성(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인적자원 개발 전략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다행히 최근 정부와 민간영역에서도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음.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의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대책’은 정부차원에 마련된 최초의 종합지원 대책이었으며, 2007, 2008년 연이어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계획’을 발표했음.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계획’은 다문화학생 지원의 흐름이 전환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정부는 그동안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이 다문화가정 학생 등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지원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 출신국 이해, 리더십

1) 우리나라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아직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안상수 외, 2012).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을 평가구성요소로 하여 국민 다문화수용성지수(KMAI)를 산출한 결과, 한국국민의 다양성 지수는 51.7점에 불과했음. 특히 외국 이주민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부담, 사회문제 야기, 범죄율 증가 등의 순으로 위협인식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등 역량강화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시작했음(교육과학기술부, 2009). 보건복지가족부도 2008년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을 내놓으면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습발달과 역량개발 강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음(이혜승, 2010).

- 이와 같은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흐름은 '다문화학생 교육선진화 방안'(2012년)으로 집약되었음. 지금까지 다문화학생은 소외·취약계층으로 보아 '지원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다문화학생 교육선진화 방안'은 다문화학생이 가지고 있는 적성과 재능, 강점을 개발하여 한국 사회의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환적 계기로 평가됨.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글로벌 브릿지(global bridge) 사업은 다문화학생의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대학이 결합한 의미있는 사례임. 다문화 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이 갖는 이중 언어(bilingual language)능력 등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한국과 해당국(부모출신국)을 연결하는 차세대 글로벌 리더 육성 프로그램임.
- 정부정책의 전환과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대기업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다문화학생의 '글로벌 인재화'를 연계시키고 있다는 것임. LG그룹의 'LG와 함께 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2010년 이후)는 다문화 학생중 과학과 이중 언어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워,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KAIST 등 전문교수진의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지금까지 기업들이 한국어 교육이나 기초학습관련 교육, 물품지원 등 다문화가정 및 학생들에 대해 '소극적 지원'에 국한되었다면, LG의 사례는 다문화학생들의 글로벌 인재화, '한국의 글로벌화'를 위한 중요한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적극적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됨.
- 이외에도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이중 언어 및 문화지원을 하는 하나금융그룹의 'Kids of Asia' 등도 같은 맥락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도 새로운 시도로써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POSCO는 2011년부터 다문화가정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성공적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는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활용한 창업 등 진로모색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즉, 다문화학생의 비약적 증가 경향 속에서 최근의 다문화학생 관련 정책 및 지원 추세는 이들을 '소극적 관리대상'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다문화라는 환경적 조건 속에서 잠재력이 무한한 글로벌 인적자원으로 재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이전과 다른 다문화학생의 글로벌 인적자원 육성전략에 관한 체계적인 사회정책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임.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수요에 따라 기획된 것임.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인적자원 개발전략 및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Ⅱ. 기존 연구 검토 및 연구내용

1. 기존연구 검토

- 다문화와 관련한 개념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통상적인 의미에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란,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인종, 민족 집단들이 문화적 차이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특성을 가짐. 소수집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수 집단이 소수집단의 언어, 가치, 행동양식, 정체성 등 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들의 권리에 대해 우선적 관심을 가짐. 따라서 다문화사회는 시민 또는 국민으로서 기본권 취득과 행사에 있어 인종과 민족, 국적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를 의미함.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다문화사회에서는 사회 내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를 단일문화로 강제적(의도적) 통합을 하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게 됨(김지현, 2008; 김혜순, 2008; 윤인진, 2008; 유희정 외, 2009).
- 다문화정책 유형 역시 학자마다 상이하게 구분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음(Castles & Miller, 2003; Martiniello, 2003; 최웅선 외, 2012). 첫째, 차별적 배제모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으로 유입국의 필요(예를 들어, 자국 국민들의 기피하는 노동시장 분야)에 의해서만 이주민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사회정치적 권리는 부여하지 않고 배제함. 둘째는 동화모형(assimilationist model)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여 그들이 출신국의 언어, 사회, 문화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유입국의 국민(주류사회의 일원)과 차이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정책유형임. 상호공존보다는 일방적 통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용광로'(melting pot)로 비유됨. 그러나 차별적 모형에 비해 국적, 시민권 획득, 귀화 등은 다소 유연한 특성을 보임. 마지막은 다문화주의 모형(multicultural model)으로 이주민들이 그들의 국가의 언어, 정체성, 문화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주류사회 구성원과 새롭게 유입된 이민자들은 차별 없이 대등하게 '공존'함. 다양한 구성요소(민족, 인종, 종족 등)들이 혼합되어 있지만 각자 고유한 정체

성과 특성을 잃지 않고 배열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샐러드 그릇’(salad bowl)으로 비유되기도 하며(Vertovec, 1996), 다양성을 인정받으면서 기존 사회와 융화되어 다문화사회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융화주의’(harmony)로 표현되기도 함(김정근 외, 2012; 최홍 외, 2010).

-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를 표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정책의 기초는 동화주의에 기초하여 진정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는 평가가 다수임(윤인진, 2008; 2012; 이로미·장서영, 2010). 즉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해야 한다는 다문화사회의 구호는 추상적 담론 수준에 불과했으며, 다양한 문화의 상호공존이 아니라 이민자들의 ‘한국화’에 치중했다는 것임.
- 다문화주의가 주는 사회적 ‘편익’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음. 최홍 외(2010)는 다문화 진전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다른 문화와의 공존이 초래할 미래의 ‘비용’을 최소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외국의 사례에서도 단순히 노동력을 메우기 위한 임기응변식 정책, 즉 차별적 배제모형에 기초한 다문화정책은 초기에는 그에 따른 편익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민자가 늘수록 공공지출의 부담, 이질적 문화간 갈등, 이민인구 빈곤화로 인한 사회적 이탈증가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고비용’이 발생한다고 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샐러드 그릇’식의 다문화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기존연구의 거의 대부분은 이들의 ‘문제 및 부적응’에 초점을 맞춰왔음(서문희 외, 2009; 서현·이승은, 2007; 성상환 외, 2010; 이재분 외, 2008; 전해정, 2008; 정일선·배옥현, 2011; 정은희, 2004; 장하성·우룡, 2007; 조영달, 2006; 홍기대, 2011). 이들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직면한 한국어 습득의 지연, 낮은 학습역량, 학교부적응, 정체성 혼란 및 정서불안, 낮은 사회성 및 사회적 관계형성의 문제, 사회적 차별 등의 문제를 규명해냈다는 의의가 있음. 또한 이들 연구들이 제안한 많은 정책방안은 정부의 다문화정책에도 반영되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한국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근거가 되기도 했음.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거리’로 간주되는 경향이 많았으며, ‘사회 병리적’ 문제

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는 소극적 정책이 주를 이루는 효과를 보였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정책의 '대상화'에 국한되었을 뿐 '주체화' 혹은 '역능화'(Empowerment)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계속되었음¹⁾.

○ 최근 들어, 다문화학생의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연구가 제출되고 있음. 이들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보유한 잠재적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잠재적 역량에 기초해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양계민 외(2009)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이중 언어 능력을 이점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진로관련 계획이 비구체적이며 이중 언어가 가능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지닌 청소년은 많지 않다는 조사결과를 제출했음.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은 기존 교과목 또는 숙제지도라기보다는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 성취동기 프로그램,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시함. 다문화학생의 가장 큰 특징은 이중 언어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임.

○ 박정은(2007; 2009)은 캐나다의 다문화 언어정책 사례연구를 통해, 모어(母語)로 육아하는 것은 어머니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들의 발달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음. 어머니는 언어적 경험이 풍부한 자신의 모국어로 자녀를 양육할 때 가족 간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효율성 높다고 보았음. 모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자녀들의 경우 학습능력이 높아지고 제2, 제3 언어 습득도 용이하다는 것이 분석의 결과임. 문경희(2007)는 호주사례연구를 통해 1980

1) 양계민 외(2011)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에 대한 중단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비(非)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발달 및 성장과정에서 일반가정 청소년과 보이는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했음. 연구결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발달 특성은 어머니 출신, 어머니의 교육수준 및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며 부모의 배경적 심리적 특성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심리해동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이라는 동일한 다문화집단에 속한 학생 일지라도 개인이 속한 다양한 배경변인에 따라 발달의 양태가 매우 상이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다문화'라는 한 가지 차원의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규정하고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같은 맥락에서 조영달(2010)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지원과 관련하여 학급별 차별적 정책을 제안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유치원급은 '공동체적 소통과 상호이해의 바탕 마련', 초등학교급 '자아정체성 함양 및 미래를 향한 진로교육', 중학교급 '자아정체성 함양 및 미래를 향한 진로교육', 고등학교급 '학업성취수준 향상과 진학 및 진로교육' 등으로 차별적 지원을 제안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수요를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년대 후반부터 호주연방·주정부는 다문화배경을 가진 청소년의 언어와 문화적 차이가 ‘문제’라기보다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시대에 호주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인적 자원’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설명을 함.

-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 언어 사용 및 환경에 관련된 국내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신혜정, 2007; 이영주, 2008; 안은미, 2007). 이 연구들은 이중 언어 환경 및 습득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음. 이중 언어와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는 사회적 심리적 적응과 관련하여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어머니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많이 알고,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따라서 이중 언어와 이중문화의 특성을 가질수록 자녀의 학교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이중 언어 환경에서 초기 발달지체를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를 ‘결핍’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박정은, 2007; 양순미, 2007; 이정민, 2008; 이민경, 2010), 오히려 이중 언어 학습지원을 통해 다문화학생들의 이중 언어 능력을 극대화하여 글로벌 인재로 육성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안을 함.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다문화학생들이 보유한 장점 및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면 세계화 시대에 국가를 위한 매우 유익한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다문화학생들의 이와 같은 특성을 토대로 ‘인적자원’ 개발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연구들도 진행되었음. 이남철 외(2009)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인재개발을 위해서는 법·제도 및 국가정책의 방향성 정립,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체제 강화 및 인식전환, 맞춤형 교육의 확대,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다문화 프로그램 강화, 다문화가정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활용할 것을 제안했음. 이재분 외(2008) 역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습자와 학습자의 생태학적 환경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바탕으로 총체적인(holistic) 접근, 민족주의 폐쇄성이 아닌 보편적 시민성 강조, 분리주의 교육이 아닌 다수자 인식전환을 위한 융합적 교육, 이주민의 문화와 언어 존중을 통한 교육적 권리와 인권보장, 전 생애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다문화교육방향을 제시했음.
- 조원권·정철원(2010)의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문제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음. 다문화가족 부모 및 자녀들은 ‘다문화주의의 ‘전파자’(propagators)이며, 다언어 환경을 갖추고 있어 글로벌 환경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함. 다문화가족의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방안으로,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 및 관용성 제고, 차별해소 및 사회서비스 강화, 한국어 및 모국어 교육강화,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방과 후 한국어 교육 지원강화 및 결혼이주 일일교사 채용, 한국인 대상 다문화 이해 및 보수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음. 이상의 기존연구에서 확인되듯, 최근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 및 문화조건을 활용한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 정책 역시 이와 같은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글로벌 인재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2. 연구내용

- 본 연구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됨. 첫째는 현황 및 특성분석임. 다문화가정 자녀(학생)의 현황을 국가통계자료 등을 통해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본 연구에 활용된 통계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각년도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외국인 현황>,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조사결과>, 통계청 <다문화인구동태> 및 KOSIS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등 전국단위 다문화가족 관련 실태조사 자료들임.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세분화하여 이들의 현황 및 특성을 다차원적으로 규명하고자 함.
- 둘째, 정책(전략)분석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중앙정부, 기업들의 최근 정책 및 전략을 분석할 것임.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각 부처별로 계획 및 실행중인 정책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효과도 전망해 볼 것임. 정부정책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혹은 사회공헌활동과 연계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사업내용을 분석하고자 함. 하나금융그룹, LG그룹, POSCO, STX 등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전과 달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글로벌 기업들의 이와 같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문화학생들의 글로

별 역량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육성된 인적자원의 활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됨¹⁾.

- 셋째, 정책제안임. 위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실행가능하고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제안되는 정책들은 긴밀한 상호연관성을 갖도록 설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글로벌 인재육성방안을 위한 통합적 정책지원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1) 사업의 글로벌화에 따른 기업의 다양성 관리(Diversity Management)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신원무, 2009). 다양성 관리란 조직관리 및 운영에 있어 연령, 민족, 인종, 성별, 종교 등과 같은 인구통계적 차이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 지식기반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창의성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전제조건이 됨. 즉 인종 및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도 포용하는 개방사회일수록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촉진된다는 의미임. 기업에서도 인종적 다양성이 효과적인 인사관리전략과 결합할 때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기업의 재무성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Richard, 2000), 사회문화적 다양성과 그 지역주민들의 창의성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짐(Florida, 2000).

Ⅲ. 다문화가정 학생의 실태분석

1. 외국계 주민수의 현황 및 변화추이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국인 고용보호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1/3로 축소되어 외국계 주민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외국인근로자 증가율이 대폭 감소했음. 외국인 인력 도입규모는 2008년 10만명, 2009년 3.4만명, 2010년 2.4만명으로 감소했음.
- 2006년부터 시작된 외국인주민 현황조사는 외국인주민의 생활안정, 지역사회 정착 등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외국인주민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외국인등록을 하는 90일 초과 체류자)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로 분류됨. 전자에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 외국인이 포함되며, 후자는 혼인귀화자, 기타 사유 귀화자, 외국인주민 자녀(0-18세)임.

<표 III-1> 외국계 주민 및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수 변화추이

(단위: 천명)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06-'12 증가율(%)
외국계 주민수	536	722 (34.7)	891 (23.3)	1,106 (24.2)	1,139 (2.9)	1,265 (11.0)	1,409 (11.4%)	162.9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수	-	126	144 (13.7)	167 (15.7)	181 (8.7)	211 (16.5)	221 (4.7)	75.4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각년도.

- 2012년 1월 현재 외국인주민수는 1,409,577명으로 전년대비 11.4%로 증가했으며, 이는 주민등록인구의 2.8%에 해당함. 이중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79.3%이고,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292,096명으로 20.7%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근로자가 588,944명(41.8%)으로 가장 많고,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220,687명, 15.7%)가 다음으로 비중이 높음. 외국인주민 자녀도 168,583명(중국 43%, 동남

아 38.7%, 일본 9.6% 등)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12.0%)을 차지하고 있음.

-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한국계 중국인 포함)가 55.4%, 다음으로 베트남 11.5%, 미국 4.9%, 남부아시아 4.5%, 필리핀 4.2% 순임.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의 국적별 현황은 중국 54.9%, 동남아 31.8%, 일본 5.2%, 몽골 1.3% 순이며 여성이 89.2%인 196,789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함. 시계열적 변화추이는 중국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동남아시아지역이 증가하는 추세임.
- 2012년 1월 현재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순은 경기도 424,946명, 서울 406,293명, 경남 87,395명, 인천 73,588명, 충남 67,157명 순임. 전체 주민대비 비중은 서울이 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기도 3.6%, 충남 3.2%, 인천과 경남이 2.6%순임. 상당수의 외국인들은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및 그 인근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외국인 주민자녀수 역시 대체적으로 동일한 지역적 분포상태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외국인 주민수의 지역별 분포현황은 지역별 거주외국인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생산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 정책자원의 지역별 배분과정에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어야 함.

2. 결혼이민자 현황분석

<표 III-2> 다문화 혼인 및 출생아 수 현황

(단위: 건, 명, %)

구 분		2008	2009	2010
다문화 혼인	전체 혼인수(건)	327,715	309,759	326,104
	다문화 혼인수(건)	36,629	33,862	35,098
	비 중(%)	11.2	10.9	10.8
다문화 출생	전체 출생아수(명)	465,892	444,849	470,171
	다문화 출생아수(명)	13,443	19,024	20,312
	비 중(%)	2.9	4.3	4.3

* 다문화 혼인의 여성 출신국적은 한국(19.0%)을 제외하면, 중국(33.1%), 베트남(27.6%), 필리핀(5.6%) 순임.

자료: 통계청(2011. 11), <다문화인구동태통계> 참고로 제작성.

- 2010년 한국의 혼인건수는 326,104건으로 전년대비 5.2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다문화 혼인건수는 33,862건에서 35,098건으로 3.65% 증가했음. 2010년 전체 혼인건수중 다문화혼인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8%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다문화출생아수를 살펴보면, 전체출생아는 2008년 465,892명에서 2010년 470,171명으로 4,279명 0.9% 증가한 반면, 다문화 출생아수는 2008년 13,443명에서 2010년 20,312명으로 51.1%로 대폭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

<표 III-3> 결혼 이민자수 현황

(단위: 명, %)

전 체		2007	2008	2009	2010	2011	비중 ('11)	'07-'11 증감률
		110,362	122,552	125,087	141,654	144,681	100	31.1
국적별 결혼 이민자수	중국	63,203	67,787	65,992	66,687	64,173	44.4	1.5
	베트남	21,614	27,092	30,173	35,355	37,516	25.9	73.6
	일본	5,823	5,223	5,074	10,451	11,162	7.7	91.7
	필리핀	5,033	5,819	6,321	7,476	8,367	5.8	66.2
	캄보디아	1,919	2,683	3,230	4,195	4,583	3.2	138.8
	타이	1,809	2,041	2,029	2,533	2,603	1.8	43.9
	몽골	2,088	2,325	2,292	2,421	2,393	1.7	14.6
기타	8,873	9,582	9,976	12,536	13,884	9.6	56.5	

* 결혼이민자수: 2001년 25,182명, 2002년 34,710명, 2003년 44,416명, 2004년 57,069명, 2005년 75,011명, 2006년 93,786명.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2).

<표 III-4> 지역별 결혼이민자 분포 현황(명, %)

지 역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결혼이민자수	31,217	6,498	38,953	3,837	4,511	7,413	5,765	6,758
비 중	21.6	4.5	27.0	2.7	3.1	5.1	4.0	4.7
지 역	경북	경남	제주	울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결혼이민자수	7,109	9,133	1,625	2,627	4,241	8,202	2,966	3,359
비 중	4.9	6.3	1.1	1.8	2.9	5.7	2.1	2.3

* 결혼이민자(국민의 배우자)중 등록외국인의 지역별 현황임(미등록자 제외). 총계= 144,214명.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2).

- 국내 체류 결혼이민자수는 2002년 이후 매년 28%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2007년부터 증가율이 점점 둔화되었으며, 2009년에는 결혼이민자 국적국의 국제결혼제도 강화 등의 영향으로 현저히 감소하여 전년대비 2.1% 증가하는데 그침. 2010년도에는 국제결혼 희망 내국인 증가 및 각 국의 국제결혼제도 정상화 등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자증 발급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조치 등으로 인하여 증가율이 전년대비 2.1%로 다시 하락했음(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2).
- 1980년대는 종교단체(통일교)를 통하여 일본여성들이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했으나, 2000년대 초부터는 중국, 몽골, 필리핀 등으로 국적이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출신 등으로 국적도 점점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임(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

<표 III-5> 결혼이민자 및 자녀수의 장래추계 결과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결혼이민자수	167,090	183,934	200,753	217,550	234,319	251,062
남성 결혼이민자수	17,236	19,299	21,351	233,396	25,431	27,456
여성 결혼이민자수	149,854	164,636	179,402	194,153	208,888	223,606
전체 이민자 자녀	99,684	114,560	130,411	147,144	164,698	183,002
남성 이민자 자녀	5,744	6,382	7,093	7,872	8,715	9,613
여성 이민자 자녀	93,940	108,178	123,318	139,272	155,983	173,389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결혼이민자수	267,775	284,460	301,112	317,729	334,314	350,862
남성 결혼이민자수	29,470	31,472	33,462	35,440	37,405	39,356
여성 결혼이민자수	238,306	252,988	267,650	282,289	296,909	311,506
전체 이민자 자녀	201,942	221,405	241,263	261,450	281,943	302,692
남성 이민자 자녀	10,561	11,554	12,586	13,649	14,737	15,841
여성 이민자 자녀	191,381	209,851	228,678	247,801	267,206	286,852

자료: 한국이민학회(2009) 자료를 토대로 제작성.

- 2009년~2020년까지 국제결혼이민자수는 연평균 6.7% 증가하여 총 110.0%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같은 기간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율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캄보디아 206.0%, 베트남 166.6%, 일본 138.2%, 몽골 134.4%, 태국 129.8%, 중국 조선족 106.9%, 필리핀 91.6%, 한족 53.8% 순임. 이러한 증가율을 반영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중국 중심에서 다국화(동남아시아 국가 등) 경향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결혼이민자 자녀수는 연평균 10.1% 증가하여 2020년에는 2009년에 비해 203.7%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상대적으로 고출산 성향이 높은 국가들도 구성되어 향후 출신국가별 결혼이민자의 자녀수 증가 추이에 영향을 미칠 것임.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수 증가율은 2009년~2020년 기간 동안 캄보디아 1107.4%, 베트남 456.6%, 몽골 227.3%, 기타국가 202.3%, 태국 141.4%, 필리핀 130.7%, 일본 107.0% 등으로 나타났음. 최근 다출산 성향이 매우 강한 캄보디아와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결혼이민자들의 국적별 비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결혼이민자의 자녀수의 증가 속도 및 규모는 보육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등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한국이민학회, 2009: 38).

3. 다문화가정 학생현황

- 2012년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46,954명임. 이는 2006년 8,834명에 비해 431.5% 증가했음. 전체 학생대비 다문화가정 학생 수의 비중은 2008년 0.26%에서 2011년 0.56%로 증가했으며 전체학생수가 매년 20만 명 이상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4년에는 전체학생수의 1.1%가 다문화학생으로 추산되고 있음(교육과학기술부, 2012b). 즉 한국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다문화학생의 폭발적인 증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임.

<표 III-6> 전국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및 증가 추이(2006년~2012년)

(단위: 명, %)

연도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다문화 가정(계)				전년대비 증가율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계	
2012	31,979	9,182	3,167	44,328	1,813	465	348	2,626	33,792	9,647	3,515	46,954	20.6
2011	27,256	7,236	2,234	36,726	1,463	489	262	2,214	28,719	7,725	2,496	38,940	22.5
2010	23,602	4,814	1,624	30,040	1,099	446	203	1,748	24,701	5,260	1,827	31,788	22.2
2009	20,632	2,987	1,126	24,745	834	307	129	1,270	21,466	3,294	1,255	26,015	28.9
2008	15,805	2,213	760	18,778	981	314	107	1,402	16,786	2,527	867	20,180	35.9
2007	11,444	1,588	413	13,445	755	391	63	1,209	12,199	1,979	476	14,854	68.1
2006	6,795	924	279	7,998	606	193	37	836	7,401	1,117	316	8,834	-

*2006년 대비 2012년 다문화가정 학생 수 증가율: 431.5%

**외국인학교 및 특수학교는 통계에서 제외.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각년도 참고로 제작성.

-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세부적인 현황을 보면, 국제결혼가정 학생이 94.4%, 외국인 근로자가정 학생이 5.6%로 국제결혼가정 학생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학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72.0%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중학생 20.5%, 고등학생 7.5%임. 그러나 학급별 불균등한 분포는 향후 상당부분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 2006년 국제결혼가정 학생들의 학급별 분포는 초등학생 84.9%, 중학생 11.6%, 고등학생 3.5%였지만, 2012년에는 초등학생은 72.1%로 12.8% 감소한 반면, 중학생은 9.1%, 고등학교는 3.6% 증가했음.
- 무엇보다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점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지역적 분포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임. 이는 지역별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생산 주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 국제결혼가정 학생들의 가장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로 학생 수는 9,654명이며, 전체 국제결혼가정 학생 수의 21.8%를 차지하고 있음. 다음으로는 서울 6,368명(14.4%), 전남 3,716명(8.4%), 경남(3,024명)과 전북(3,019명)순임.

<표 III-7> 국제결혼가정 학생들의 지역별 분포 현황(2012년)

(단위: 명, %)

구분	초	중	고	계	비중*
서울	4,714	1,150	504	6,368	14.4
부산	1,366	381	147	1,894	4.3
대구	872	247	50	1,169	2.6
인천	1,729	452	147	2,328	5.3
광주	769	225	58	1,052	2.4
대전	602	159	78	839	1.9
울산	558	120	29	707	1.6
경기	7,015	1,856	783	9,654	21.8
강원	1,568	633	183	2,384	5.4
충북	1,428	468	172	2,068	4.7
충남	2,079	662	213	2,954	6.7
전북	2,137	671	211	3,019	6.8
전남	2,664	861	191	3,716	8.4
경북	1,996	573	156	2,725	6.1
경남	2,148	655	221	3,024	6.8
제주	334	69	24	427	1.0
합계	31,979	9,182	3,167	44,328	100
비중**	72.1	20.7	7.1	100	

주: 국제결혼가정 학생= 국내출생 자녀 + 중도입국 자녀

*지역별 비중치 **학급별 비중치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b),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참고로 재작성.

- 위와 같은 국제결혼가정 학생들의 차별적인 지역적 분포는 모든 국제결혼가정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정책'과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이 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을 의미함. 지역별 분포현황과 함께 부모의 출신국별 현황 역시 정책 수립시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임. 교육과학기술부(2012b)의 2011년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 학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모의 출신

국은 일본이 32.8%(12,152명)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 17.1%(6,338명)과 필리핀 16.9%(6,265명)로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중국 조선족 14.6%(5,422명), 베트남 5.8%(2,137명) 등 상위 5개 국가가 전체 학생수의 87.2%로 절대 다수를 차지함. 현재로서는 일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결혼이민자수의 증가추이를 감안하면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부표 1> 참조).

<표 III-8> 국제결혼가정 학생의 분류(국내출산 자녀/동반중도입국) 현황(2012년)

(단위: 명)

구분	국내출산 학생 수				동반중도입국 학생 수				합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서울	3,942	877	330	5,149	772	273	174	1,219	6,368
부산	1,216	321	109	1,646	150	60	38	248	1,894
대구	799	222	38	1,059	73	25	12	110	1,169
인천	1,569	402	115	2,086	160	50	32	242	2,328
광주	721	193	50	964	48	32	8	88	1,052
대전	546	134	60	740	56	25	18	99	839
울산	538	97	26	661	20	23	3	46	707
경기	6,100	1,552	623	8,275	915	304	160	1,379	9,654
강원	1,520	617	163	2,300	48	16	20	84	2,384
충북	1,371	436	114	1,921	57	32	58	147	2,068
충남	1,999	623	183	2,805	80	39	30	149	2,954
전북	2,070	645	198	2,913	67	26	13	106	3,019
전남	2,612	840	177	3,629	52	21	14	87	3,716
경북	1,936	560	144	2,640	60	13	12	85	2,725
경남	2,064	617	189	2,870	84	38	32	154	3,024
제주	300	60	22	382	34	9	2	45	427
계	29,303	8,196	2,541	40,040	2,676	986	626	4,288	44,328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b),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참고로 제작성.

<표 III-9> 출신국적별/연령별 중도입국 자녀 현황(2012년)

(단위: 명, %)

구 분	10세 이하	11-13세	14-16세	17세-19세 이하	전체
한국계 중국인	1,309(64.6)	345(44.9)	340(34.4)	787(38.5)	2,781(47.7)
중국	484(23.9)	287(37.4)	381(38.6)	886(43.3)	2,038(35.0)
타이완	36(1.8)	27(3.5)	72(7.3)	113(5.5)	248(4.3)
몽골	35(1.7)	26(3.4)	40(4.0)	57(2.8)	158(2.7)
일본	13(0.6)	8(1.0)	56(5.7)	69(3.4)	146(2.5)
베트남	52(2.6)	17(2.2)	20(2.0)	33(1.6)	122(2.1)
필리핀	19(0.9)	14(1.8)	13(1.3)	22(1.1)	68(1.2)
기타	78(3.8)	44(5.7)	66(6.7)	79(3.9)	267(4.6)
합계	2,026(100.0)	768(100.0)	988(100.0)	2,046(100.0)	5,828(100.0)

* 2012년 1월말 현재 출입국관리소에 귀화를 신청한 부모 동반입국 청소년 기준

원자료: 법무부 내부자료, 2012

자료: 전경숙·이의정(2012), p. 41 토대로 재작성.

- 중도입국 자녀의 개념정의는 아직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온 경우와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경우”를 의미함.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르면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의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들 중도입국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첫째, 정체성의 혼란 둘째, 두 개 언어, 문화, 생활습관, 행동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갈등 셋째, 사회적 편견과 차별, 넷째,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인한 대인관계 및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 다섯째, 학교진학과 학업수행의 어려움 여섯째, 가구의 경제수준이 낮아 교육 지지 기반 미흡 등으로 파악되고 있음(전경숙·이의정, 2012).

- 2011년 현재 국제결혼가정 학생의 90.3%(40,040명)는 국내출산 학생이고, 나머지 9.7%(4,288명)는 외국에서 출생하여 중도 입국한 학생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379명(32.2%)으로 가장 많고, 서울 1,219명(28.4%), 부산 248명(5.8%), 인천 242명(5.6%), 충남 149명(3.5%) 순임(교육과학기술부, 2012b). 중도입국 자녀들의 약 75%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취득 중에 있음. 국적별로는 82.7%가 중국출신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다음으로 타이완 248명(4.3%), 몽골 158명(2.7%) 등 다른 국가출신은 소수에 불과함(전경숙·이의정, 2012).

-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증가율이 매우 빠르게 때문에 이들의 교육지원을 위한 대안학교를 2012년 3곳(지구촌학교[초등], 서울다솜학교[고교], 충북폴리텍다솜학교[고교])을 신규로 운영 중이고 예비학교는 2011년 3곳에서 2012년 26곳으로 대폭 확대 했음. 예비학교는 중도입국자녀가 정규학교 배치 전 6개월 동안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학력인정 교육기관으로 부산아시아공동체학교 등 전국 26곳에서 운영 중임(교육과학기술부, 2012b).

IV. 다문화가정 학생의 인적자원 개발정책

1. 중앙정부

<표 IV-1>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의 정책분야별 주요사업 현황

(중앙정부, 2011년 기준)

사업분야	주관부처	주요사업내용	사업수	예산 (억원)
다문화가족지원정책추진체계정비	국무총리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운영,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다문화가족지원계획’ 수립·종합	9	126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전담기구 설치 표준안 마련·지자체 시달, ‘11년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 실시		
국제결혼 증개관리 및 입국 전 검증 시스템 강화	여성가족부	국제결혼증개 제도 개선,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등 주요 상대국과의 협력, 현지사전교육 내실화 및 대상국가 확대	10	16
	법무부 외교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 등을 활용한 사증 발급 관리,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이수제 도입,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준 강화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여성가족부	한국어교육 및 통·번역 지원, 지역일자리 연계, 포털 ‘다누리’, ‘방문상담서비스’ 등 정보제공·상담지원 확대	21	334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보급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고용촉진지원금 연계, 사회적 기업(일자리) 육성		
	보건복지부	결혼이민자 이동복지교사 채용 및 진료코디네이터 양성, 기초생활보장 범위 확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채용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다문화가족 농촌정착 지원 및 농업인력 양성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등	여성가족부	언어영재교실 운영,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등 언어발달 지원,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 및 자녀생활지원 시범제공, 중도·동반입국 자녀 초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12	348
	교육과학기술부	거점학교를 통한 한국어교육·학습지원, 유치원비 지원, 부적응자녀를 위한 대안학교 설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 방문학습자료 및 동화구연 콘텐츠 개발·보급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제공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여성가족부	다문화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표준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담당공무원 및 청소년전문가 교육, 다문화강사 풀 운영, 나눔문화 확산 및 매체홍보	9	66
	교육과학기술부	교·사대 다문화강좌 개설, 교사연수 및 다문화교육 포털 구축·운영		
	법무부	제4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다문화 전문강사 양성, 다문화뮤지컬 순회공연		
	행정안전부	공무원 다문화이해교육		
5개 분야			61	890

자료: 이환성(2012), pp. 37-38.

- 정부는 2010년부터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0-2012)을 수립하여 각 부처별로 정책실행중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②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 ③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④ 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증진 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⑥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⑦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총괄·조정기능 강화 ⑧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전달체계 강화 등임(국무총리실, 2010).

- 2010년 수립된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된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표IV-1>과 같음. 2011년의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국제결혼 중개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 가족 지원,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등 5개 사업 분야에 총 61개 세부 정책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를 위해 890억원의 재정지원을 했음. 본 연구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의 경우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12개 세부사업에 34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이와 같은 정책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문제는 사업내용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정책간 상호연계성 부족, 지역별, 국가별, 학급별, 다문화가정 학생의 개인적 특성(예를 들어, 국내출생 학생 vs 중도입국학생 등)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임.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정책변화 흐름은 <표IV-2>와 같음.

<표 IV-2> 중앙정부의 다문화학생을 위한 주요 정책

주관부처	발표일시	정책명칭	특성(비고)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	최초의 종합지원대책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다문화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효율적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계획	글로벌인재화를 위한 정책전환
여성가족부	2012년	언어영재교실	다문화지원센터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다문화학생 교육선진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Global Bridge 사업	다문화학생 교육선진화 방안 세부사업

자료: 각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위의 내용은 정책변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정책을 선별한 것임.

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교육인적자원부, 2006)

- 교육인적자원부의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정부차원의 최초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집중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구체적인 분야별 세부정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취약했음. 다문화가정 자녀에 정책적 관심의 부각은 새로운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함.
- 정책의 추진배경 및 목적은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 필요성 증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소외 방지대책 마련,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인적자원개발 방안 모색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며, 특히 다문화가정 학부모 및 자녀들을 다문화주의 전파자, 다언어를 구사하는 글로벌 인적자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취지는 이후 제시된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음.
- 위와 같은 추진배경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지원, 대학생 멘토링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우선 선정, 교사 및 또래집단과의 1:1 결연을 통한 자녀의 정서적 안정 도모, 교원연수 강화(소수자 배려 교육,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교육), 교육과정 개편 시 '타문화 편견 극복' 단위 포함,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사업을 통한 지역단위 지원프로그램 활성화, 불법 체류자 자녀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부처 협의 등이 추진되었음.

나.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 보건복지부의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대책은 다문화가족 형성 이후 가족구성원간 언어·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자녀의 학교·사회생활 적응곤란 등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되었음. 이 지원 대책은 2006년 이후 범정부차원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 추진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나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부족, 보건·복지·가족영역간 연계가 미흡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것임. 정책적 특징은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에 맞춰 상호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며, 7대 정책과제, 21개 세부추진과제, 66개 세부사업내용으로 구성되었음. 다문화가정의 생애주기별 7대 과제는 다음 <표IV-3>과 같음.

<표 IV-3> 다문화가정의 생애주기별 7대 정책과제(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생애주기	정 책 과 제
결혼준비기	【정책과제①】 결혼중개 탈법방지 및 결혼예정자 사전준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사전제공 의무규정 신설 • 입국시 국적별 자조모임 연계, 통역·정서지원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시행
가족형성기	【정책과제②】 결혼이민자 조직적응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의 기초생활보조 지원(긴급지원제도 특례규정 신설 등)
자녀양육기	【정책과제③】 다문화가족 자녀 임신·출산·양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산후 돌봄서비스 제공 •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추진, 보육시설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강화
자녀교육기	【정책과제④】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발달 및 역량개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학 전 영유아 언어발달을 지원: 한국어교육, 언어치료사 파견 •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 역량 개발: 언어별 교육강사 육성 및 파견
가족역량 강화기	【정책과제⑤】 결혼이민자 경제·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취업·창업지원: 적합 직종 개발 및 직업훈련 강화 • 중앙 및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정책 모니터링단 운영·활성화(정책주체화)
가족해체시	【정책과제⑥】 해체 다문화 가족 자녀 및 한부모 가족 보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연고 방치 아동청소년 보호: 전담 동반자 육성
전(全)단계	【정책과제⑦】 다문화사회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등록·서비스 관리 시스템 구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08년 80개소→ '10년 140개소로 확대)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 본 연구와 관련된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는 ‘자녀교육기’임. 자녀교육기의 정책목표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습발달 및 역량개발 강화임. 여러 연구에서 이미 확인되었듯이, 다문화학생들의 학습부진 및 학교부적응은 사회적 문제임.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취학 전 언어발달을 지원하고, 이중 언어 역량을 개발하여 글로벌 인재화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정책목표임.

- 생애주기별 정책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자녀교육기’임. 왜냐하면, 이 시기에 어떤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받느냐에 따라 상급학교로의 진입은 물론 노동시장 진입 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임. 사실 이중 언어 및 문화를 습득하는 것은 체계적인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없다면 쉽지 않은 과제임. 따라서 ‘자녀교육기’에 이중 언어 및 문화 습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높게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이후 정책수립에도 반영되는 효과를 보였음.

다.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계획’의 3대 중점 추진방향은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및 연계·활용 강화,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 일반학생의 다문화 이해 및 다문화가정 강점 발굴 지원하는 것임.

<표 IV-4>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2009년)

정 책 구 분		주 요 내 용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연구·개발(중앙다문화교육센터) • 교육대에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지원(10개 대학 개설)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	한국어·기초 학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학교 지원을 통한 한국어교육·교과 학습지도(46개교) 멘토링 지원: 멘토(교사·대학생·퇴직교원 등)와 멘티연결
	학부모 교육·상담 지원	가족단위 한글·정보화 교육프로그램, 일반학부모와 다문화 가정 학부모간 1:1 결연(멘토링·상담지원)
	교사연수	교대·교육청 다문화교육 관련 직무연수 개설
다문화 이해 교육 지원	학교 다문화이해 교육 지원	학교 재량활동·특별활동에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 체험활동을 통한 감수성 제고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학부모 인재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 언어 교육: 이중 언어가 가능한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선발, 집중 교육을 통해 이중 언어 교수요원으로 양성 *다문화교육 거점 학교, 밀집학교 등에 (방과 후) 강사 등으로 배치·활용 • 국제지도자 육성: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출신국 이해, 리더십 등 역량강화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부모출신국 배우기, 해당국가 학생교류, 유학생 멘토링 등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9).

-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계획’은 학생들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추진이라는 점에서 기존 정책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음. 또한 본 연구주제와 관련해서는 다문화이해 교육지원 분야중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를 중요한 인적자원 개발대상으로 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장점인 이중언어 교육을 보다 강화했음. 특히 이중언어가 가능한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선발하여 정부정책의 추진주체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됨. 이러한 정책은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취업기회 확대는 물론 다문화학생들이 부모출신국의 언어를 제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언어적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이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국제지도자로의 육성목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인적자원 개발전략의 핵심임. 부모출신국 언어뿐만 아니라 해당국의 문화와 사회경제적 상황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학생들간 국제교류 등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하여 ‘글로벌 인재화’한다는 정책적 목표임. 교육과학기술부가 다문화학생들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정책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학생을 위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라. 언어영재교실(여성가족부, 2012년)

- 이중언어 교육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음. 여성가족부의 언어영재교실의 정책시행 목적은 다문화가족 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수업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구체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여성가족부는 사업추진방향 및 기준 설정, 사업평가, 홍보 등 사업을 총괄하고, 중앙관리기관(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사업수행기관을 선정·관리함. 중앙관리기관은 언어영재교실 교육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보급, 이중언어 강사 자격기준 심사 및 양성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관리·평가, 언어영재교실 사업 홍보 및 실적·진행사항 점검 등 사업관리, 언어영재교실 사업 현장점검 및 평가 등을 담당함. 지역별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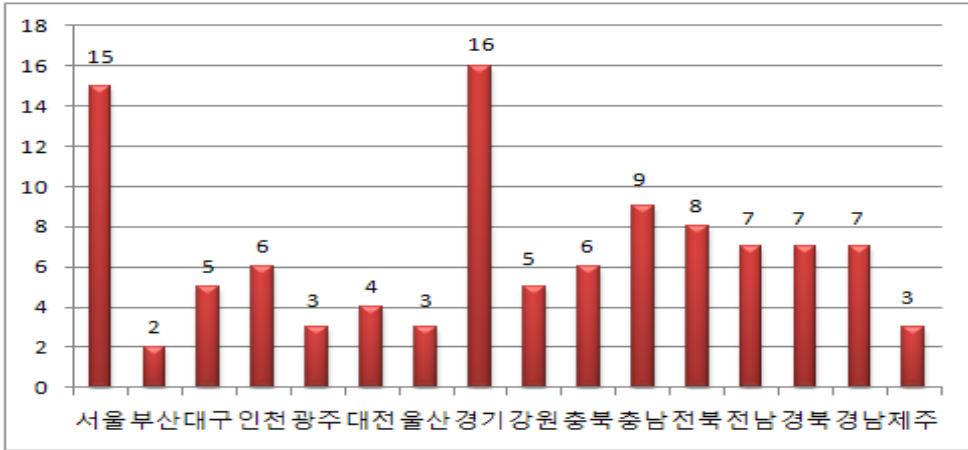
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중언어 강사 채용 및 복무관리, 언어영재교실 서비스 제공, 언어영재교실 센터별 실적관리를 책임지는 시스템임.

<표 IV-5> 이중언어강사 자격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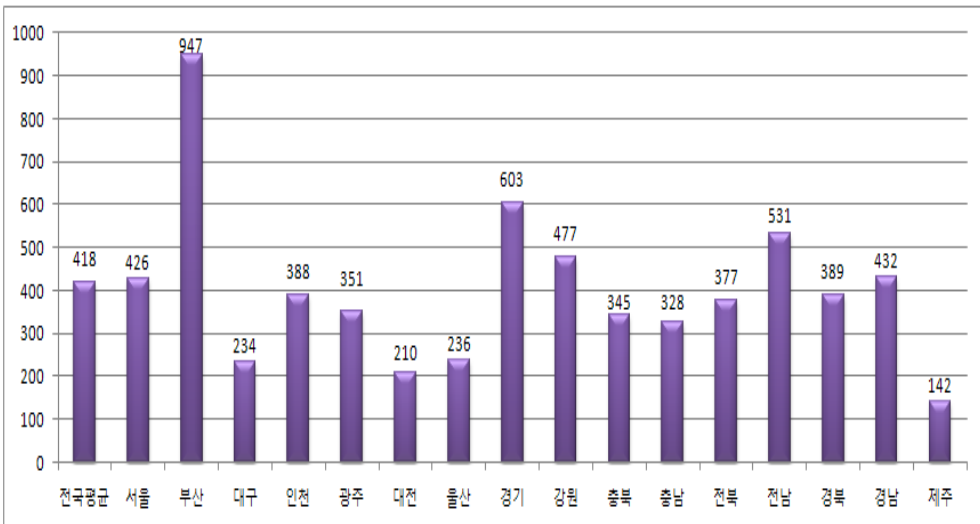
구분	이 중 언 어 강 사
담당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의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및 문화 수업 • 언어영재교실 홍보 및 수강생 모집 • 언어영재교실 수강생 대상 맞춤형 수업 교안 및 교구 준비 • 언어영재교실 수강생 출석 및 성적관리
지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 한국 거주 기간 2년 이상 • 한국어 활용 수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 대졸 이상의 학력 • 대졸 학력 소지자를 찾기 어려운 지역 또는 언어의 경우 우수 통번역 지도사 등으로 대체채용 가능
우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국 또는 한국에서 한국어 관련 전공자 • 이중언어 강의 유경험자

자료: 여성가족부(2012c), <2012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p. 145.

- 이중언어 강사의 역할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결혼이민자 본국의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이해를 위한 학습을 담당함. 이중언어 강사의 자격조건은 결혼이민자 중 한국거주 2년 이상이고 한국어 수준이 기준을 넘어서야 함. 그러나 정책시행 초기라 이중언어 및 문화습득을 위한 콘텐츠 개발은 이중언어 강사가 자체적으로 담당하기 보다는 국내외 전문기관을 지원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초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및 문화 교육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운영하는 것임. 수업은 한 학기당 16주로 구성하여 2학기제임. 해당언어는 영어를 제외한 여성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등)임.



자료: 여성가족부(2012c), “2012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p.142; 교육과학기술부(2012b)를 토대로 계산.
 [그림 IV-1] 지역별 이중언어 강사 배치 현황(2012년)



자료: 여성가족부(2012c), “2012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p.142; 교육과학기술부(2012b)를 토대로 계산.
 [그림 IV-2] 지역별 이중언어 강사 1인당 다문화가정 학생수 현황(2012년)

- 2012년 현재 전국의 이중언어 강사는 106명임. 정책추진 초기단계임을 감안하더라도 다문화가정 학생 수에 비해 너무 적은 인원임. 또한 이중언어 강사 1인당 다문화가정 학생수를 계산해보면 강사 1인당 학생 수가 무려 418명에 달해 정책

수혜 대상이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지역별 편차도 심해 제주도의 경우 강사 1인당 학생수가 142명인 반면 부산광역시는 47명, 경기도 603명, 전라남도 531명에 달함. 따라서 지역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마. 다문화학생 교육선진화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 다문화학생 교육선진화 방안은 그동안 추진되었던 정책을 종합하여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정책적 비전은 '다양성을 이해하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이며 목표는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다문화 친화적 학교 육성'임. 세부추진 정책의 주요 내용은 ①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예비학교 및 다문화코디네이터 운영 ② 한국어 교육과정(KSL: Korean as a Second Language, 제2언어로서 한국어) 도입 및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 ③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배우는 이중언어 교육강화 ④ 다문화학생 진로·진학지도 강화 ⑤ 다문화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글로벌 선도학교 150개교 육성[거점형 120개교 +집중지원형 30개교]) ⑥일반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원강화 임.

<표 IV-6> 다문화학생 교육선진화 방안(2012년)

추진과제 및 전략		주요정책
공교육 진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정규학교 입학절차 정비 *전담 Coordinator 배치
		한국어 등 사전교육을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 확대 *11년 3개→12년 전국 확대
다문화학생 교육 내실화 및 재능 발현 지원	한국어 및 기초 학력 책임 지도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능력에 맞는 단계별 KSL과정 도입 *교육과정·진단도구·교재개발(13년 전면시행)
		다문화학생의 여건에 맞는 KSL 교육 환경 조성 *특별학급(다문화학생 다수), 방과후 학교(다문화학생 소수), 방학·주말지도(중·고등학교), 자기주도 학습
	1:1 멘토링 강화를 통한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책임지도 *멘토링 대상확대, 맞춤형 멘토링, 교사와 멘토간 정보공유 강화, 멘토링 학습자료 지원	
	한국문화	한국문화·기초예절 지도 강화 *지도서 개발, 창의적 체험활동

	및 학교 적응지원	다문화학생 대상 학교 적응 지원 강화 *학교폭력 발생 예방,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대상 교육 강화, Wee 센터 등 지원
		다문화학생 학교 선택 기회 제공 *학업중단 고려시 다문화친화학교로 전학 허용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	이중언어 교사 확대 및 양성 체계화 *15년: 1,200명 양성, 1인당 학생수 50명
		이중언어 교사의 질 제고 *심화연수 과정 신설, 강사요원의 질 제고
		수준별 이중언어 교재 개발·보급 지원 *소수언어 우선 개발, 문화이해 초점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이 함께 배우는 이중언어 교육기회 제공 *정규학교: 방과후 학교, 거점학교: 방학·주말지도, 자기주도 학습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이중언어 캠프 개최
	진로·진학 지도 강화	진로진학 상담교사의 다문화 역량 제고
		글로벌 브릿지 사업을 통한 우수 다문화학생 발굴·지원
		부모 국가와의 교류지원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
		다문화학생 대상 직업교육 활성화 *다솜학교 확대, 직업교육과정 운영 지원
		대학진학 기회 확대 *대학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포함
다문화 친화적 교육체제 구축	글로벌 선도학교 확대	인근학교 지원을 위한 거점학교 지원 *거점형- 초·중·고 120개교
		도시·농촌형 우수학교 집중 지원 *집중지원형- 초 20개교
		본격적인 다문화학생 증가에 대비하여 지원 *집중 지원형- 중·고 10개교
	예비교원 및 현직교원 지원	다문화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용 3종 매뉴얼 발간
		교대의 다문화학생 특별전형 개설 및 확대
		교원 양성·연수과정 개선 *다문화강좌 및 다문화교육 이해과정 포함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확대 *현장 교원들의 다문화 이해역량 제고
	다문화 가정 학부모 교육강화	'한국에서의 자녀교육' 제작 및 보급 *자녀교육 자료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제공
		'학부모를 위한 다문화 이해하기' 제작 및 보급 *다국가 홍보자료 번역·제공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활성화 *교육청, 평생교육기관, 방송대와 연계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교육참여 확대 *학부모 모니터링단,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일반학생 상호이해 교육강화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검토 및 개선 *현행 교과서 검토, 교과서 및 지도서 개발 일반학생 대상 상호이해교육 강화 *다문화이해활동 지원 강화, 다문화이해 주간 운영 다문화학생 멘토링 실적을 학생부에 기록하여 활용 *또래·상급생 멘토링
다문화학생 교육을 위한 전 사회적 협력 강화	전 부처 협력 강화	다문화학생 실태조사 체계화 *용어 정비 및 통계조사 방식 체계화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 강화 *협력 agenda 및 과제 발굴
		교육기부 활성화

- 다문화학생 선진화 방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중언어 교육을 활성화하여 다문화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것임. 우선 이중언어 강사의 양적 확대 계획은 2012년 106명에 불과한 이중언어 강사를 2015년까지 1,200명으로 대폭 늘려 강사 1인당 학생 수를 현재 418명에서 50명으로 낮출 계획임. 이중언어 강사의 질적 수준 향상 계획은 별도의 심화연수과정을 신설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임. 이중언어 강사의 양적 확대, 질적 수준 향상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 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 볼 수 있음.
- 또한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되, 정책추진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소수언어 개발을 우선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함. 이는 다문화학생 교육선진화 방안의 목표인 '한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다문화 친화적 학교 육성'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지금까지 다문화학생은 소외·취약계층으로 보아 지원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방안은 다문화학생이 가지고 있는 적성과 재능을 개발하여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원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있음.

바. Global Bridge 사업(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 글로벌 브릿지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의 세부 사업으로 대학의 역량을 활용한 다문화학생들의 글로벌 인재화 사업임. 사업목적은 다문화 가정 학생의 잠재능력을 적극 개발하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영재교육 등 특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임. 사업대학을 4개 권역별(수도권, 충청·강원권, 호남·제주권, 영남권)로 1~2개 대학씩 총 7개 대학을 선정·운영함. 선정영역은 수학·과학(4개, 서울교육대, 한국교원대, 전북대, 대구대), 글로벌리더십(1개, 선문대), 언어(1, 한양대), 예·체능(1, 용인대) 등 4개 분야 7대 대학임.
- 학생선발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다문화가정의 초등학교 4학년~중·고생까지 이중언어가 가능한 학생이 대상이며, 참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또는 농어촌 지역 학생을 30% 이상 우선 선발하도록 배려하고 있음.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생 선발도 가능하나, 선발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부모 출신국이 특정국가가 30%가 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사업은 사업대학 내 영재교육원과 다문화교육연구소 등 관련 기관이 공동 참여하여 '글로벌 브릿지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책임자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제임.
- 글로벌 브릿지 사업과 관련한 기관별 역할은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 시·도 교육청은 한국연구재단과 협약을 통해 특교 지원 및 사업참여 학생 선발 지원, 한국연구재단은 사업운영 대학의 선정, 중간점검, 최종 평가 및 정산관리, 최종 성과보고회 등 사후 성과관리, 대학은 참여 학생 선발·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진행 정기적 분석, 멘토 선발 및 멘토링 실시 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 운영보고회 개최 및 사업운영 결과보고서 발간을 담당함¹⁾(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2012).

2. 기업

가. 하나금융그룹: Hana Kids of Asia

- 하나금융그룹은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및 문화지원을 위한 'Kids of Asia'(2008년-) 프로젝트를 시행중임. 이 프로젝트는 이중언어 구사를 위한 체계적인 언어교육,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문화교육지원 등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Kids of Aisa 프로그램 수행목적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머니 나라의 말과 문화를 당당히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성이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고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강점으로 개발되어,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갖고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지원 사업”임. 글로벌 인재로의 양성은 앞서 살펴본 정부정책 기조와도 맥을 같이함.

-
- 1) 한국의 자치단체에서도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행중임.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수준의 다문화학생 지원정책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했음. 다문화학생의 지역별 분포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역성을 반영한 정책수립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주제임. 지역수준의 다문화교육정책을 시·도교육청의 정책 중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간략히 언급하자면(박성혁 외, 2010: 5-10),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 및 배치·운영(서울특별시), 어머니나라 도서보급(대구광역시), 다문화 글로벌 인재양성(인천광역시),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강사 지원(광주광역시), 방과후 이중언어 교육지원 프로그램(대전광역시), 다문화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젝트 운영(강원도), 외국어 및 이중언어 강사제 운영(경상북도) 등임. 분명한 것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중언어(문화)교육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 전략은 지역수준의 정책수립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자료: <http://kidsasia.or.kr>

[그림 IV-3] Hana Kids of Asia 사업수행 모델

- 주요사업은 크게 토요베트남학교, 심리정서지원사업, 교재개발 및 연구조사 사업으로 구분됨. 토요베트남학교는 서울, 인천, 안산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언어교육(수준별 베트남어 교육), 다문화교육(한국문화와 베트남문화 비교 교육 및 체험) 등임. 베트남어 교사는 재한베트남 유학생(베트남 학사이상, 한국 석사이상)과 베트남 어머니(한국어 능력 중급이상)로 구성됨. 심리정서지원은 아동 멘토링과 심리검사 및 치료를 내용으로 함.

<표 IV-7> 토요 베트남 학교 참여자 현황

구분	미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계	교사수 (원어민)
	7세	1	2	3	4	5	6	1	2		
서울	2	10	4	8	5	0	1	0	1	31	5
인천	2	7	5	4	7	4	1	2	0	32	7
안산	5	5	4	6	1	1	1	2	0	25	5
계	9	22	13	18	13	5	3	4	1	88	17

출처: <http://www.kidsasia.or.kr/>

- 아동 멘토링은 아동과 멘토를 일대일로 매칭하고 개별방문을 통해 아동의 학습, 정서, 토요베트남학교 활동을 지원함. 심리검사 및 치료는 아동심리, 발달검사를 통해 아동상황을 파악하고, 치료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심리치료

및 부모상담을 지원함. 마지막으로 교재개발 및 연구조사는 기관 및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3단계 총 11권의 베트남 언어, 문화 교재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수정, 보완 작업을 통해 보다 좋은 교재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음. 원어민 교사를 채용함으로써 이주민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 물론,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이중언어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글로벌 인적자원화의 기초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나. LG그룹: LG와 함께 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

- ‘LG와 함께 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2010년-)는 다문화가정 학생 중 과학과 이중언어 분야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키워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전문교수진의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내용(대상: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2학년까지)임. 과학인재과정은 매월 둘째 주, 대전 카이스트에서 매월 1월 2일 교육, 월 2회 온라인교육, 방학 캠프 및 국제 과학경진대회 참가 등을 통해 화학, 물리 등 생활과 관련 있는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한 실험실습 교육을 진행함.
- 언어인재과정은 매월 마지막 주, 전국 각지를 돌며 월별 1박2일 캠프와 연 1회 해당 언어권 국가로 9박 10일 현지 연수, 주 1회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폭넓고 깊이 있는 이중언어 구사력 향상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 2012년 1기 졸업생(70명)은 중국 상하이 엑스포, 국제 청소년 과학 엑스포에 한국 대표로 참가했고, 각종 이중언어 대회에서 7명이 입상했으며, 국제중, 특목고 및 자율형 사립고 등에 5명이 진학하는 성과(아시아경제, 2012년 5월 23일자)를 보이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결국 LG는 지금까지 한국어교육이나 기초학습관련 교육, 가정 물품지원 등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처한 어려움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의 글로벌화’를 위한 중요한 인적자원 육성이라는 관점으로 다문화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1) 과학인재양성교육(LG-KAIST)

- 다문화가정 학생 중 과학적 재능은 있으나 관련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해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숨은 영재를 발굴, 육성하여 향후 실질적인 글로벌 사회 시민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인재를 LG가 집중 지원하여 키워내고자 하는 실용적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임.

<표 IV-8> 과학인재양성교육 개요(LG-KAIST)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교육과정명	과학인재양성교육	
대상	다문화 가정 초등 3학년생~고등 1학년생	
교육인원	30명	교육기간: 2년
선발방법	① 교육청을 통한 학교장 추천 ② 일반 공개 전형에 통한 학교장 추천 병행	
전형방법	일반공개 모집 및 담임 추천→ 학교장 추천→ 서류전형→ 선발 캠프 실시→ 최종 교육대상자 선발	
교육내용	• 오프라인 교육(월 1회) • 온라인 교육 • 대학생 멘토링 시스템 운영 • 학부모 교육	교육장소 : 대전KAIST
선발기준	① 기초 수학/과학 테스트 ② 실험 실습을 통한 결과도출 능력 ③ 논리력 테스트 ④ 과학 논술 능력	

자료: <http://lgschool.kaist.ac.kr>

- 교육목적은 부모로부터 문화적 다양성을 이어받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특성을 긍정적 가치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잠재된 재능을 발견하여 글로벌 리더로 자라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한 교육목표는 ①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창의력과 넓은 안목을 길러줌 ②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 설정 ③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리더십 함양 등임.

- LG사랑의 다문화 학교의 교육과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 가지 학습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교육은 KAIST 멘토의 1:1 멘토링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짐. 교육분야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분야임. ① 수학분야 교육: 발산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학습과제 제시 ② 과학분야 교육: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며, 탐구 중심의 토론학습 운영 ③ CT(Culture technology, 문화기술) 교육: 과학기술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지식융합·발전에 대한 사고력 개발. 과학인재양성 프로그램은 주요 내용은 <그림 IV-4>와 같음.



자료: <http://lgschool.kaist.ac.kr>

[그림 IV-4] LG-KAIST 과학인재양성 프로그램

2) 언어영재 프로그램: LG그룹-한국외국어대

<표 IV-9> LG 사랑의 다문화학교 언어인재 양성과정 프로그램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LG 사랑의 다문화학교 언어인재 양성과정 • 사업기간: 2년 • 사업운영: LG, 한국외국어대학교 다문화교육원
사업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가정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며, 언어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음 • 아동의 정서적 발달은 부모의 정서적 교류에서 완성되며,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계발은 가정 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킴 • 부모 양측의 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긍정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구성원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음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언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 교육대상: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생 • 교육인원: 전체 32명 • 교육과정: 온라인교육 주 1회(www.hufslanglg.org), 글로벌 리더십 캠프 월 1회(1박2일), 현지 연수프로그램(연 1회, 해당 언어권 국가로 9박 10일) • 교육내용: 언어 교육 및 해당 국가의 문화 교육, 멘토-멘티를 연결하는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교유관계, 학교생활 등에서 멘티가 겪는 문제에 대한 도움 제공
사업목표	부모 양측의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양성
사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능력 계발과 정서적 안정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 기대 • 언어발달: 언어 능력 계발을 통해 가정·사회 내 의사소통 능력 향상 • 인성발달: 다문화가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 자신감 확보 • 언어능력 활용을 통해 부모 나라 양국의 교류와 우호관계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 기대

자료: <http://hufslanglg.org>.

<표 IV-10> LG 사랑의 다문화학교 이중언어과정 프로그램 소개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LG 사랑의 다문화학교 온라인 과정 • 사업기간: 2012년 3월- • 사업운영: LG, 한국외국어대학교 다문화교육원
사업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가정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며, 언어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음 • 아동의 정서적 발달은 부모의 정서적 교류에서 완성되며,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계발은 가정 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킴 • 부모 양측의 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긍정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구성원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음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언어: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 교육대상: 초등학교 재학생 • 교육인원: 300명 • 교육과정: 온라인교육(www.hufslanglg.org), 한국어-중국어과정, 한국어-베트남어 과정, 1, 2학기 각 20주 수업, 학기당 각 언어별 10회 교육 • 교육내용: 이중언어 교육 및 해당 국가의 문화교육, 멘토-멘티를 연결하는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교우관계, 학교 생활 등에서 멘티가 겪는 문제에 대한 도움 제공
사업목표	<p>부모 양측의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양성</p>
사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능력 계발과 정서적 안정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 기대 • 언어발달: 언어 능력 계발을 통해 가정·사회 내 의사소통 능력 향상 • 인성발달: 다문화가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 자신감 확보 • 언어능력 활용을 통해 부모 나라 양국의 교류와 우호관계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 기대

자료: <http://hufslanglg.org>.

다. STX 그룹: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 건립

- 그동안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다문화지원은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다양성의 확장보다는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한국사회와 언어적 일원화에

초점을 맞춰왔음. 대표적인 예가 기업과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실행되는 한글말 교육임. 사회공헌활동의 내용 또한 시혜적인 성격의 일회성 지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이와 달리 STX의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 건립은 차별성이 있음. 다문화 어린이도서관은 베트남, 몽골어, 태국어 등 다양한 어머니 언어로 된 책을 구비하고, 외국어로 동화 공연을 하고 있음.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한국어 교육을 넘어 다양한 언어가 상징적으로 어우러져 문화적 다양성을 확장하는 차원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STX는 2008년 5월 기업사회공헌차원으로 다문화도서관 건립 구상을 발표한 후 2008년 7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다문화어린이도서관건립기금을 전달했음. 지난 2008년부터 서울(2008.9), 창원(2009.9), 부산(2010.4), 구미(2010.7), 대구(2010.12), 충주(2011.4), 안산(2011.10) 등 총 7곳의 다문화 도서관 '모두'를 통해 13개국 아동도서를 비롯해 총 6만 여권을 지역사회에 기여. 모두에는 도서뿐만 아니라 세계 음악자료, 만화영화, 동요 등의 동영상 자료들을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다양한 문화의 바다'). '모두'는 다양한 문화가 모두 모인다는 뜻으로, 국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자국 문화를 접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임.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여 다양한 문화의 교류 장으로 발전하고 있음.
- 다양한 문화가 모이는 어린이 도서관 '모두'는 다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사회적 공간'임. 모두 도서관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를 말하고, 만들고, 놀이로 체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면서 다양성의 가치를 배워나가게 됨. 또한 '모두'는 책을 통해 모어교육의 환경을 조성함. 다문화가정의 아이에게 한국어 책 읽기를 통해 한국어 언어자극을 주고, 엄마나라 언어로 된 동화를 통해 모어보육이 자연스럽게 뿌리 내리도록 함. 일방적으로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만을 강요하지 않는 이중언어의 사용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게는 엄마나라와 아빠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모두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함. 그리고 '모두'는 서로 돌보고 키우는 품앗이 보육의 사랑방을 표방함. 국적과 인종은 달라도 함께 육아를 고민하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줌.

<표 IV-11>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의 주요 프로그램 현황

지역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서울	다문화 인형극	'모두'에 소속된 이란, 몽골, 베트남 등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의 전래동화를 번역해 기획·공연연출
	꿈친구 책친구	아이들과 책읽기(주 1회), 아이들의 학습지원과 정서적 교감, 다문화축제, 문화체험, 캠프 등 참여
	다국의 날	두 달에 한 번씩 국가별 날을 선정하여 문화체험
	도서관에서 하룻밤	도서관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베트남 귀신과 한국 귀신 이야기, 별자리 알아보기, 영화보기, 책 속에 보물찾기 등
	다문화축제	세계 각국의 전통공연, 음식, 전통놀이, 의상 체험 등
	세계동화구연대회	자국의 창작 및 전래 동화를 구연하는 형태로 '자국어와 한국어 혼용', '한국어만 구연', '자국어만 구연'(이중언어 구연시 가산점)
창원	날마다 책 읽어주는 엄마	아시아 각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동화읽기 프로그램
	끼리끼리	다문화도서관을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
	다문화어린이합창단 '모두'	경남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부터 오카리나 배우기, 각종 공연 및 경연대회 참가, 음악캠프 등
	다문화가정 돌보미	다문화 감수성 체험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하는 영어회화	필리핀 원어민 선생님(결혼이주여성)에 의한 시민영어회화 프로그램
	테마가 있는 도서관 (베트남)	재환이가 소개하는 엄마나라 베트남, 행복한 베트남 동화 세상, 즐거운 베트남 문화체험(의상, 놀이, 음식, 물품전시 등)
	여름 프로그램	GG Brain 보드 게임, 수학으로 배우는 논술의 기초, 찾아가는 다문화 세상 '다문화와 친구하기'
부산	다문화가정운동프로그램	다문화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러시아 포크댄스
	엄마나라 동화읽기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엄마들이 자국 동화를 읽어주는 프로그램
	우리는 하나	테마별 각국 문화체험
	엄마모임 '사랑방'	같은 국적 엄마들의 모임(정보교류)
	독서감상화 그리기	책읽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

구미	Book Art	베트남 문화 이해를 위한 책 놀이 프로그램
	하우스 콘서트	집이 주는 편안함과 연주자와 청중이 무릎이 맞닿는 거리에서 서로 교감
	일반인 대상 중국어 수업	중국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하는 중국어 및 중국문화 이해
	나만의 숙제천사	청소년 자원봉사자와 개별화된 학습지도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
	토요녹색환경교실	친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놀이 및 체험문화
	다문화가정의 한국어 배우기	다문화 자녀 성장에 따른 학습지도 욕구 충족
	담쟁이 독서회	영화 그리고 세계문학
대구	독서동아리	독서 공동체 활동을 통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아시아여행	각 나라들에 대한 책과 문화 소개
	우리아이 여름 독서 교실 모두학교	내가 만드는 책, 다문화 요리교실, 다문화 영화감상, 다문화 이해활동 등
충주	엄마랑 떠나는 책나라 여행	과주출판도시 견학 프로그램(동화 듣기 등)
	엄마나라 말 배우기	엄마나라 말 습득을 통한 다문화 역량 강화
	통통글레이	그림, 점핑, 종이접기를 통한 다문화 이해
	동화로 만나는 무지개 세상	구연동화, 독서논술 등을 통한 다문화 이해
	요리로 만나는 한국문화	음식을 통한 한국문화의 이해
	알기쉬운 문화기행	문화해설사의 문화해설을 통한 문화이해
안산	테마별 부모교육	그림책을 통해 부모님의 어린시절을 만나보고 자녀에게 책 읽어주기
	센베노-몽골	몽골 다문화꾸러미와 몽골 한역도서 전시, 몽골역사 영화 및 문화설명
	내 생각에 논리를 세우자	독서토론과 글쓰기를 통해 논리적 사고 함양

출처: <http://www.modoo.org>에 게시된 각 지역 도서관의 주요 사업을 일부 발췌.

라. POSCO: 이중언어 역량강화를 위한 언어영재 교실사업

- POSCO는 2010년부터 다문화가정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MOU를 체결하고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특히 POSCO는 2012년 한국외국어대와 '이중언어 역량강화를 위한 언어영재 교실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이중언어 역량강화를 위한 언어영재 교실사업'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모국어와 한국어를 가르쳐 이중언어 전문강사를 육성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언어와 문화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임.
- POSCO는 전체 프로그램 운영비용은 물론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POSCO페밀리사 방문을 통한 직업체험, 직원들의 멘토링 봉사활동도 적극 지원할 방침. 한국외국어대는 언어전문 교육기관의 특성을 살려 결혼이민자에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제공. 또한 언어영재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10곳을 선정해 다문화 언어영재 특성화 프로그램의 신설과 운영을 담당함.

V. 다문화가정 학생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제안

1.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수립

- 다문화가정은 사회경제적 빈곤화의 '위험요인'과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이라는 '기회요인'이 동시에 존재함. '위험요인'을 통제하고 '기회요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문화학생의 성장배경 차별화 등에 따른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 다양한 특성이란, 가정생성 배경(국제결혼/외국인가정), 학생의 출생지(국내/국외), 지역적 특수성(도시/농촌 포함), 부모의 국적, 학교급(초/중/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부정책 역시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실행은 정책효과의 소실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자원투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밀한 계획 및 실행전략 마련이 요구됨.

2.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정책역량 강화

-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들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에 자치단체의 정책기획 및 수행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주요 사례와 달리,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다문화자녀 정책은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강기정·변미희, 2010; 박세훈, 2011). 즉 중앙정부의 정책이 자치단체의 매개 없이 현장에 집행됨에 따라 중복과 과잉, 실효성 저하, 추진주체 간의 갈등과 같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 평가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인적자원개발의 정책기획 및 수행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생산 및 집행, 예산과 관련된 권한을 '하향 분권화'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 없이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생산 및 집행 등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한계를 보일 것임.

3. 해외진출 기업의 인적자원화

- 현재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현지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 즉 글로벌 기업의 해외지사 근무를 위한 인적자원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잠재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해외지사 근무인력을 채용할 때 현지 언어에 유리한 다문화가정 학생을 우선 채용하거나, 국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미래사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장학제도의 활성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국내에서는 정부, 기업, NGO 등이 앞서 살펴본 이중언어 및 문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이후 이들의 취업영역을 국내에 국한시키지 않고 부모출신국으로 확장해 나간다면 '글로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현재 취업 기회를 해외로 확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로 자리 잡고 있음.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글로벌 맞춤형 취업기회'의 제공은 기업들에게는 기업경쟁력을,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는 취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4. 해외 공관의 적극적 역할

- 해외주재 한국대사관 등 해외공관들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글로벌 인적자원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및 실행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해외대사관은 현지교민지원 사업과 함께 보다 창의적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과정에서 해외대사관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현지 경험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지 정부 및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제도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전 세계 9개 지역본부, 81개국에 118개의 해외 무역관을 가지고 있음. KOTRA는 해외투자 기업들에 대한 정보 및 컨설팅 제공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지원을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핵심주제로 상정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중국(17개 무역관)을 포함하여 아시아(20개 무역관)에 37개 무역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외네트워크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부모 모국체험 교육지원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즉 KOTRA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현지 언어 및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전 세계에 산재한 KOTRA 해외무역관은 현지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해외 중심기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다문화학생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사회적 책임투자 활성화

- 최근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지원정책에서 기업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글로벌 인재육성 전략의 연계를 통해, 부족한 정부 정책자원을 보완할 수 있음.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정책수요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자원 발굴이 반드시 필요함. 기업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은 시장이 사회책임투자(sustain and responsible investment)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불균형(불평등)을 교정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기업 특유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토대한 '교육기부'(donation for education)의 활성화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글로벌 인재육성 전략을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임. 대부분 대기업들의 경우 CSR 관련 부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만큼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동시에 NGO에 대한 프로젝트형 지원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6. 다문화가정 학생의 부모 출신국 유학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이중언어 및 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 출신국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 역시 중요함.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부모 출신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이러한 흐름은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실화되고 있음. 경상북도의 경우 2012년 8월 '다문화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해외 거점대학 업무협약'을 대구 교육대학, 필리핀사범대학, 베트남 건너 대학과 체결했음. 경상북도는 2014년까지 '다문화가족지원기금'을 60억원 조성하고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해외유학을 적극 권장하여 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현장의 정책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광역시도별 장학기금 조성이 필요함. 장학기금의 관리주체는 광역시도 자치단체가 맡되, 기금출연은 자치단체 자체 기금, 지역 내 기업, 개인과 단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지역 내 대학들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해외경험 및 유학을 위한 해외협력대학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대부분 대학들이 해외의 대학들과 MOU를 체결하여 국제교류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보유한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지역화'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부모 출신국에서 안정적인 학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 강기정·변미희(2010),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정책 비교분석”, 「한국가족자원 경영학회지」, 14(3).
- 관계부처합동(2012), <2012 외국인주민정책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자료집.
- 교육과학기술부(2009), “09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계획(요약)”.
- 교육과학기술부(2012),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2012), “2012년 글로벌 브릿지 사업 설명회 자료집”
-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2006. 05) pp.1-27.
- 김승권 외(2010),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정근 외(2012), “다문화정책: 동화에서 융화로”, CEO Information 제853호, 삼성경제연구소.
- 김지현(2008),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와 교육”, 「철학연구」 106집 pp.29-52.
- 김혜순(2008),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42(2).
- 문경희(2007): 「호주의 이주·난민 청소년 정책」, 보건복지가족부 무지개청소년센터.
- 박성혁 외(2010), 「시·도교육청별 다문화교육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교육과학기술부 pp.1-479.
- 박세훈(2011), “한국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의 비판적 성찰: ‘다문화 도시정책’의 제언”, 「공간과 사회」 통권 제36호, 한국공간환경학회.
- 박정은(2007), 「다문화사회에서 생각하는 모어교육」, 일지사.
- 박정은(2009), “캐나다의 언어정책과 다문화주의: 공용어와 계승어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6(1).
- 서문희 외(2010),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지원 방안: 영유아·초등학생·중도입국자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 서현·이승은(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 성상환(2010), 「다문화가정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신원무(2009), “인력의 다양성이 글로벌 경쟁력 되고 있다”, LG Business Insight(9.30-10.7).
- 신혜정(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

화여대 석사논문

안상수 외(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

안은미(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양계민 외(2009), 「미래한국사회 다문화역량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중장기 정책 방안 연구 I: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외(201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순미(2007),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태도 및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복감”, 한국사회학회 논문집.

유희정 외(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글로벌 인재양성 방안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윤인진(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윤인진(2012), “다문화사회의 공존과 통합 과제”, <다문화사회의 소통과 공존방안> 토론회 자료집,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정책네트워크.

이남철 외(2009), 「국제결혼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인재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로미·장서영(2010), “다문화국가 이민자 정착 정책 및 지원 서비스 분석: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4(1),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

이민경(2010), <이주가정 자녀 사회통합 정책>, Working Paper No.2010-03,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영주(2008), “다문화가족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 박사논문

이재분 외(2008),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실태 연구: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이정민(2008), “한국사회의 다문화 교육방향성 고찰: 서구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8(2).

이혜승(2010),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0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환성(2012), 「다부처 프로그램의 평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1-68.

전혜정(2008), 「국제결혼가정 자녀 실태조사 및 성장지원 방안연구」, 보건복지가족부.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 정일선·배옥현(2011),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자녀 실태와 지원프로그램 개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정하성·우룡(200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조영달(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급별 교육지원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조원권·정철원(2010), 「글로벌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문화가족의 효과적인 지원방안」,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 최홍 외(2010), “다문화사회 정착과 이민정책”, CEO Information 제756호, 삼성경제연구소.
- 홍기대(2011), “다문화 가정 학생 편견 감소를 위한 다문화교육 방향성 모색: 광주·전남지역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4).

- Castles, S. and Millers, M.(200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 in the Mordern Work*, 3. New York: Guilgord Press.
- Florida, R.(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Basic Books.
- Martiniello, M.[윤진 옮김](2003),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한울.
- Richard, O.(2000), *Racial Diversity, Business Strategy, and Firm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2).
- Vertovec, S.(1996), *Multiculturalism, culturalism and public incorpor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19(1).

<Internet Homepage>

하나 Kids of Asia <http://www.kidsofasia.or.kr/>

LG-KAIST <http://lgschool.kaist.ac.kr>

LG-한국외국어대 <http://hufslanglg.org>

STX 다문화아동도서관 '모두' <http://www.modoo.org>

<부표 1> 국제결혼가정 학생들의 부모 출신국별 현황(2011년)(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비중
일본	1,642	357	285	442	282	230	147	2,707	761	540	728	847	1,169	656	918	441	12,152	32.8
중국	1,049	280	195	419	154	116	72	1,363	320	243	409	340	490	342	383	163	6,338	17.1
조선족	846	241	134	275	82	88	74	999	282	265	410	495	281	528	313	109	5,422	14.6
대만	93	24	22	35	3	7	8	73	8	11	22	5	5	10	7	10	343	0.9
몽골	130	4	2	43	8	10	10	183	9	37	22	24	17	8	18	2	527	1.4
필리핀	468	217	150	265	212	74	68	1,131	445	345	382	606	934	364	486	118	6,265	16.9
베트남	247	93	67	129	31	46	62	427	95	127	199	98	124	229	117	46	2,137	5.8
태국	101	30	18	49	18	16	6	230	51	51	57	56	104	65	76	11	939	2.5
인도네시아	41	30	6	13	3	8	-	83	3	7	12	6	8	20	14	2	256	0.7
남부아시아	95	19	17	54	3	8	8	147	7	11	8	17	15	10	23	9	451	1.2
중앙아시아	70	21	9	28	9	21	5	130	41	22	27	31	27	14	17	9	481	1.3
미국	88	24	11	15	7	21	5	97	3	6	3	6	8	21	14	8	337	0.9
러시아	87	72	9	31	3	22	8	154	10	16	14	17	5	14	20	3	485	1.3
유럽	47	23	7	10	6	8	3	40	6	5	5	4	9	3	13	10	199	0.5
아프리카	19	7	1	3	1	4	2	8	-	-	1	-	-	1	5	-	52	0.1
오세아니아	11	3	2	-	1	3	-	16	1	-	2	1	2	1	3	-	46	0.1
기타	92	51	15	50	16	22	13	178	28	19	32	17	25	22	37	11	628	1.7
합계	5,126	1,496	950	1,838	839	706	491	7,966	2,068	1,705	2,333	2,570	3,228	2,308	2,464	952	37,040	100

*교육과학기술부(2012b) 자료에는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이 합산되어 있어 2011년에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했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참고로 재작성.

<부표 2> 세부사항별 외국인 수 현황(2012년 1월 현재)

구분	주민등록 인구	인구 대비 (%)	외국인 주민수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계주민자녀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 적동포	기타	소계	혼인 귀화	기타 사유	소계	외국인 부모	외-한국인 부모	한국인 부모
합계	50,734,284	2.8%	1,409,577	1,117,481	588,944	144,214	87,221	135,020	162,082	123,513	76,473	47,040	168,583	10,451	146,071	12,061
서울	10,249,679	4%	406,293	341,121	150,433	31,217	29,063	61,901	68,507	39,164	17,380	21,784	26,008	4,114	20,461	1,433
부산	3,550,963	1.4%	49,329	38,147	16,460	6,498	6,275	3,031	5,883	3,807	3,165	642	7,375	148	6,770	457
대구	2,507,271	1.2%	31,231	23,683	11,288	4,241	3,068	1,669	3,417	2,423	2,024	399	5,125	168	4,598	359
인천	2,801,274	2.6%	73,588	56,209	30,620	8,202	2,117	5,992	9,278	7,827	4,850	2,977	9,552	717	8,141	694
광주	1,463,464	1.4%	20,649	15,099	6,333	2,966	3,094	993	1,713	1,624	1,410	214	3,926	58	3,620	248
대전	1,515,603	1.5%	22,499	16,888	3,992	3,359	5,413	1,841	2,283	1,764	1,398	366	3,847	136	3,340	371
울산	1,135,494	2.2%	25,163	19,647	11,457	2,627	573	1,226	3,764	1,934	1,507	427	3,582	128	3,123	331
경기	11,937,415	3.6%	424,946	344,406	209,784	38,953	10,392	41,959	43,318	38,175	22,327	15,848	42,365	3,663	35,447	3,255
강원	1,536,448	1.5%	22,731	14,685	5,584	3,837	2,321	1,353	1,590	2,266	1,990	276	5,780	80	5,333	367
충북	1,562,903	2.4%	37,653	28,302	15,734	4,511	3,278	2,572	2,207	2,906	2,286	620	6,445	211	5,670	564
충남	2,101,284	3.2%	67,157	52,199	30,442	7,413	6,380	4,108	3,856	4,935	3,676	1,259	10,023	356	9,019	648
전북	1,874,031	1.9%	35,281	23,212	9,444	5,765	4,124	1,361	2,518	3,303	2,883	420	8,766	97	8,123	546
전남	1,914,339	2%	39,006	24,886	12,934	6,758	2,097	1,089	2,008	3,357	3,010	347	10,763	148	9,811	804
경북	2,699,195	2.1%	56,250	42,041	23,873	7,109	5,725	2,057	3,277	3,958	3,530	428	10,251	150	9,360	741
경남	3,308,765	2.6%	87,395	69,323	46,847	9,133	2,375	3,363	7,605	5,310	4,504	806	12,762	244	11,478	1,040
제주	576,156	1.8%	10,406	7,633	3,719	1,625	926	505	858	760	533	227	2,013	33	1,777	203

주: 외국인주민 자녀는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 취득자'의 자녀임. ※ 외국인주민 자녀중 '한국인부모'는 한국인부모 사이에서 출생했으나, 부 또는 모가 '이혼 후 외국인과 재혼'한 가정의 자녀.

출처: 행정안전부(2012.8),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부표 3> 국적별 외국인 수 현황(2012년 1월 현재)

구분	합계	동북아						동남아						남부아	중앙아	미국	러시아	기타
		소계	중국	중국 (한국계중국)	대만	일본	몽골	소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 네시아	기타					
합계	1,409,577	869,518	211,458	570,158	24,915	38,560	24,427	312,590	162,254	59,735	28,733	30,394	31,474	62,862	32,919	68,648	8,743	54,297
한국국적 미취득자	1,117,481	674,034	147,301	462,268	21,424	21,763	21,278	230,053	110,564	38,378	25,981	29,645	25,485	60,013	29,637	66,887	6,976	49,881
외국인 근로자	588,944	331,402	22,992	295,604	155	1,604	11,047	159,208	64,407	26,855	22,518	27,914	17,514	45,915	22,965	13,796	2,483	13,175
결혼이민자	144,214	78,136	34,906	29,184	514	11,145	2,387	53,681	37,302	8,292	2,593	506	4,988	2,405	2,508	2,408	1,315	3,761
유학생	87,221	72,001	62,289	2,205	568	2,059	4,880	6,173	3,027	522	401	609	1,614	2,902	1,057	919	495	3,674
외국국적동포	135,020	73,550	0	72,870	43	637	0	132	0	12	4	72	44	10	1,929	40,421	978	18,000
기타	162,082	118,945	27,114	62,405	20,144	6,318	2,964	10,859	5,828	2,697	465	544	1,325	8,781	1,178	9,343	1,705	11,271
한국국적 취득자	123,513	102,655	30,926	68,612	1,876	560	681	17,286	10,452	5,537	325	125	847	825	491	339	628	1,289
혼인귀화자	76,473	58,527	19,764	37,226	801	230	506	16,389	10,083	5,134	268	103	801	650	392	9	170	336
기타사유 취득자	47,040	44,128	11,162	31,386	1,075	330	175	897	369	403	57	22	46	175	99	330	458	953
외국계주민 자녀	168,583	92,829	33,231	39,278	1,615	16,237	2,468	65,251	41,238	15,820	2,427	624	5,142	2,024	2,791	1,422	1,139	3,127
외국인부모	10,451	8,995	2,726	5,925	97	197	50	979	516	369	43	4	47	225	37	49	34	132
외국인- 한국인부모	146,071	78,045	27,451	31,087	1,488	15,842	2,177	58,952	37,215	14,375	2,180	587	4,595	1,477	2,497	1,261	980	2,859
한국인부모	12,061	5,789	3,054	2,266	30	198	241	5,320	3,507	1,076	204	33	500	322	257	112	125	136

출처: 행정안전부(2012.8),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사업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전 기 수(대전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구 요약

본 연구는 급증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과 지원방향을 분석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지원내용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다문화가족 지원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체계와 지원내용,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이나 개선사항들을 고찰함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방향이냐 구성 프로그램을 현실에 부합되는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도출해 보고자 함에 있다.

더불어 제도적 현실적 측면에서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파악해 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주체에 의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그간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총체적인 정책적 지원방향에 의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며 중복지원의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도시형, 도농형, 농어촌형 등 지역적 특성과 생활방식의 차이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지원 서비스 주체인 종사자들의 역량에 서비스의 질이 크게 좌우 되는 점을 감안 양적, 획일적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현실적 제도적 문제점 들을 적시하고

지원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다문화 사각지대를 짚어보기 위해 설문조사와 종사자 간담회를 통하여 제도적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처한 결혼이민자와 현실적으로 지원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갈등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 해소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의 정책방향과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현실진단과 이에 대한 정책개선 방안을 도출하였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해체의 한 원인으로서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이의 해소를 위한 지원 개선방안을 접근성강화와 다문화가족 구성원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과 법적 측면의 지원 사각지대를 적시하고 이의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차 례

I.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내용	4
II. 연구내용	6
1.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정책 및 지원 방향	6
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방향	7
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9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와 지원내용	13
가. 중앙부처의 지원	14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20
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지원	25
라. 시사점	28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사업	28
가. 현황	28
나. 사업추진체계	29
다. 지원 사업내용	31
라. 문제점과 개선사항	31
III. 지원 사각지대와 해소방안	34
1. 설문조사	34
가. 실시배경	34
나. 설문 조사내용	34
다. 설문조사 결과분석	36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간담회	40
가. 간담회 배경	40
나. 간담회 일시 및 장소	40
다. 참석자	40
라. 간담회 내용	40
3. 사각지대 현황과 개선사항	43
가. 지원 사각지대	43
나. 개선사항	45
IV. 정책 개선사안	46
1. 지원정책 방향	46
2. 지원체계	46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7
4. 지원 사각지대 해소	47
 참 고 문 헌	 50
 부록. 다문화가족의 지원 설문조사	 51

표 차 례

<표-1> 여성가족부 추정 다문화가족 증가 추이	7
<표-2> 중앙행정기관 다문화가족 주요 지원서비스	15
<표-3>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20
<표-4>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현황	25
<표-5> 민간부문 다문화가족 전용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27
<표-6> 연도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증가 현황	29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접근(Approach) :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 우리나라는 흔히들 배달의 민족, 백의의 단일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지만 산업구조의 변화, 교통수단의 발달, 다국적 기업의 등장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국가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자본과 사람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스러운 국제화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국제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서 사람과 문화의 이동에 따른 다문화 사회의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20세기 말부터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단일문화 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이동에 따른 다양한 이슈들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2.8%를 점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인구유입은 90년대부터 시작된 외국인 산업연수생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 들어서 최근까지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의 급격한 유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이동에 따른 우리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이 아직은 낮은 것으로(안상수 외, 2012) 조사되고 있으며 국가재정 부담이나 범죄증가와 같은 사회문제 야기 등 부정적 요인들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다문화시대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며 대처방식에 따라 이점도 많은 만큼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가적 비전과 방향설정을 통한 사회와 국가의 발전전략 마련이 향후 커다란 과제가 될 것임은 자명함.
- 다문화 사회에 접근하는 정책 모델은 차별적 배제주의, 동화주의, 다문화주의로 대별되는데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인종이나 국적, 문화차이에 관계없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과 그 행사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는,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양한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을 지향하는 이념을 모

토로 하는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다문화 사회의 국가정책 모델이 중·장기적으로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서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임.

-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정상의 다양한 다문화 사회 정책 및 지원체계를 결혼이민자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점검해 보고 특히 시행되는 프로그램들의 현황과 실제 및 실행 종사자들의 평가 등 총체적 개선 방향의 도출은 유의미하며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서 소외되는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들을 어우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큰 실정임.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조사 분석

- 현재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서 가장 큰 요인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들임(다문화가족 지원법상의 다문화가족). 이들에 대한 다양한 사회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분에서 부터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모토로 한 민간기업과 대학, 언론 등 그 지원 주체도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임.
- 다양한 지원주체에 의한 지원은 상기에 언급한 다문화주의라는 정책적 지향모델과 합치되는가 또는 중복에 의한 비효율은 없는가 라는 문제제기와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하고 사회 융합을 좀 더 바람직 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논의를 낳게 됨. 다양한 주체에 의한 지원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온정주의적 지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임.
- 따라서 다문화 사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다양한 주체에 의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여 중복과 비효율, 현실과의 괴리 등 문제점 도출을 통하여 이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적,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한 사안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결혼이민자 교육의 구심기관)의 지원체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및 시부모 등 다문화가족은 다문화 시대의 주축이며 함께 융화되어 살아가야 할 세대이기 때문에 향후 다문화 정책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척도임.
- 이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총괄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지원내용과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 현장 실무 종사자들의 의견과 평가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일은 시의성과 필요성이 높은 사안임.
- 전국 206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사업에 대한 일률적인 지침에 의한 지원사업 수행이 도시나 농촌 또는 도농혼합과 같은 지역적 특성이나 거주민의 생활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서 지원해야 하는 현실적인 측면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극복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도 동 연구의 배경이 됨.
- 한편, 정형화된 프로그램과 실적평가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되며 알면서도 이를 등한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제도적 문제들을 짚어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가치 있는 일임.

2. 연구 목적

○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조사를 통한 실효성 제고와 방향성 제시

- 동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은 다양한 지원주체들에 의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현장 실무 종사자들의 의견과 평가를 통해 지원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보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성격을 분석하고 분류하여 지원 프로그램이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방향성에의 부합여부를 판단하고 향후 바람직한 지원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임.

○ 사각지대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종사자의 역량 강화 방안

- 정형화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성격상 다문화가족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일은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기대하기 어려운 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업무를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현장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는 지원업무를 실효성을 높이는 제 1의 요소인 바, 지원체계와 프로그램의 현황조사와 분석에 수반하여 현장에서의 다문화가족 사각지대의 유형과 실재를 상담사례나 결혼이주민이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파악해 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장 실무자들의 사각지대에 대한 서비스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업무수행능력 제고와 연계하여 제도적, 현실적 방안들을 모색하여 보고자 함.

3. 연구 내용

- 다문화사회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지원체계와 지원내용(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에 대한 현황 분석.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 조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도출
-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와 이를 위한 종사자 역량 강화 방안

4. 연구 수행 방안

- 다문화사회에 대한 기존의 연구 보고서나 문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 보고서, 간행물,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취합과 정부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시스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정리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사안들을 도출.

- 지원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 결혼이주민 및 지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을 병행하여 현실적인 지원 사각지대를 파악해 보고 지원 종사자의 시각에서 현
실적으로 주어진 제도적 틀 내에서 지원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이를 해소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함.

Ⅱ. 연구내용

1.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정책 및 지원 방향

- 적극적인 개방과 사회통합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숙한 다문화사회의 발전을 위해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의 외국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한 '제한 외국인처우기본법'을 제정(2007.12)
 -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14개부처 장관 및 7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를 출범시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
- 기본 정책 방향은 경기 활성화 등 경제적 측면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유치 등 개방정책과 함께 국제결혼 이주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 가족(결혼이주민, 그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주한 외국인의 인권옹호를 위한 정책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대별하여 세부 시행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이는 다수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관계로 각 기관의 입장에서 또는 필요에서 시행되는 지원 프로그램이 무차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 통합 관리하는 종합적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라는 역기능을 발생 시키고 있음.
- 한편,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른 소위 다문화가족 및 그 자녀들의 지속적인 증가추세가 예상됨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됨.
 - 3년간(2010~2012)에 걸친 1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5년간(2013~2017)의 제 2차 다문화가족지원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립 중에 있음.

<표-1> 여성가족부 추정 다문화가족 증가 추이

연 도	2011	2013	2017	2020
다문화가족 수	57만명	66만명	84만명	100만명

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방향

○ 1차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의 수립배경은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태동기의 결혼이민자의 초기 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의 시행과 그들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을 지원하고 대국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초점을 둔 반면 2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다문화사회의 발달기를 전제로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함.

- 다양한 문화가 존중되는 다문화가족의 구현,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안전한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및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추진체계 정비라는 6개의 기본방향을 설정함.

1)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지원방향을 맞춘 1차 기본정책에서 배우자와의 쌍방향에 초점을 맞춘 지원정책을 통한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상대방의 문화와 제도의 이해를 위한 상대국 문화 교육 강화, 상호 소통을 위한 상대국 언어교육 강화,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다언어 프로그램 편성과 케이블 다문화방송 등 쌍방향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려는 기본방향을 설정함.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 언어발달이나 언어영재 교육과 같은 특정된 교육지원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한국어 능력 향상과 건강한 발달을 지원
 - 집중하는 취약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학교생활 초기적응을 지원키 위한 예비학교 운영과 초기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글로벌 선도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기초학력 향상과 진학지도를 강화하고 공교육에 대한 접근성제고를 위한 입학절차 안내 등 제도적 지원체계를 정비

3) 안전한 가족생활 기반 구축

-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신상정보 제공 정착화 등 국제결혼 사증심사의 강화와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
 - 다문화가족 코디네이터를 양성, 개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국제결혼 중개업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과 피해상담 지원을 강화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각지대 발굴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

4)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 및 취업활성화를 위해
 - 공적원조사업(ODA) 추진시 결혼이민자의 참여를 통한 역량확대, 지자체 일자리 지원시 참여확대 등 제도적 취업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결혼이민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특화된 직업훈련 과정의 개발과 경비지원, 결혼이민자의 재능기부 등 자원봉사활동과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

5) 사회적 수용성 제고

- 다문화사회가 진일보하기 위한 선결전제는 일반국민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와 다양한 문화나 인종을 존중하는 우리사회의 문화를 조성해야 함.

- 외국의 사례와 같이 적어도 인종이나 문화의 다름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차별금지법'을 마련하고 대중매체나 인터넷상의 문화다양성 홍보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다문화가족 종사자나 공무원 등 관공서와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성과를 확산시킴.

○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 급증에 따른 공교육장에서의 학생 간 상호교류 교육 확대, 교원의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한 강좌개설, 다문화교육 내용을 유치원교 사용지도서 및 초, 중, 고등 교과서에 반영하여 개발 보급함.

-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병영입대에 따른 병영 내에서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군인복무규율에 차별행위금지 반영 등.

6)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체계 정비

○ 다문화사회의 발전기의 다양한 정책추진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추진될 수밖에 없는 추진체계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

- 다문화가족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부처 간 중복이나 연계필요성 사업들을 발체하여 조정하고 지자체 사업으로의 전환이나 조정 등 효율화 조치

- 지원 서비스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가족의 지원 세분화 전략을 마련하여 기존 지원 서비스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배치하고 국제결혼 주요 송출국의 결혼제도와 가족제도에 대한 이해제고와 혼인과 이혼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을 강화.

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나 실질적으론 동화주의 내지는 온정주의적 접근

- 다문화사회에 대해 어떤 철학으로 접근하여 궁극적으로 윈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결과 인종이나 종족, 출신국의 구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하지 않는 다문화주의가 설득력을 얻음.
- 이러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성격, 프로그램, 종사자들의 의식 등을 보면 동화주의 내지는 온정주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현실임.
- 이는 다문화사회에의 급격한 이행과 이에 따른 정부정책의 시행이 방향성이 명확치 않은데 따른 현상이라 보여 지며 향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공지되고 교육되어야 할 사안임. (최근의 언론 보도자료 참조)

[출처: 서울=연합뉴스 / 2012.12.20 / 김태중 기자]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다문화 정책에 대한 명확한 대상과 명칭, 목표 등이 혼재되면서 '다문화'라는 용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소수에 대한 지나친 '시혜적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까지 제기되며 다문화 정책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 **다문화정책 '동화주의' 표방?** =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이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헷갈린다.

이민자들을 우리 사회로 동화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그 자체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애당초 사회적 협의와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선진 다문화국가들의 실패 사례를 토대로 '동화주의'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분위기이지

만, 우리의 정책은 동화주의적 경향에 가깝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 박사는 "다문화 정책이 동화주의로 가야 한다고 출발한 것은 아니지만 방향성 없이 가다 보니 '동화주의적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면 귀화시 이를 면제해 주는 등 한국말과 문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반드시 동화주의라고 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 역시 방향 설정이 없는 데서 나온다는 지적이다.

좌표 잃은 정책은 갑자기 늘어난 이주민 문제 해결에 급급해 프로그램 위주로 정책이 이뤄지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시각이 많다.

또 2007년 한국 사회에 다민족적 성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에 다문화를 현상적으로만 받아들인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 **결혼이주여성 복지 치중**...역차별 논란 = 다문화 정책이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지나친 복지정책'이라는 점이다.

결혼이주여성이 전체 외국인·이민자 중 10%가량밖에 되지 않는 데 비해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 다문화가족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가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을 합치면 2천억원에 육박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부연구위원은 "다문화가족 정책은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시혜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며 "심지어 '복지 쇼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시혜적인 서비스는 다문화인들 사이에서도 상대적으로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한 외국인 노동자와의 차별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특정 소수 집단'만을 위한 무분별한 서비스라는 주장과 함께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역차별로 꼽히는 것은 보육료. 다문화가정 자녀는 일반 가정의 자녀와 달리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여기에 채용 목표제를 두면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 역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역차별이 불만으로 쌓이게 되면 결국 내국인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계명대 김혜순 사회학과 교수는 "다른 국가에 비해 국민이 느끼는 좌절과 열패감이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지원은 위험하다"며 "선진국에서는 이민 2~3세대에서 나오는 갈등이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이내에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다문화' 용어 폐기 주장도 = 다문화는 '멀티컬처'(Multiculture), 즉 문화적 다양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문화'라는 용어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이는 '다문화'가 우리 사회에 사용되면서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특정 집단을 연상케 하는 용어가 돼버렸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서울대 다문화교육연구센터 소장인 권오현 교수는 "'다문화'에는 공존의 의미는 없고 우리와 피부색이나 생김새가 다른 '차별'을 뜻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어 "이 같은 의미를 지닌 '다문화' 용어의 사용은 내국인과 이주민과의 통합을 꾀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용어는 깨끗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지원해도 괴리를 좁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혜순 교수도 "'다문화'라는 용어의 뜻이 무엇이던 간에 지금은 외국인 전반이나 다문화주의의 줄임말 등 다양한 의미가 혼재돼 있어 소통이 안된다"며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네스코는 2001년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을 발표하고 '문화다양성'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멀티컬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용어보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 박사는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인식"이라며 "다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 언론보도에서 지적하듯이 다문화가족 지원의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낌
 - 프로그램이 결혼이주 여성 중심이고 평가체제도 결혼이민자의 프로그램 이용률을 중시하며 이에 따른 다문화 프로그램 쇼핑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한편 Multiculture 의 한국어 표기인 다문화란 용어가 결혼이주민 및 그 자녀들을 지칭하는, 따라서 그들을 Category 화하여 구별하는 상징적 용어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그래서 당사자들은 다문화가족임을 드러내 보이려 하지 않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함.
- 이는 지원프로그램의 방향성에 있어 다문화사회 인식에 대한 내국인의 수용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정책임을 보여주고 있음.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와 지원내용

- 외국인정책에 대한 국적문제, 출입국 및 체류허가 등 사증문제, 사회통합 문제 등 거시적 총괄적 정책은 법무부에서 주관하며 이에 따른 실질적 지원정책은 유관 부처에서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로 시행되고 있음.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 체계는 크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등 3부문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정책을 총괄 수립하여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시행하되 건강가정진흥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사업성격에 따라 관리기관과 거점기관을 통해 서업을 수행하는 구조임.
- 국제결혼 전 단계서부터 입국단계, 초기 정착단계, 자녀 양육단계 등 생애 주기

별 다양한 지원 수요에 맞추어 중앙부처 차원의 정책적 배려와 예산 지원에 의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

가. 중앙부처의 지원

○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서 각각의 고유기능과 연계된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결혼 입국 이전단계, 입국단계, 초기 정착단계, 육아단계 등 생애 주기별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중앙부처의 기능에 부합된 부분을 선정하여 서비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중앙부처의 고유기능과 연계한 다문화가족 관련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교육과학기술부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교육청과 연계 초, 중, 고 공교육에서의 다문화 거점 학교 및 전담교사 지정 등

- 고용노동부

: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지자체와 연계(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으로 취업 등록 및 구직알선

- 농림수산식품부: 결혼이민자 영농기술 교육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교재 개발과 보급, 문화교류 프로그램 지원

- 보건복지부: 결혼이민자 사회보장 지원

- 법무부

: 결혼이민자 입국, 체류, 귀화, 허가지원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국어 및 다문화사회 이해 제고 교육시행

- 외교통상부 : 결혼이주자 주요 송출국가와의 외교관계 지원
- 행정안전부 : 결혼이민자 생활 정착 지원, 지자체 지원기반 구축
- 여성가족부 : 국제결혼 중개관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 운영

<표-2> 중앙행정기관 다문화가족 주요 지원서비스

중앙행정 기관명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고용 노동부	결혼이민자취업지원 사업	결혼이민자	구인구직등록 후 상담 등을 통하여 취업 알선
	내일배움카드제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특화과정 수강시, 자부담 없이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과정 지원 ※ 1인당 200만원(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결혼이민자는 300만 원)
	취업성공패키지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교육과학 기술부	대학생 멘토링 사업	다문화가족 학생의 학습 지도를 받고 있는 전국 대학 재학생	다문화가족 학생을 학습지도하는 대학생에 근로장학금 지급
	이중언어강사 양성 사업	한국어와 모국어의 이중언어 구사능력을 갖춘 다문화가정 학부모	이중언어강사 양성 교육
농림수산 식품부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 교육	농촌지역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농업이론 및 현장체험교육 실시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 1:1 맞춤농업 교육	거주기간 1년이상으로 실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전문여성농업인(멘토)을 연계하여 1:1맞춤 농업교육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과정	가족단위(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시부모, 자녀 등)로 참여(2~4인)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농촌정착지원 교육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청소년 문화다양성 교육 -Global Weekend, 박물관에서 세계를 만나다	14세~16세 청소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타문화 인식 제고 교육 - 교과연계 세계문화 체험 교육 - 음식으로 배우는 다문화 교육
	국립중앙박물관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외국인, 다문화가족, 내 국인가족	* 문화재 체험 다문화 교실 - 기획, 특별전시(국의 유물 소재)와 연계한 체험 * 박물관 세계문화 아카데미 - 기획, 특별전시(국의 유물 소재)와 연계한 세계문화 강좌 및 우리 문화 체험
	다문화가정어울림 생활체육 지원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대상 생활체육 교실 및 행사 개최
	다문화가정을 위한 독서진흥 콘텐츠 서비스	다문화가족, 외국인, 일 반 국민	전래동화 및 우수그림책 5개 국어 번역 동화구연 및 애니메이션 제공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태국어, 몽골어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방문 학습 자료 개발	다문화가족 자녀	*1단계(말놀이 단계)3~4세용 방문학습지 및 그림책 등 개발 *2단계(글놀이 단계)5~6세용 방문학습지 및 그림책 등 개발 *3단계(국어놀이 단계) 취학 직전 아동 대상 방문학습지 및 그림책 등 개발
	다문화꾸러미	*다문화센터, 박물관, 학 교 등 다문화교육관련 기관 *일반국민 및 어린이 등 *다문화가정 어린이	*다문화꾸러미 개발: 다문화 이해를 위한 체험전시상자 및 학습교구재 개발 *다문화꾸러미 대여운영(몽골, 베트남, 필리 핀 꾸러미): 다문화 체험자료가 필요한 기관 에 대여운영 *다문화꾸러미 연계교육: 박물관에서 만나 는 이웃나라, 열려라 다문화꾸러미, 다문화 강사교육 등 *다문화꾸러미 홈페이지 운영 *이중모국어 말하기 대회
	도서관 다문화 자료실 설치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 외국인, 일 반 국민	*공공도서관내 다문화 자료실 설치 ※조원도서관, 용학도서관, 연천군중앙도 서관, 전주시립도서관, 김제시립도서관, 여 수 시립도서관, 정독도서관, 충청남도평생 교육원, 담양공공도서관, 해남공공도서관, 거제 도서관(총11개관) *공공·작은 도서관에서의 다문화 관련 문 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독서 교육 프로그램, 책을 활용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등(총40개관)
	디브리리포털	다문화가족, 외국인, 다	다문화 정보(7개 언어), 다문화 책정보, 다문

	다문화정보 서비스	문화 관련 실무자 및 연구자, 일반 국민	화 블로그 콘텐츠 운영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문화예술기반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화의집 등 문화기반시설 사용자(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문화예술에 기반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
	한국어 교육 교재 개발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등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교원용 지침서 개발 *부부공동학습교재 알콩달콩 한국어(중국어, 베트남어)개발 *이주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 개발
	한국어 교육 방송 제작·방영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방송 ※EBS '함께하는 한국어' ※방송기간:2012.2.27.(월)~(15주 방영) ※방송시간:매주 월~목(14:30~15:00/30분) ※방송 언어: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방송 ※KBS 2TV 'TV유치원 파니파니'
법무부	결혼이민자네트워크 지원	결혼이민자	출신국가·지역별 결혼이민자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공유, 커뮤니티 조성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국내 체류 재한외국인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과정 교육
	정부합동고충상담 실시	재한외국인	고충상담, 무료법률지원, 무료 건강검진
	행복드림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신규입국 결혼이민자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한국생활 기초정보 제공, 통역, 상담, 멘토
보건 복지부	결혼이민여성 건강증진 사업	여성결혼이민자	보건소 통역서비스 및 교육자료 제공, 여성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
	결혼이민자 기초생활보장제도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 외국인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의료·자활급여 등)지원
	국내거주 외국의료인 진료코디네이터 양성 사업	국내거주 외국인 의료관련 인력으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자(중국, 몽골, 베트남 등)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응대에 필요한 진료코디네이터 양성 교육(중국, 몽골, 베트남 등)
	긴급지원 사업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화재, 범죄, 천재지변의 피해자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해산·장제·연료비 지원

		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만0세~만5세 다문화가족 자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아동 보육료 정부 지원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만2세~만6세 일반 자녀 및 다문화가족 자녀(월평균가구소득100%이하)	주1회 독서도우미 방문, 책읽기서비스 제공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지원 사업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입원 및 외래 수술 총 진료비(1회 500만 원 한도), 임신부 산전진찰비, 아동 외래 진료비 등	
	정신보건센터 운영	결혼이민자와 자녀	무료 정신 건강 상담서비스 제공	
여성 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 사업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자녀, 중도입국 자녀 등)	가족생활지원, 한국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상담, 취업기초 소양교육, 취업처 연계 등	
	방문 교육 서비스	한국어교육 서비스	결혼이민자(입국 5년 이하), 중도입국자녀(만18세 이하)	한국어 교육,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한국생활 정보제공
		부모교육 서비스	만3세~만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	부모성장, 부모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지도 생애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자녀생활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만12세 이하)	독서코칭, 발표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언어발달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만12세 이하)	언어평가(초기) 및 언어교육(개별교육/모둠교육)	
	언어영재교실	다문화가족 자녀(만3세~초등학교 재학생), 非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배우자, 시부모 등)도 참여 가능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및 문화 수업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가족 및 관련 공공 기관	행정 및 사법기관, 병원, 경찰서 등 공공기관 이용시 통·번역 국적 및 체류관련 정보 제공, 임신 및 출산과 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등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의 자녀와 그 보호자	무료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과질환에 대한 (2차)심화진료 *여성가족부 서울대 치과병원, ㈜라이나생명 협력 추진 3.23~24 경북 예천, 4.27~28 전남 함평, 5.12 서울 중랑, 6.22~23 대전 중구, 7.13~14 부산 수영, 8.25 인천 중구, 9.7~8 강원 춘천, 10.26~27 경남 거창, 11.24 경기 이천
	결혼이민여성 인턴 운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등록된 구직희망 여성결혼이민자	여성결혼이민자 채용기관에 3~6개월간 지원금 지원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 훈련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등록된 구직희망 여성결혼이민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운영 중인 직업훈련과정(25개, 507명 예정)제공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Rainbow School 운영	중도입국청소년(9~24세)	멘토링, 기초생활한국어, 교우관계 및 정체성, 진로, 학과 지도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보제공 다누리 콜센터 (1577-5432)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등	다문화가족 관련 정보제공, 기관 안내 및 연계, 생활 통역서비스(10개 국어)
	이주여성 긴급지원 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여성결혼이민자	긴급지원 및 보호시설, 경찰, 병원 등 유관기관 연계
	이주여성 보호시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일시 보호, 상담, 의료, 법률, 출국 지원
여성 가족부 (경력단절 여성 지원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 결혼이민여성 인턴 운영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한 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100개소)를 통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인턴으로 사업장(채용기관)에 최대 6개월간 지원금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중 여성새	여성새로일하기센터(100개소)에서 운영 중인 경력단절여성 대상 직업교육훈련 과정

	직업교육훈련 운영	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한 자	운영 - 출산, 육아 등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이나, 여성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업교육훈련생 선발시 우선권을 부여함
행정 안전부	여성결혼이민자 지도자 양성 교육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와 새마을부녀회원 간의 멘토결연 추진 및 지도자 양성 교육
	다문화 IT 방문 지도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8개권역(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북, 경남, 충남, 전남)	한국어와 IT능력을 갖춘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IT방문지도사로 양성, 동일 출신국가 다문화가정에 방문하여 IT교육 및 국내 조기 정착 노하우 등 전수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서비스는 중앙 행정기관의 지원서비스와는 별개로 지역실정에 맞추어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행하고 있음.

<표-3>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사업지역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서울	다문화 학당 (글로벌센터)	다문화가족 및 자녀	*자녀 대상:이중언어교육, 예체능 교육 지원 *부모 대상:노래를 통한 한국어, 자녀 교육법, 취업역량강화교육 지원
	다문화정신건강 클리닉 (은평병원)	외국인 노동자,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 탈북자, 난민 대상	*외래무료진료 실시:외래진료(초진료, 상담비), 약제비, 심리검사무료(입원비는 유료) *다문화가정 영·유아 특별프로그램 운영 -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 놀이·언어·미술·음악·감각통합프로그램 실시 *다문화 정신건강 프로그램 실시: 다문화청소년 프로그램 실시
	맞춤형 한국어교실 (글로벌센터)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	맞춤형 한국어 교실(결혼이민자반, 근로자반, 글로벌반, topik시험대비반, 모자동화구연반, 특강반 등 14개반)
	서울해비치다문화가족교육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및 중도입국자녀	*교육과정:이민자, 다문화자녀, 중도입국자녀 대상 7개과정 25개반 -중도입국자녀(2):한국어,컴퓨터 교육 -다문화자녀(2):특기적성,이중언어 교육 -이민자(3):취업, 한국어, 자격증
	외국인 어린이 한국어 특별반 운영	외국인 자녀 및 다문화가족 자녀	*초등학교특별반(총 60여명):방과후 2시간(1시~3시) 주5회1:1맞춤식한국어 교육

			<p>*센터 특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등포글로벌빌리지센터: 주3회, 3개 반, 일일2시간수업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주4회, 일일3시간 수업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주4회, 일일4시간수업 	
	외국인 자녀 및 엄마대상 한국어 방문 학습	외국인자녀 및 다문화가족 자 녀(만3세~만12세), 여성결혼이 민자	<p>*한국어 방문교육(주1회), 교육정보 매거 진 제공(월1회), 적성 및 지능검사 등 심 리평가(연2회), 한국사회 문화체험 및 문 화특강(연1회)</p> <p>*외국인 자녀 162명, 다문화가족 자녀 248명 대상</p>	
부산	다문화어린이 도서관 '모두'	다문화가족, 지역 주민	무료 도서대여, 한국어교실, 독서감상화 그리기, 북아트 프로그램, 각 나라 문화 소개 및 다문화 축제 등	
	아시아 공동체 학교	다문화 수업	다문화가족 자녀(초, 중, 고), 지역내 아동 및 청소년	다문화 수업진행 (아시아 영화·음악·음식)
		대안학교 위탁교육	다문화가족 자녀(초,중,고)	국민공통교과 운영 (학력인정 위탁교육)
		동아리 활동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초,중,고)	한국문화적응 및 세계 아동청소년의 정 신적 교류 지원
		모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초,중,고)	엄마나라 언어배우기 수업
		외국어 수업	다문화가족 자녀(초,중,고)	다국적인재양성, 교육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대구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사업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시험반, 다문화강사 양성과 정, 컴퓨터자격증반, 한식자격증반, 바리 스타양성반 등	
	결혼이민자 방송 통신교육 지원	방송통신대학:35명 방송통신고:15명	결혼이민자의 학력신장을 통한 자립역 량강화 지원	
	다문화가정 책보내기 사업	다문화가족 1,000세대	4개국어(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로 구성된 창작동화책 제작배부	
	다문화가족 리더스쿨	여성결혼이민자(35명)	다문화사회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 그램	
	다문화가족 신문 발행	다문화가족, 지역주민 및 단체	테마기획, 각종 정보제공, 다문화행사 등	
	다문화가족자녀 학습지 지원	다문화가족자녀(만3세~만5세)	주1회 방문 학습지 지원	
	다문화복지대학	여성결혼이민자(상반기 30명, 하반기 330명)	한국어, 요리, 예절, 작품 만들기, 노래, 자녀교육, 한국역사문화체험 등	
	다문화어린이 도서관 운영	다문화가족 및 지역주민	도서대출, 다문화언어교실, 다문화이해 교육 등	
인천	결혼이민자 통역도우미 양성	<p>*한국체류기간이 2년 이상이고 자국 고교이상 학력 소유자</p> <p>*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통역 이 가능한 한국어 활용수준을 갖춘 자</p>	통역이론, 한국어 및 이중언어 교수법, 인천의 역사 문화 경제, 한국 문화 등(교 육시간:300시간 이상)	

	다문화가족 생활정보신문 Dasarang(인천 다문화신문) 발간	다문화가족	매월 발간하는 인천다문화신문 무료배부
	다문화가족 아동 Total-care 서비스	평균가구 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만4세~초등학생 자녀	학습지도(주1회), 멘토(월2회), 심리진단(연2회), 체험활동(연1회)
	다문화가족 자녀학습지원 멘토링	다문화가족아동 (미취학~초등, 중등 저학년)	기초학습, 교과지도, 특기 및 적성지도, 인성지도 및 상담활동, 체험, 문화활동 등
광주	다문화가족인권 지킴이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법률, 의료, 상담 등 긴급지원활동 지원
대전	다문화도서관 운영	다문화가족	월~금 자유개방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내 다문화자료실 운영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중국어, 태국어 등 3,500여 권의 외국도서와 한국생활 적용에 도움이 되는 한국도서 비치
	무료진료소 운영	다문화가족, 외국인노동자	양방, 한방, 치료, 투약 지원 (매주 일요일 오후2시~5시)
울산	다문화 전문 강사 양성	결혼이민자	다문화 전문강사 양성하여 학교, 기업체 등 파견
	다문화가족 문화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오케스트라, 합창단
	다문화가족 자녀 공부방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및 생활지도
	동그라미 장난감 도서관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	*장난감도서관 운영: 대여, 관리 *자녀발달중진 프로그램: 스토리텔링, 물루랄라 즐거운 도서관 *가족통합사업: 부모교육
	식문화 교류 조리체험 교실	결혼이민자 및 일반 주민	*7개국의 식문화 특징 등 식문화 이해하기 이론 강의 *제한외국인 조리강사 초빙 베트남식 등 5개국 대표 음식 조리체험 활동 *시어머니, 남편, 이웃주민 등 한국인과 조를 이루어 참여
	아시아 엄마들의 이요식 조리 교실	결혼이민자 및 일반 주민	단계별 이요식 조리시범, 실습
	저소득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	결혼이민자	*전문역량 강화 교육 -취업학교, 바리스타자격증 대비 교육 *취업활동 지원
경기	국제결혼이민여성 건강검진 사업	여성결혼이민자 (2011년도 건강검진자 제외)	건강검진실사(기초검사, 혈액, 간염, 갑상선, 유방암, 위장촬영 등 16종)
	다문화가정 어린이 DMZ 체험 여행	다문화가족 자녀 및 동반가족	DMZ지역(임진강, 도라산역, 제3땅굴, 해마루촌 농촌체험 등) 체험
	다문화가정	다문화 관련 지원단체 및 다문	탄탄다모객(6개언어 콩쥐팍쥐 등 10종,

	탄탄다모책 (전래동화) 지원	화 가족	90,000원) 지원
	다문화가족국제 특송우편물 할인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우편요금 11% 할인
	다문화가족 무료법률 지원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생활법률 강의, 개별 법률 상담
	오케스트라 꿈나무기	다문화가족 자녀	오케스트라 구성악기 전체 강좌 운영
	해피맘 프로젝트	저소득 출산예정 임신부, 다문 화가정 산모	다문화가정 산모에게 태교음악회, 출산 강좌 행사, 출산용품 지급
	IT정보화 방문 교육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국 출신국 지도사가 가정방문교육(컴 퓨터 기본지식, PC점검, 인터넷검색 등)
강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봉제기술(의류리폼반)/반찬점 창업반
	결혼이민자 외국어 강사 양성과정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어강사 양성과정 수료 후 지역아동 센터 영어 원어민교사 등 연계(6월~8월)
	다문화가족 강원 열린 한마음 이웃사촌결연 사업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다문 화가족 멘토링 및 자조모임 운영
충북	개명신고비원 지원	진천군내 개명을 원하는 결혼 이민자	개명에 필요한 서류발급비용 및 개명대 행수수료 지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링크 화상상봉 서 비스 지원
충남	결혼이민자 다문화강사 양성교육	결혼이민자 중 자조모임 대표 30명	결혼이민자 자아탐색, 지역사회이해, 직 업사명감 등 교육
	결혼이민자 통·번역 전문인력 양성교육	센터에서 자원봉사 통·번역사 로 활동가능한 결혼이민자 30 명	다문화가족 통역이해, 통·번역의 이론과 실제, 언어권별 토론학습 등
	다문화가족 법률 상담서비스 운영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법률상담, 법률교육, 정보제공 등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청 또는 모국방문 지원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청 또는 모국방 문 지원(연 24가족 72명)
	다문화가족 포털사이트 운영	다문화가족	각종 행정 및 지역정보 온라인 제공(다 국어 지원)
	부모-자녀 자궁심 향상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시·군별 3가정)	출신국별 특성에 맞춤프로그램 운영(자 녀뿌리찾기 교육, 부모역할 교육 등)
전북	결혼이민여성 건강검진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실시(기초검사, 혈액, 간염, 갑 상선, 유방암, 위장촬영 등 16종)
	결혼이민자 국제운송비 지원	도내 거주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국제 운송비 지원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취업희망 결혼이민자	취업 직종별 훈련 교육비 지원(4개월간)

	다문화 자녀 방문학습 지원(신규)	만4세~만9세 다문화가족 자녀	국어 또는 수학 주1회 맞춤형 방문학습 지도(10개월간)
	전북 도청도서관 다문화자료실 운영(신규)	도내 거주 다문화 가족	6개 외국어 다문화도서 1,012권 소장
전남	다문화가족 교육	다문화가족 200명 (남편, 시부모, 가족교육)	지역문화 이해교육, 다문화가족 적응 교육
	다문화가족 부부공동체 훈련	한국거주 2년 이상된 국제결혼 부부 40쌍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적응 교육
	다문화가족 온라인 요리강좌	전남지역 여성결혼이민자	온라인 요리강좌(6개국어)
	다문화가족 인터넷사용료 보조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입국 7년 이내)	다문화가족 인터넷사용료 보조 (15,020원/1개월/1가정)
경북	결혼이민여성 교육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대학재학중인 여성결혼이민자를 선발하여 일부 등록금 지원
	결혼이민여성가족 다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가족 (남편, 시부모, 여성결혼이민자)	여성결혼이민자의 남편, 시부모 등 가족 구성원에게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업체 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한글학습 지원 (10개 군지역 다문화가정 미취학 자녀)
	다문화가족 소식지 발행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 유관기관 배포	결혼이민자에게 생활상식 등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월1회)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게 각종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제공
	다문화가족자녀 온라인멘토링 교육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와 대학생간 온라인학습 및 오프라인 체험학습
	원어민 유학생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결혼이민자 모국출신 유학생이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엄마나라의 언어, 문화, 역사 등 교육실시
	저소득 다문화가족 초등학교생 자녀 학습지원	다문화가족 초등학교생 자녀	지역대학 학생이 초등학교생에게 개별학습 지원
경남	우수동아리 발표회	다문화가족으로 이루어진 자족모임	발표회를 통한 다문화가족 자족모임 활성화
	원어민강사를 활용한 외국어캠프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어캠프를 통한 다문화의 이해와 문화체험 및 외국어 학습
	아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서비스지역 월1회 방문하여 법률상담서비스, 가족교육 서비스, 독서교육 서비스 등 지원
	한글교실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글교육
	한글교실,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과 그	다문화도서관(각국 나라의 책대여 및 도

	다문화어린이 도서관	자녀 및 일반인	서관 이용)
제주	노래로 배우는 다문화가족 이해	결혼이민자 및 지역주민	노래교실 및 다문화이해
	다문화이해	결혼이민자 및 지역주민	다문화인식 개선교육
	학습코칭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청소년학습 성향분석 및 코칭

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지원

- 공공기관의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보건소의 통번역 지원서비스와 전국 도서관마다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도서관 활용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음.

<표-4>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현황

시도	시군구	도서관명	프로그램명	운영시기
서울	구로구	고척도서관	책으로 떠나는 다양한 다문화, 너와 나 우리는 하나, 책과 함께하는 역할놀이극	3월~10월
	도봉구	도봉도서관	책 속 여행 多 함께 多 행복하게	4월~7월
	동대문구	동대문도서관	다문화 공감프로젝트 '너, 나 그리고 우리'	3월~11월
	성동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구립도서관	도서관이 다문화 1등 선생님	4월~10월
	은평구	은평구립도서관	다문화 인식개선 문화프로그램	연중
부산	금정구	금정도서관	책으로 만나는 세상	6월~11월
			책 읽는 다문화 엄마	4월~12월
	남구	남구도서관	다문화 대안학교 도서지원	9월~11월
	부산진구	시민도서관	다문화 체험교실	4월~7월, 9월~12월
사상구	사상도서관	그림책 주인공과 함께하는 독서지도	6월~12월	
대구	달서구	달서다문화가족 작은도서관	도서대여·열람, 도서관 배움터 프로그램	연중
		두류도서관	생활글쓰기, 함께하는 북스타트	5월~6월, 9월 10월
	동구	동부도서관	다문화가족 문화학교, 다문화가족 책고리 멘토링 독서교	4월~12월

			육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유아 및 초등 한국어방문교육	
	서구	서부도서관	다문화 이웃과 함께하는 이야기 교육, 무지개 까꿍 책놀이	4월~8월
	수성구	수성구립용학도서관	도서관 속 다문화 교실('엄마랑 함께 떠나는 자신만만 책여행', '나를 찾아 떠나는 독서여행' 2개 강좌 운영)	5월~12월 (총 30회)
		수성도서관	찾아가는 다문화프로그램	11월~12월
			다문화가족 유아 및 초등 한국어 방문교사제 운영	4월~12월
	중구	대봉도서관	다문화가족 동화읽기 대회	9월
			그림으로 배우는 한글, 지구촌 문화 알기	4월~6월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한국전통체험	4월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9월
			행복한 동화책(북스타트)	3월~7월
			동화책 읽어주기(북스타트)	9월
			다문화가족 유아 및 초등학생 한국어방문교육	5월~10월
인천	남동구	인천중앙도서관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미술을 통한 한국문화 예술 이해	연중
	부평구	인천부평도서관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자녀독서코칭	연중
광주	남구	금호평생교육관	도서관에서 행복한 책읽기	3월~12월
			세계지리속 다문화 여행	4월~10월
	북구	광주시립무등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8월~11월
대전	중구	한밭도서관	그림책 읽으며 한글 배우며	5월~11월
울산	남구	울산남부도서관	그림책 속 다문화 여행(가계)	7월, 10월
	동구	꽃바위작은도서관	책이랑 함께해요 소중한 우리문화 재미난 우리 얘기	5월~9월
경기	시흥시	정왕어린이도서관	다함께 행복한 다문화학교, 어린이도서관!	연중
	안양시	석수도서관	이야기로 하나되는 우리 이웃	6월~11월
충북	제천시	제천시립도서관	오로라동화속 인형극나라	6월~11월
충남	금산군	추부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	2월~12월
	서산시	충청남도서부 평생학습관	책과 함께하는 다문화 이해	3월~8월
	청양군	청양도서관	함께하는 다문화 독서교실	4월~10월
전북	순창군	순창공공도서관	책과 함께 레인보우 꿈그리기	5월~11월
	완주군	완주군립고산도서관	(마음을 열어주는 독서치료) 내 마음이 들리니?	4월~6월
	익산시	익산시립마동도서관	책과 함께 떠나는 다문화 문화체험 여행	9월~11월
전남	광양시	광양시립중앙도서관	책으로 하나 되는 도서관	3월~12월
	무안군	무안공공도서관	독서지도, 독서치료 프로그램	3월~12월

	여수시	전남여수학생 교육문화회관	썩썩~ 찾아가는 책보따리	3월~12월
경북	영천시	영천시립도서관	다함께 다문화, 세계여러나라 이야기	8월~11월
	청도군	경상북도립 청도공공도서관	2012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3월~11월
경남	김해시	김해다문화도서관	도서관이 간다	3월~11월
			다문화 북스타트	상시
	양산시	웅상도서관	다문화로 만나는 즐거운 책읽기	5월~10월
			다문화로 만나는 세계여행	5월~11월
함안군	함안도서관	책으로 통하는 우리	3월~9월	
제주	제주시	제주시청(애월도서관)	책과 즐거운 다문화 경험하기	4월~10월

- 민간부문에서도 최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인 바, 사회봉사와 기업이
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복지법인을 설립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의 한 부분으로 다
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음.

<표-5> 민간부문 다문화가족 전용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기관명	사업범위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농협 재단	전국	농촌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부부 및 그 자녀(주업이 농업인 가정) * 기본조건과 우대조건에 의해서 심사 후 최종 선정 *2012년 전국 200가정 내외	*모국 방문 왕복항공권 *체제비 지원 등
농협 중앙회	전국 20개 지역농협	다문화 여성대학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남편, 시부모, 자녀	*한글교육 :한글교재 및 참여형 놀이 교육(동요부르기 등) *다문화 이해 교육 :가족(부부, 시 부모, 자녀)교육, 명절소개 *생활교육 :생활예절, 문화체험 (한국,모국)등 *농업교육 : 농사이야기, 영농기 술, 농촌문화 등
				농업후계 결혼이민여성 전문농업실습
	전국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한 농	*다문화가정 성·본창설 및 개명

		성·본창설 및 무료 개명지원	업인(귀화자)	허가 신청 무료 지원 사업 -농협 법률구조 담당자가 신청 인으로부터 위임 신청 또는 대한 법률구조공단 신청 안내
STX	7개 시도	다양한 문화가 모이는 어린이 도서관 '모두'	다문화가족 및 지역주민	다문화가족을 위한 각 국의 다문 화서적 비치 -나만의 책친구, 엄마나라 동화 읽기, 다국의 날, 다문화 언어학 교 등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여 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LG	전국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	*과학 과정:초등학교 5학년~중학교2학 년 다문화 가정 자녀 *외국어 과정:초등학교4학년~중 학교2학년 중국, 베트남, 일본, 몽 골, 인도네시아 출신 다문화가정 자녀	*KAIST가 과학과정, 한국외국어 대학교가 외국어과정을 진행하 며,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및 방 학캠프 진행 *우수학생에게 엄마나라 탐방 기 회 제공
웅진 재단	전국	라디오방송	한국거주 결혼이민자, 다문화자 녀, 이주노동자, 유학생 및 시댁가 족 및 친정 등	*8명 원어민 DJ가 24시간 다문화 가족 음악방송 (외국·한국음악, 생활정보, 한국어 배우기, 엄마나 라 동화 등)

라. 시사점

○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의 편중성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의 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는바, 다문화가족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원 서비스가 보다 더 확충 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함.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소통과 건전한 가족관계 형성은 다양한 가족 간 갈등요인을 줄임으로써 최근의 급격한 다문화가족의 해체 율 증가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중복 지원의 문제

- 지원주체 간 지원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정과 역할분담의 필요성 제기.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사업

가. 현황

- 여성가족부가 제정한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거 급증하는 결혼이주 여성 중심의 다문화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규모가 가장 큰 대표적 지원 프로그램임.
- 전국에 걸쳐 행정단위를 기반으로 설립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근간 지원조직으로 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2006년부터 설립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하여 점차 확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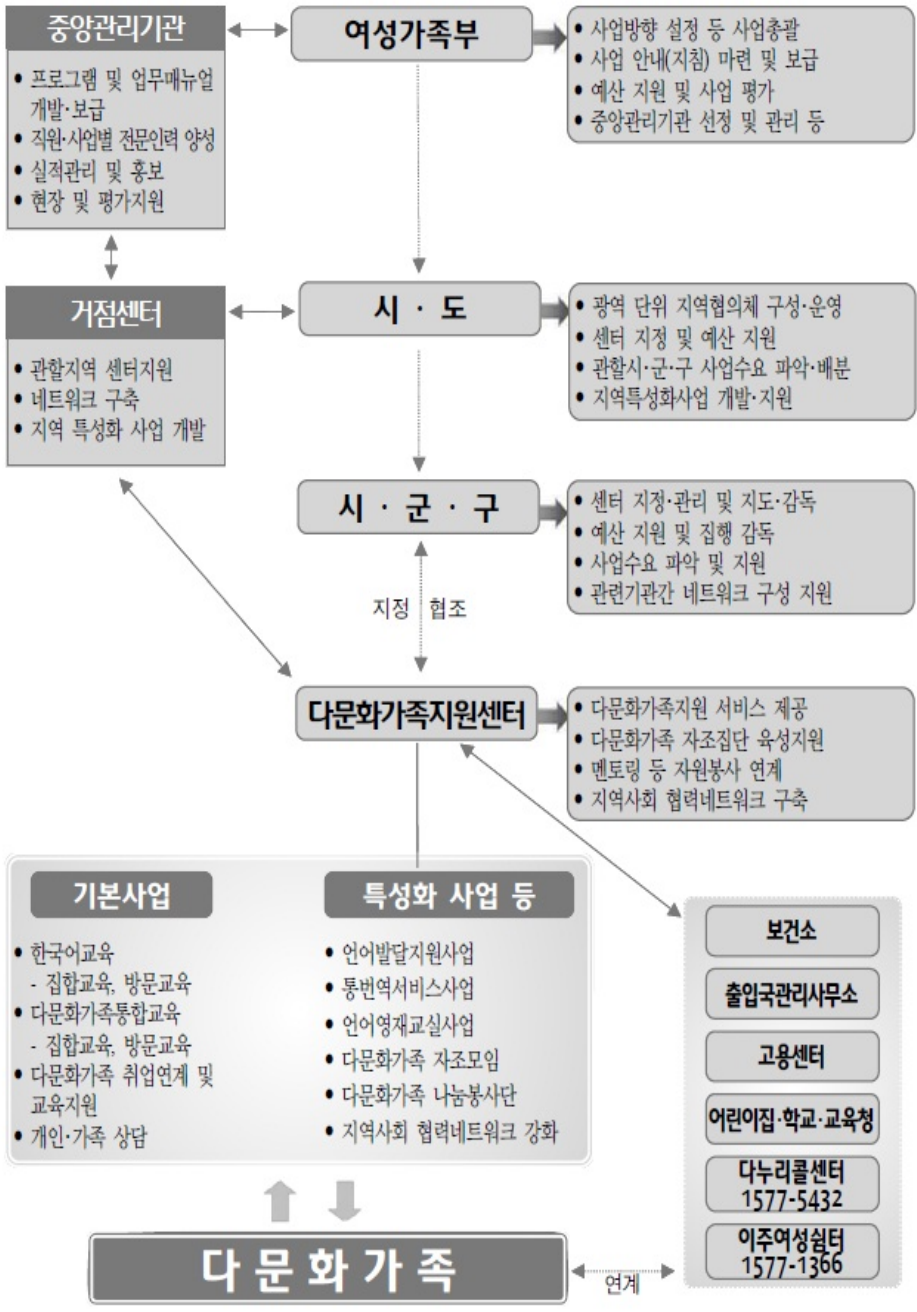
<표-6> 연도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증가 현황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센터수	21	38	80	100	159	201	208

-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생활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사회에의 조기적응과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나. 사업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중앙관리기관(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외국어대학교)과 거점센터(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소)를 지정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교육청, 어린이집, 다누리 콜센터, 이주여성쉼터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추진토록 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별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센터지정(위탁운영) 및 필요예산을 일부 지원토록 하고 있음.



다. 지원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과 사회정착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관련 인식개선 프로그램, 상담 및 통번역 등 기본사업과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사업으로 구성됨.
- 기본 사업으로 한국어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가족 통합교육, 취업연계 교육지원, 개인 및 가족상담, 나눔 봉사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다문화인식개선 및 홍보,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사업과 통번역 지원 사업으로 분류되며
- 특성화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발달지원을 위한 언어 발달사업과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한다는 취지의 엄마나라 언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언어영재(이중 언어 교육) 교육 사업이 추가 되고 있음.

라. 문제점과 개선사항

1) 운영 매뉴얼에 의한 업무 정형화와 이에 의한 양적 평가 시스템

- 매년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운영 매뉴얼에 의한 추진업무 정형화와 이에 의한 양적 평가시스템으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지원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이는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자 모집시 다양한 수혜자의 발굴을 기피하는 등 종사원의 수동적 업무수행 요인이 되며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한계로 작용.
-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기본시수나 인원을 부여하여 양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원 종사원의 수동적 업무수행 요인이 되고 있으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양적 평가를 채우기 위한 일부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중복수혜의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며

- 특히 지적된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의무적 지원 서비스는 부부교육, 배우자교육 년 10시간 이상(실질적으로 10시간)이 유일한 실정이며 한국인 남편의 참여 저조와 주중 실시의 어려움 등 요인으로 지원 종사자들이 기본시간 채우기에 급급한 실정이며 시행 프로그램의 내용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임.

2) 종사자의 고용 불안정성

- 년 단위 계약직으로의 채용, 2~3년의 기한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센터지정 절차 등 고용안정성 불안 등 제도적인 측면의 문제도 부각되고 있음.
- 센터지정절차도 영속적인 운영을 보장하지 못하는 구조로 신분상의 불안정 유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2~3년 단위의 센터 재지정 절차는 기존 운영센터를 평가하여 특별한 하자나 실적에 문제가 없으면 재지정하여 서비스의 연속성과 종사자의 근무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에도 공모방식에 의한 재지정으로 행정력 낭비와 신분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역기능을 발생시키는 실정임.
 - 한번 임용된 신규 종사자는 중앙관리기관 또는 거점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직무교육과 다문화관련 교육을 의무적, 자발적으로 받게 되며 다양한 경력을 쌓아가게 되는데 근무하던 센터가 재지정 과정에서 탈락하게 되면 종사자의 지위를 잃게 되어 예산낭비 등 비효율을 낳게 됨.

3) 지원 수혜자의 한정

- 프로그램 수행의 편의성 측면과 접근성 측면에서 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관장하는 지역적 범위가 광범위하고 특히 군단위 농촌지역의 경우 방문지도사의 열악한 처우 및 교통수단의 문제로 지원범위가 한정되는 구조임.

- 서비스 수행상의 문제와 더불어 법적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는 바, 다문화가족 지원법상의 다문화가족의 범위와 다문화가족 해체 시 결혼이민자의 서비스 대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보완이 필요함.

4) 결혼이민자 및 자녀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기본사업, 특성화사업의 방향이나 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 및 그 자녀에 치중되어 있음. 다문화가족의 통합과 우리사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지원은 결혼이주 배우자와 내국인 가족 전반을 대상으로 시행 되어야 부작용을 줄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수혜자 실적 지표도 결혼이주민의 서비스 수혜 여부로 평가하고 있으며 평일 프로그램 시행이 어려움에 따라 가족단위의 통합 프로그램 실적이 기본 시수 채우기에 급급한 실정임.

- 부부간 갈등, 가족(시부모 등)간 갈등을 줄이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개별 다문화가족 단위의 현황 파악과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통역 등 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이를 위한 다문화가족 방문 전담인력(코디네이터 또는 상담 전문 인력)의 확충과 보강이 필요함.

- 취업지원 대상도 결혼이주민 중심에서 그 배우자도 포함하여 취업지원 함으로써 대상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통한 순조로운 다문화가족 정착에 기여할 것 임.

Ⅲ. 지원 사각지대와 해소방안

1. 설문조사

가. 실시배경

- 다문화가족 지원의 체계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구체적 지원 내용과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현실적으로 지원체계나 지원프로그램에서 소외되는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이 다문화가족 해체율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중심의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제도적 요인과 근무 종사자의 역량 등 인적자원의 한계에 따른 서비스의 부재와 다문화가족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요인 및 의식의 차이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원시스템이나 프로그램과 같은 제도적 요인은 단기적으로도 점차 개선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복합적인 가족갈등의 원인을 찾아보고 이를 지원 사각지대로 인식하여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하여 한정된 범위지만 다문화 가족 중 결혼이민자 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가족 내에서의 갈등원인이나 의식, 그들이 느끼는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 정도, 복지욕구 등에 대한 설문조사의 필요에 따라 실시함.
 - 결혼이민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법상의 다문화가족이 결혼해체로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다문화가족에서 제외된 경우와 같이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설문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별도로 검토해 보고자 함.

나. 설문 조사내용

1) 설문 개요

-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주 여성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함.
- 설문기간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 사이에 시행하였음.

- 국적별 대상자

국적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계
인원	8	8	7	1	1	25

- 한국 거주기간

거주기간	1년 미만	1~2년	2~3년	3~4년	5년 이상	계
인원	7	4	4	2	8	25

2) 설문 내용

- 일반적인 지원 사각지대를 파악해 보기 위해 주로 결혼이주 여성 중심의 결혼과정(배우자 만난 경위, 결혼 전 들은 정보의 결혼 후 실제와의 합치여부, 결혼동기 등), 결혼생활에서의 만족도, 갈등과 그 유형, 부부싸움 여부와 원인, 물리력 행사 여부 및 다문화인식과 복지 욕구 등 주로 가족 간의 문제유형에 초점을 두어 설문내용을 구성하였음.
- 이는 대외적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사각지대 발굴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다문화가족 내부의 갈등요인과 그에 따른 문제들을 사각지대로 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 따른 것임.(설문지 내용은 부록에 첨부)

다.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설문조사 결과

가) 결혼 과정

○ 결혼 경위

- 부모 등 친인척 소개(12명, 48%), 친구소개 (3명, 12%) 등 주변의 소개에 의한 경우와 결혼 중개업체 (10명, 40%)의 알선이 많았음.
- 특이점은 중국출신 결혼이민자는 친인척 소개가 대부분이었으며 결혼중개업체의 알선은 베트남 출신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임.

○ 갈등의 한 요인인 결혼 전 취득한 정보와의 합치여부는 대체로 일치(7명, 28%)한다 보다는 불일치(4명, 18%),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보통 의 경우(14명, 56%)와 같이 결혼전 취득한 정보와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결혼 후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결혼동기로서 가족권유 2, 경제목적4(친정부양 2, 취업 2), 한국동경(6), 배우자 사랑(9), 기타 무응답 (4)으로 나타나 드러내기 어려운 결혼동기의 경우 경제적으로 나온 환경인 한국에서의 생활 영위(가족 권유, 경제목적, 한국동경)가 절반 정도로 나타남.

나) 결혼생활

○ 부부관계 만족도

- 만족 (15), 보통 (6), 불만족 (4) 로 만족도가 높은 편임. 불만족의 경우 의사소통이나 가사분담 문제로 인한 것으로 나타남.

○ 가사 결정권

- 함께 같이한다(13)는 경우가 배우자가(6), 본인이(6)와 같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남.

○ 갈등 유형

- 갈등이 없다는 11명을 제외한 14명(56%)의 갈등유형(복수응답)은 경제문제(25%)와 가사 육아문제(25%) 및 시댁관계(21%)와 일반적 갈등(21%)이 많았으며 부부관계 갈등(7%)도 일부 있었음.

○ 부부싸움

- 부부싸움을 거의 안한다(7명, 28%)는 응답자를 제외한 18명을 대상으로 부부싸움의 빈도를 설문한 결과 한달에 한번이상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4명), 1년(2명), 1주일(1명)순으로 절반이상이 자주 부부싸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부싸움의 원인으로는 생활방식의 차이(7), 생활비(6), 배우자 음주(5), 성격차이(3), 자녀양육문제(3), 시댁문제(1) 순으로 나타났으며
- 부부싸움 시 배우자의 물리력 행사여부는 절반정도(13명, 52%)가 경험이 있다고 답해 부부간 폭력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음.

다) 내국인에 대한 인식

-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태도에 대해 친절한 편(16명)이라는 응답이 무관심(5명), 배려가 없다(4명) 보다 많아 내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표면적 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 차별경험에 대해서 당사자 본인이 경험한 경우(17명, 68%), 자녀가 차별당한 경우(13명, 56%, 자녀 없음 2명 제외)로 나타나 절반이상의 다문화가족이 내국인

이 자신과 자녀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라) 서비스 수요조사

- 원하고 필요한 지원 서비스(2가지 복수 응답)는 언어교육(한국어교육)과 자녀 교육상담이 각각 12건(24%)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한국요리 등 문화강좌(11건, 22%), 가족관계 상담(6건, 12%), 일자리 알선(6건, 12%) 기타 의료지원 상담(2건, 4%), 통역 서비스(1건, 2%)로 나타났음.

2) 결과분석

가) 결혼이민자 중심에서 배우자포함 다문화가족 통합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 제기

- 가족 내 문제의 설문결과를 분석해 보면 응답자의 절반이상(56%)이 갈등상황에 놓여 있으며 경제문제에 의한 갈등(25%), 육아문제(25%)외에 절반정도가 가족관계에서의 갈등(부부, 시댁, 일반적 갈등)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문화가족 중심의 맞춤형 상담과 통합 프로그램의 확대로 가족 간 화합과 인식개선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

-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등 의견상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원만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지 못한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유추해석이 가능하며 지원센터의 지원 사각지대로 인식됨에 따른 다양한 치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나) 부부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 확대

- 부부싸움의 경우도 72%(18명)가 부부싸움을 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이상(11명)이 한 달에 한번 이상 싸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간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

- 싸움의 원인도 생활방식의 차이(7명)나 배우자 음주(5명), 시댁문제(1명)와 같이 가족 간의 소통이나 인식, 문화의 차이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절반정도(13명, 52%)가 배우자로부터 직간접적인 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부부관계 개선교육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음.

다) 자녀지원 사업과 문화육구 충족 프로그램 중시

○ 가족 간 갈등의 한 요인으로서 자녀 양육문제가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및 서비스 수요조사에서 필요한 지원서비스로 자녀 교육상담이 24%의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들의 성장 단계별 교육 및 양육지원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요리 등 한국문화에 대한 욕구(24%)가 강해 한 국어 교육과 더불어 전반적인 한국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영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발달 사업이나 언어영재사업과 더불어 취학 아동의 성장에 따른 교육상담과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연계기관과 함께 개발 시행할 체계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인식개선 사업에 한국문화 및 사회를 알리는 사업 프로그램이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주로 기관연계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른 일회성, 단기성 프로그램이 대부분임에 따라 일관성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사업추진이 필요함.

라) 내국인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적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 확대

○ 내국인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표면적 태도는 긍정적(64%)이나 실제로 느끼는 차별경험은 본인(68%), 자녀(56%) 등 절반이상을 차지함에 따른 전반적인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 인식개선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간담회

가. 간담회 배경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실무수행 중 실제로 접한 다양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들에 대해 논의해 보고 다문화가족 지원의 사각지대 사례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현실적 방안들을 모색해 보기 위함.

나. 간담회 일시 및 장소

- 2012년 11월 18일,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

다. 참석자

- 대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용화 팀장
- 대전시 다문화가족거점센터 이선숙 팀장
- 대전시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명숙 팀장
- 대전시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기수 센터장

라. 간담회 내용

1) 지원센터 종사자로서의 지원업무 수행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중앙관리기관의 관리지침이 사업 년도 시작 전에 시달요망
 - 시달 시점이 일정치 않고 바뀌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 추진에 애로.

- 3년 마다 센터지정을 다시 받기 위한 행정력 낭비로 사업수행에 지장이 많고 효율성이나 서비스의 연속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으므로 공모방식을 지양하고 재 위탁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마다 지침이나 업무시달의 기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지자체 공무원들도 교육을 통한 통일된 업무정보가 필요함.
- 수량적 지표에 의한 실적평가 위주의 업무추진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 진행이 사실상 어려움.
 - 실적위주의 사업진행을 지양하고 실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진행을 위한 평가 시스템의 전환 내지는 자율성 부여가 필요.
- 센터마다의 지역적 특성과 대상의 욕구가 다름에 따른 상황에 맞는 서비스 지원이 일괄적인 지침으로 인해 어려운 바, 기본적인 지침은 주되 자율성을 주어 센터의 실정에 맞게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
- 사업예산의 부족에 따른 연계사업에의 치중으로 전반적인 종사자의 업무과중.

2)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 센터 종사자들 간의 교류와 토론 등 간담회 활성화로 프로그램 개발 및 센터운영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도출이 필요.
 - 동료 슈퍼 비전 및 전문 슈퍼바이저의 지정으로 교육 및 종사자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교류와 프로그램 개발이 효율적임. 중앙 또는 거점기관에 의한 형식적, 간헐적 집합교육은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음.
- 다문화 시대에 대한 수용성 제고 교육

- 전반적인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에 대한 인지도가 보편화 되지 않아 다문화가족 지원의 첨병으로서 다문화이해의 선포자 역할에 미흡한 바, 종사자 대상 보편성과 실효성 있는 다문화 수용성 교육이 필요.
-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지원 서비스 마인드가 명확치 않아 서두에서 언급한 동화주의 내지는 온정주의적 입장이 표출됨에 따른 혼선을 야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종사자 처우 개선

- 낮은 급여 및 복지수준과 비정규직(년 단위 계약제)의 고용 불안정성 등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함. 헌신과 봉사정신 만으로는 종사자들의 자발적이고 열성적인 지원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임.

3) 다문화가족 지원 사각지대와 이의 극복을 위한 방안

○ 접근성 사각지대의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를 위한 교통 편의성 보완 또는 방문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

- 도시형 지원센터인 대전의 경우도 지원 센터와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 많아 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어찌지 못하는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방문교육지도사의 방문교육 대상을 접근성 사각지대의 다문화가족에 우선 배정 등 주어진 여건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으나 한계가 있으며 이를 위한 차량 지원이나 별도 인력의 확충이 필요한 사안임.

○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지원서비스 사각지대

- 최근의 급증하는 다문화가족의 해체 문제는 상당부분 가정 내에서 유발되는 부부간 갈등, 가족간 갈등 등 문화와 인식의 차이나 의사소통의 미흡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갈등을 적절히 소화하지 못하고 가출 및 가정해체로 이어지는 사례

가 많음에도 지원센터의 역할은 사후적 상담이나 뒤처리 수준에 그치고 마는 실정임.

- 센터에서 시행하는 한국어 등 집합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결혼이주민이나 가족의 경우 비교적 갈등이 적은 경우가 많아 표출이 되지 않으므로 종사자들이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상황은 간단치 않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대체적 의견이었음.
- 이를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문지도사와 상담사, 통번역사의 매칭에 의한 대상가정의 지속적 관리와 주민자치센터 연계 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체계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향해야 함.

3. 사각지대 현황과 개선사항

가. 지원 사각지대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문제

○ 전국 다문화가족 수 대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비율은 농촌형의 경우 50%를 상회하고 있으나 도시형의 경우 30% 내외에 그치고 있으며 2011년도 기준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율은 32%에 그치고 있음.

- 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프로그램이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을 위한 한국어 및 사회적응에 치중하다 보니 결혼 이민 초기입국자들의 이용율은 높은데 반해 정착단계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취업 등 사유와 함께 지원센터의 서비스에 별다른 매력이나 필요성이 적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한편으로는 내국인 배우자나 시부모 등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시각(부정적인 정보교류 및 탈선의 빌미 제공처)에서 기인한 이용기피 현상도 있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도 제기됨.

- 전반적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의 제공 등 센터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결혼이민자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다변화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적, 실무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음.

2) 가정 내 갈등 문제

- 다문화가족의 가족 간 문제는 내국인간 가정문제와는 다른 사회 정책적인 차원의 접근이 요구 되는데, 상대적으로 소통과 문화 및 인식 측면에서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많기 때문임. 다문화가족 내부의 갈등은 지원센터의 손길이 미치지 힘든 지원 사각지대로 인식하여 갈등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이혼상담 통계도 외국인아내의 이혼 상담 시 절반이상이 (2008년 기준 52%)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의 부당대우 등 가족 간 갈등문제 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 근래에 높아지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해체율과 결혼이민자의 이혼소송의 증가현상과 상담사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부 및 가족 간 갈등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해체 시 그 후유증의 심각성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완화방안 마련이 시급함.

3) 법과 제도적 문제

- 다문화가족 해체 시 결혼이민자의 지위에 대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며 가족해체에 따른 어려움에 처한 결혼이민자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제도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상의 이혼한 결혼이주민들의 국적취득(간이귀화요건)과 체류자격에 대한 규정도 상충되고 있고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불법체류자로 전락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나. 개선사항

- 다문화가족의 센터이용 율 제고를 위한 접근성 개선방안과 함께
 - 가족내 갈등해소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및 이를 위한 종사자 확충과 역량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대 내국민 정책적 홍보강화와 다문화가족을 불우이웃과 같은 온정주의적 접근이 아닌 다문화사회의 열린 의식으로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 인식개선 교육을 병행하여야 함.
- 다문화가족 해체의 주요 요인인 다문화가족 내 갈등요소를 줄일 수 있는 시행 프로그램의 개발과 병행하여 해체 시 치유와 극복을 위한 법적 보완 조치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추진이 필요.
 - 출입국관리법상 이혼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류기간을 국적법상의 규정에 준하여 간이귀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의 체류가 가능토록 허용해야 할 것임.

IV. 정책 개선사안

1. 지원정책 방향

- 전반적인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심의 지원방향을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 내국인 및 지원 사업 종사자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비중을 확대하고
 - 가족 간 갈등완화를 위해 결혼이민자 지원 중심 프로그램을 다문화가족 통합 프로그램에 좀 더 비중을 두어 시행하며 이를 위한 집진적 다문화가족 코디네이터의 충원 확대가 요구 되며 가족통합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지원종사자의 주말 공휴일 근무확대에 따른 탄력적 근무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센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 다문화가족 2세들이 초 중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학 전 유아중심의 언어발달 및 언어영재 사업들을 자녀들의 성장주기에 맞추어 성장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필요성이 큼.
 - 지원 사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센터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센터지정 절차를 재지정과 공모로 이분화 하는 등 탄력적 운용도 적극적 도입이 필요.

2. 지원체계

- 중앙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지원을 해소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실적 위주의 통제지향형 관리방식에 좀 더 유연성을 부여하여 지역실정을 감안한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의 권한이행 등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강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정보교류와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의체를 구성, 정기적 모임을 활성화 하는 것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유력한 방안임. 현재 지원센터 간 운영방식이나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가 미흡하며 기관탐방을 통해 간헐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좀 더 체계적, 제도적 지원센터 간 정보교류의 장을 구축 할 필요성이 큼.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조치

- 정형화된 지침에 의한 지원 서비스와 양적 평가시스템에서 각 지원센터별 상황을 반영한 탄력적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토록 평가 시스템을 보완하고 다문화가족단위의 정보관리를 위한 전담직원의 충원으로 다문화가족 간 유발될 수 있는 갈등 완화 및 사전예방 조치가 가능토록 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 이를 통한 지원 사각지대의 해소와 질 높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며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유효한 방안이라 판단됨.

○ 종사자의 역량강화

- 지원 서비스 주체인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는 적정수준의 급여수준과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가 확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현 제도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구조이며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상의 불안정성도 역량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센터지정을 위한 운영위탁법인의 공모제도도 문제가 없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재 위탁하는 탄력적 제도운영으로 종사자들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등 역량강화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4.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접근성 강화 방안

- 직접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인바 점진적으로 자치단체의 복지관처럼 교통수단을 제공 또는 지역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이용을 모색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지원 수혜자의 확보

- 결혼이민자의 정보 확보의 어려움, 프로그램의 정형화와 실적 평가체계 등 요인에 의해 특히 도시지역 다문화지원센터의 경우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센터 이용율이 대체적으로 저조한 실정임.
- 가족간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업무능력 제고 등 여건이 마련되어도 센터 미 이용자들에 대한 접근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상존하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이 우선 강구 되어야 할 것임. 개인 정보보호 문제와의 상충을 피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족을 파악하고 접촉 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가정 내 갈등해소방안

-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을 감안, 가족 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수반되는 인적, 물적 지원에 대한 과감한 자세의 전환이 필요함. 다문화가족의 해체요인을 사전에 완화시킴으로써 해체에 따르는 다양한 문제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임.
- 다문화 가족의 내부갈등 완화를 위한 상담 및 통합 프로그램의 확대와 함께 센터 종사자들이 다문화가족 내 문제를 지원사각지대로 인식하고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를 치유하려는 서비스 마인드 확립과 이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 다문화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은 향후 다문화가족 지원 사각지대의 발굴과 함께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로서 적극적, 전진적 자세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임.

○ 다문화가족 해체에 따른 법적 보완조치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 해체시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적취득 및 체류자격에 대한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상의 상충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 필요.
- 국적법상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이혼한 결혼이민자는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출입국관리법상 이혼에 의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결혼이민자는 이혼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국내 체류시 불법체류자로 간주하는 법규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한편 다문화가족지원법도 다문화가족 해체 시 이혼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혼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처하게 되는 현실을 감안 이혼 결혼이민자에 대한 명확한 지원규정에 대한 입법 조치가 필요함.

참 고 문 헌

- 김두년외, 국제결혼 중개업 건전화방안, 여성가족부, 2010
- 김영주, 2009년도 충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0
- 김이선외, 다문화가족의 해체문제와 정책과제, 여성가족부, 2010
- 설동훈외,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06.
- 박진근,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법적과제, 충청다문화포럼, 2011
- 박홍식, 이혼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국내 체류자격, 충청다문화포럼, 2011
- 법무부, 2011년도 외국인정책심의, 2011
- 조원권외,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2010
-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9. “2008년도 다문화가정 이혼상담 통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의 날 기념 심포지엄-함께 해요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의 정착과 미래 (2009.4.22)].
- 행정안전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2010. 6.

부록. 다문화가족의 지원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정부의 다문화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 관련 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부디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개인 및 가구에 관한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장 조 원 권

I. 응답자 특성

A. 국적 및 입국사항

1. 출생지 국적은?
2.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1. 앞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귀하가 처음 한국에 온 것은 언제입니까? 년 월

II. 결혼과정 및 결혼생활

A. 결혼과정

1. 한국인 배우자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 ① 부모, 형제 등 친척의 소개 ② 종교단체 ③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④ 기타()

1-1. 결혼 전에 한국인 배우자를 소개한 기관 또는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실제 사실과 얼마나 일치하였습니까?

- ①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② 별로 일치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일치하였다

1-1-1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하여 들었던 이야기와 사실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배우자의 결혼경험 ② 배우자의 직업 ③ 배우자의 학력
④ 배우자의 소득 ⑤ 배우자의 재산(주택 소유 여부 포함)
⑥ 배우자의 건강 또는 장애 ⑦ 배우자의 술·담배 습관
⑧ 배우자의 성격 ⑨ 배우자의 자녀수 또는 동거여부
⑩ 배우자의 부모동거 여부 ⑪ 기타()

2. 한국인과 결혼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면 중요한 이유 한 가지만 표시하여 주십시오.

- ① 경제적으로 부유한 한국에 살기 위하여
② 본국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③ 무조건 본국을 떠나고 싶어서 ④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⑤ 가족과 친척 등의 권유로 ⑥ 배우자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⑦ 종교적인 이유로 ⑧ 기타()

B. 결혼생활

1. 다음 부부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매우 불만족하다	대체로 불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하다
부부간의 대화·의사소통					
부부사이의 애정·친밀감					
배우자의 가사노동 분담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2. 다음과 같은 일을 주로 누가 결정하십니까?

문항	내가 혼자	내가 보다 많이	부부 함께	배우자가 보다 많이	배우자 혼자
일상생활비 지출 및 관리					
자녀 양육 및 교육문제					

3. 다음과 같은 일로 배우자와 어느 정도 갈등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문항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경제문제					
자녀문제(교육, 생활방식)					
가사 및 육아부담					
부부관계					
내부모, 형제자매와의 관계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의 관계					

1-1.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자녀가 있기 때문에 ② 이혼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자신이 없어서
- ③ 한국에서의 체류자격 상실이 두려워서
- ④ 본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될 것이 두려워서
- ⑤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⑥ 기타()

2. 귀하께서는 재혼에 관한 다음 의견 중 어디에 공감하는 편이십니까?

- ① 재혼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② 재혼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 ③ 재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④ 잘 모르겠다

B. 가족 가치관

1. 귀하께서는 다음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한 한국인은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워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한 한국인은 한국 명절과 더불어 외국인 가족원의 모국 명절이나 풍습도 챙겨야 한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라면 당연히 한국요리를 잘 해야 한다.					
한국의 가족 뿐 아니라 본국에 있는 부모나 가족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한국어와 더불어 외국인 가족원의 모국어도 배워야 한다.					

2.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서비스는 무엇입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언어훈련(한글교육, 통역) ② 건강·위생상식 ③ 육아상식 ④ 의료·간호
기능 ⑤ 직업교육, 취업훈련 ⑥ 생활기능(요리, 미용) ⑦ 여성·어린이 대상
안전 교육 ⑧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방지 관련법규 설명 ⑨ 체류·영주·국적취
득 등 출입국관리법 교육 ⑩ 자녀학습 지원방법·노하우 교육 ⑪ 기타()

3.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
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국민건강보험가입 안내·도움 ② 치료시의 의사소통 도움 ③ 전염병, 질병
예방 지식 제공 ④ 출산 전·후 지도 ⑤ 피임방법 소개 ⑥ 유아건강검사
제공 ⑦ 건강검진서비스 제공 ⑧ 국민건강보험료 대납 ⑨ 기타()

4. 국가 또는 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입
니까?

- ① 배우자 또는 가족의 허락·지원 ② 교통편 ③ 다양한 서비스 제공시간
④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⑤ 서비스 받는 동안 자녀를 돌보아 주는 보육시설
⑥ 서비스 제공기관의 접근성 ⑦ 교육서비스의 경우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별
강의 제공 ⑧ 통역서비스 제공 ⑨ TV·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 ⑩ 학습지 또는 인터넷을 통한 가정방문식 교육 서비스 제공 ⑪ 비용
제공 ⑫ 기타()

5. 이민자로서 귀하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학습지도에 도움이 되는 한글교육이 필요함
② 본국말로 된 보육 또는 양육 관련 자료가 필요함
③ 배우자가 나의 양육방식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대상의 교육이 있으
면 좋겠음
④ 자녀양육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같은 또래의 아이들의 부모(특히 어머니) 모임

이 있으면 좋겠음

⑤ 기타()

6. 귀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하여 사후적으로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보호시설 확충 ②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③ 상담서비스 제공
- ④ 사회적 인식개선 ⑤ 신체적 및 정신적 치료 ⑥ 주거시설 마련
- ⑦ 직업훈련 및 직장알선 ⑧ 교육서비스 제공 ⑨ 자조모임 지원
- ⑩ 대안학교 제공 ⑪ 가정폭력예방 및 장애인 인권교육
- ⑫ 기타()

*** 감사합니다. ****

프랑스와 한국의 다문화 수용실태 조사와
사회통합의 방향

연구책임자: 정 인 형(우송대학교)

연구 요약

현재 한국사회는 제 3세계로부터 유입된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인종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단일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온 단일민족사회이지만, 자본, 노동력의 이동을 통해 이루어진 민족, 인종의 전 지구적 이동으로 인해 단일민족사회로서의 한국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은 저출산과 경제성장으로 인해 단순 노무직과 생산기능직 노동력 부족을 해외 이주노동자를 통해 대체하고 있으며, 농촌에서 혼기를 놓친 남성들이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는 수가 급증하여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이민자의 수가 최근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다.

다문화사회가 거슬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등 우리 사회의 소수 집단과 소수 문화는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소수 집단과 소수 문화를 한국의 주류 문화와 통합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향후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불안의 요인이 되고 말 것이다.

실제로 유럽의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상대적으로 민족적 정체성이 강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프랑스, 독일 등)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차별적 배제와 일방적 동화 정책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이러한 실패는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무슬림 소요로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들 국가,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이 과거의 일방적 동화를 목표로 한 이주자 프로그램에서 양방향적인 통합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화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은 다음의 세 가지 가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첫째는 양방향성, 둘째는 포괄성, 셋째는 장기적, 단계별 접근이다.

차 례

I. 서론	1
II. 한국의 다문화 사회 진전 현황	4
III. 이론적 고찰	8
1. 다문화주의에 대한 개념적 논의	8
가. 다문화주의의 다양한 의미들	8
나. 다양성, 차이, 그리고 다문화주의	9
다. 단일문화주의와 다문화주의	10
2. 다문화적 시민사회의 이념과 구조	11
가. 다문화적 시민사회의 이념	11
나. 다문화적 시민사회의 구조	12
IV. 프랑스의 다문화 수용 실태	16
1. 프랑스의 다문화 수용	16
2. 프랑스의 다문화사회 변천 과정	19
가. 구체제에서 19C 까지	19
나. 20C 초에서 1973년 까지	22
다. 1974년의 이민 중지에서 1999년 까지	24
라. 2000년대 이민정책의 강경화	29
3.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정책 평가 및 열린사회를 위한 제언	31
V. 통합된 다문화사회를 위한 제언	35
참 고 문 헌	37

표 차 례

<표 II-1>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6
<표 II-2> 국제결혼 시도별 현황	6

I. 서론

현재 한국사회는 제 3세계로부터 유입된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인종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단일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온 단일민족사회이지만, 자본, 노동력의 이동을 통해 이루어진 민족, 인종의 전 지구적 이동으로 인해 단일민족사회로서의 한국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은 저출산과 경제성장으로 인해 단순 노무직과 생산기능직 노동력 부족을 해외 이주노동자를 통해 대체하고 있으며, 농촌에서 혼기를 놓친 남성들이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는 수가 급증하여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이민자의 수가 최근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이주국가들에 비해 높지는 않은 편이지만, 외국으로부터 노동자와 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이주는 향후 더욱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한국은 자연스럽게 이주국가 혹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수용해야 하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126만명에 육박하며, 이는 국내 총 인구 대비 2.5%에 달하는 수준으로서 주요 선진국 비율보다는 낮지만, 개발도상국의 평균 수준은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적인 유입, 국제결혼 인구의 급속한 증가, 해외 동포에 대한 입국문화 확대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문화사회란 '세계화 진전과 노동의 국제이동, 난민 증가의 결과로 나타난 다인종 사회'라는 의미와 '다른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는 다양성의 사회'라는 의미를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며, 또한 다문화사회란 시민 혹은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경제·정치·문화적 권리를 취득하고 향유하는데 있어 개인의 인종과 민

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를 지칭하고 있다.

문화는 한 민족의 생활양식의 총체적 표현으로서 공통된 생활양식으로 인하여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는 귀속감을 가지게 하는데, 최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서로 만나고 부딪치며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의 소멸을 우려하는 가운데 새로운 문화의 조화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다문화라는 용어가 생기게 되었다.

다문화사회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의 성립과정에 있어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본다면 어느 국가이든지 이주민의 증가에 따른 사회통합의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첫째, 프랑스나, 영국, 독일처럼 비교적 동질적 문화를 가졌던 전통적인 국민국가들이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른 이주노동자와 낯선 문화, 그리고 새로운 종교의 유입과 함께 다문화사회의 도전에 직면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둘째, 캐나다나 미국처럼 출범 초기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된 이민자의 나라였던 경우로써 이들은 상대적으로 다문화사회의 도전에 익숙하지만 여전히 이들 나라에서 사회통합의 문제는 심각한 주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현재 상당부분 혼재하는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가정, 그리고 그 자녀들을 포함한 소수인종의 비율이 대략 한국 총 인구의 2.5% 내외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규모는 새로운 인종과 문화, 그리고 종교의 유입이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하던 1960년대 후반의 유럽과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은 유럽국가의 다문화사회이행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 사회적 소수의 유입과 함께 다문화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대응해 왔던 방식은 크게 세 단계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너그러운 관용’ → ‘비차별의 법제화’ → ‘다문화주의 인정’의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인 관용이란 다수가 소수의 다름을 사회 전체의 평화를 위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아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계화의 흐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관용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 먼저, 점증하는 소수의 숫자가 다수로 하여금 소수의 흡수·동화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으며, 다음으로, 소수집단이 단지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해 온 다수집단의 정당성을 부정하면서 더 이상 다수의 관용에 호소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 단계는 비차별의 법제화로서, 이는 다수에 의한 소수의 차별은 때로는 거친 말이나 전단 등에 쓰인 표현의 형태로, 혹은 특정 자격시험이나 가계, 집을 구하는 일 등 일상생활에서 접근을 방해하는 형태의 차별로, 더욱 심하게는 소수자에게 직접 이유 없는 폭력을 행사하는 물리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여 처벌하는 것은 임의적 덕목이었던 관용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치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인 다문화주의의 단계에서는 단순히 단일문화에서 다양한 문화로 변화해 가는 사회의 현상을 가리키는 가치중립적 용어로 쓰일 수도 있고, 소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규범적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란 사회적 소수집단의 정체성과 문화적 이해를 공공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일련의 흐름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다수 중심 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류사회의 기존 제도와 법의 틀 안에서 큰 희생이 없이 실현 가능했던 관용과 비차별의 제도화 단계에서와는 구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경우, 이 세 가지 다문화사회의 변화 단계 가운데 아직은 관용을 호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향후 국제결혼 및 이주노동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감안한다면 곧 후발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사회의 경우 성공적으로 다문화사회를 이룩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될 수 있는데, 의사소통, 교육, 취업, 병역, 경제적 자립도, 사회적 수용,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등 다수가 존재한다.

Ⅱ. 한국의 다문화 사회 진전 현황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외국인 등록정보·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외국인)은 1997년 약 38만 명에서 2011년 현재 약 126만 명에 달하여 거의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적별 외국인을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미국, 필리핀, 태국, 일본, 몽골, 대만,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최근 중국인들의 대거 유입과 함께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동포)에 대한 우대정책인 3년간 국내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제와 결혼이민자 형태의 국내 유입이 많았기 때문이다. 미국 국적자는 주한미군과 한국계 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며, 베트남과 필리핀, 태국 등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상당수는 언어소통과 문화적 차이 등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느라 힘들게 살고 있으며, 자녀교육 문제, 가정폭력, 사회적 인식 및 편견 등 사회적응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의 한국문화 및 가족생활 적응 지원을 위하여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가족교육, 가족생활상담, 한국어 교재와 모성보호가이드 발간, 멘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수용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한국의 연도별 국제결혼 건수 및 비율을 살펴보면, 2001년 총 결혼건수 대비 국제결혼의 비율이 4.6%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13.5%로 증가한 후, 최근 그 증가세가 주춤하기는 하였지만 매년 10%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II-1>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단위 : 건, %)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총 결혼	318,407	304,877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309,759
국제결혼	14,523	15,202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4,204	33,300
비율	4.6	5.0	8.2	11.2	13.5	11.7	10.9	11.0	10.8

출처 : 통계청(2012)

아래의 국제결혼 시도별 현황 자료를 토대로 국제결혼의 형태를 살펴보면, 총 33,300건의 국제결혼 중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인 경우가 25,142건으로 75.5%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인 경우가 8,158건으로 2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상남도 > 부산광역시 > 충청남도 > 전라남도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2 > 국제결혼 시도별 현황

지역별	총 계	한국인 남편+ 외국인 아내	한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총 계	33,300	25,142	8,158
서울특별시	7,424	4,936	2,488
부산광역시	1,618	1,233	385
대구광역시	950	753	197
인천광역시	1,783	1,442	341
광주광역시	662	563	99
대전광역시	804	693	111
울산광역시	518	455	63
경기도	7,946	6,019	1,927

강원도	901	779	122
충청북도	856	746	110
충청남도	1,597	1,382	195
전라북도	1,252	1,141	111
전라남도	1,431	1,337	94
경상북도	1,363	1,221	142
경상남도	1,897	1,658	239
제주특별자치도	392	327	65
국외	1,926	457	1,469

출처 : 통계청(2012)

결혼이민자는 한국국적 미취득자 126천 명과 취득자(혼인귀화자) 41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국적 미취득자가 약 75%에 달하고 있는 반면 취득자 비율은 24.6%에 불과하다. 남녀별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국적 취득비율이 26.3%로 남성결혼이민자의 경우 11.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국적취득 여부별로 결혼이민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혼인귀화자의 경우 조선족 중국인(44.3%)과 조선족 이외의 중국인(36.8%)이 총 81.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 필리핀(8.9%)과 베트남(4.7%)을 제외하면 각 국가의 비중은 1% 미만으로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에는 조선족 중국인(28.2%)과 조선족 이외의 중국인(26.6%)이 54.8%, 다음으로 베트남 22.9%, 필리핀 4.9%, 일본 4.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결혼이민자는 2009년 7월을 기준으로 약 17만 1천 명에서 2020년에는 40만여 명, 2040년 80만 1,600여 명, 그리고 2050년에는 98만 2,700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과 그 후손을 종합한 결혼이민 인구는 2009년 272,613명에서 2020년 742,416명, 2040년에는 1,687,110명을 지나 2050년에는 2,164,886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결혼이민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이들 다문화가정 대다수가 법적·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며, 다문화가족 상당수가 남편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과 소득수준 등 사회경제적 기반이 대체로 평균을 밑도는 상황이므로 잠재적인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이론적 고찰

1. 다문화주의에 대한 개념적 논의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개념상 많은 혼동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앞서, 이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먼저 다문화주의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한다. 다음으로 다문화주의 개념의 핵심 요소인 다양성과 차이에 대해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주의의 반대 개념인 단일문화주의와의 비교를 통해 다문화주의 개념을 보다 명료화한다.

가. 다문화주의의 다양한 의미들

다문화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합의된 정의의 부재는 학자들 사이에서,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일반인들 사이에서 많은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다문화주의의 정의를 찾아내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 밖에 있다. 여기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그리고 다양한 맥락에서, 다문화주의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본 연구에 가장 적절한 의미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는 적어도 다음의 다섯 개의 다른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경험적 사실로서의 다문화주의, 이념으로서의 다문화주의, 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 정책실행으로서의 다문화주의, 그리고 반패권 사회운동으로서의 다문화주의이다.(Fleras 2002)

첫째, 경험적 사실 혹은 현실로서의 다문화주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계가 전 지구적인 이주의 증가로 인해 점점 더 인종적, 문화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러한 다문화적 사회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함께 일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인종적으로 서로 다른 사

람들에 대한 관용과 수용을 배워야만 한다.

둘째, 이념(혹은 철학)으로서의 다문화주의는 소수의 권리와 국가 전체의 이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대한 일련의 생각들과 규범적인 이상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이념으로서의 다문화주의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다.

셋째, 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는 국가의 정부들이 다문화적 사회 건설을 위해 마련한 공식적 정책들을 의미한다. 물론 국가마다 서로 상이한 정책들을 채택하게 되며, 이에는 앞에서 언급한 이념적 다문화주의와 그것이 내포하는 다양한 원칙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념적 다문화주의와 정책적 다문화주의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다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넷째, 실행으로서의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의 이념과 정책이 서로 수렴하여, 정치인, 소수자, 제도들을 포함하는 여러 행위자들에 의해서 실제로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섯째, 반패권 사회운동으로서의 다문화주의는 기존의 자유주의적 질서가 내포하고 있는 유럽 중심의 인종주의적 기초(일종의 패권)에 도전하는 다문화주의적 사회운동(social movements)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여기서 다문화주의는 이러한 사회운동에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주의가 갖는 다양한 의미 중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공식적 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 즉 공식적 다문화주의(official multiculturalism)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이 여러 국가의 다문화정책 방향 비교 분석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는 이념으로서의 다문화주의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또한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실행으로서의 다문화주의로 표출되기도 한다.

나. 다양성, 차이, 그리고 다문화주의

내용적으로 볼 때, 다문화주의의 핵심 요소는 다양성(diversity)과 차이(difference)이

다. 이 두 개념은 많은 경우에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엄밀하게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양성이 서로 다른 여러 것들이 함께 모여 있는 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면, 차이는 이러한 다른 것들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양성이 이질적인 경험적인 현실을 단순히 묘사하고 있다면, 차이는 이러한 현실을 도전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규범적인 요소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하나의 “주의” 혹은 “정책”으로서 다문화주의에 주목한다면, 다양성이라는 정태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개념보다는 이러한 다양성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의 철학적, 규범적 문제까지 내포하는 차이라는 역동적 개념이 더욱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가 다문화 현실에 대한 단순 묘사가 아니라, 다문화 정책의 방향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역동적인 개념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 단일문화주의와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 반대 개념인 단일문화주의와의 비교를 통해서이다. 다문화주의가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다른 문화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차이를 수용한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면, 단일문화주의는 이러한 차이를 능동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의 지배적인 문화 (언어와 정체성)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추진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서구 사회는 단일문화주의를 19세기에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당시에는 한 민족이 하나의 주권국가를 형성하는 민족주의 이념이 널리 퍼져 있었으며, 서구의 민족국가들은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모든 차이들을 억제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동질성을 통해 민족정체성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단일문화적인 국가들은 하나의 지배적인 민족집단에 의해 철저히 소유되었으며, 이러한 지배집단에 속하지 않은 다른 소수민족들은 추방, 차별, 그리고 동화를 경험해야 했다.

20세기 중반 이후, 서구의 단일문화주의는 결국 버려지는데, 그 이유는 다양했다. 단일문화주의는 인류 이상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비판 받았으며, 민족주의 및 쟁과 연관된 것으로 묘사되었으며,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불필요하게 억압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20세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그 자리에 등장한 것이 바로 다문화주의이다.

다문화주의는 단순하면서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갖는다. 그것은 바로 문화적으로 다양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으로 포괄적인 사회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지켜내야만 한다.

이러한 어려운 도전에 대하여 서구의 국가들은 분리, 동화, 통합, 다원주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를 불문하고, 이러한 다문화주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협력적 공존을 위한 역설”(paradox for cooperative coexistence)을 직면해야 했다. 즉 자유주의적 보편주의와 인종적 특수주의라는 표면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두 개의 동학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2. 다문화적 시민사회의 이념과 구조

한국사회는 현재의 다문화상황에서 어떠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야 하며 한국사회 다문화적 이상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다문화사회의 이행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 다문화적 시민사회의 이념

많은 연구자들은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다문화사회를 ‘다문화적 시민사회(multicultural civil society)’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문화적 시민사회란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사회적 연대라는 시민사회의 기본 틀을 기반으로 하면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들을 수용하고 인정하며 이들 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사회를 말한다.

시민사회는 근본적으로 모든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중심으로 이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과 공존을 추구하는 사회이나 역사적으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미묘한 차별과 배제 그리고 불평등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문화적 시민사회란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들 간의 차별과 불평등을 배제하고 이들 간의 공존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로서 시민사회의 이상을 문화적 측면에 까지 그리고 미시적인 부분까지 확장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적 시민사회는 기본적으로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를 지향한다. 즉 문화적 동화주의가 문화의 획일화, 동질화를 지향하고, 문화적 억압 체계가 주류문화를 제외한 문화들을 억압하고 강제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문화적 다문화주의는 이들 간의 공존을 지향한다. 다양한 문화들의 수용과 인정 그리고 공존을 모색한다고 하여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문화들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라는 틀 내에 존재해야 한다. 즉 보편적 시민으로서 타인의 자유권과 정치권 그리고 사회권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존중해야 한다.

한국사회에 있어서 문화적 다원주의를 이루는 주된 집단들로는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그리고 새터민, 화교 그리고 한국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하위집단 구성원 그리고 획일화될 수 없는 고유한 정체성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이 될 것이다. 이들은 자신과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면서도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 종교, 전통, 그리고 사회적 관습들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집단들이 모두 존중하고 지켜야할 시민사회의 권리체계는 시민권 일반에 속하는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과 시민의 문화적 권리인 문화권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권리체계는 개별 시민의 자유로운 행위와 정치적 참여 그리고 기본적인 사회적 삶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들을 생성,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한다. 이들은 사회를 이루는 기본토대를 구성한다. 이들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다문화적 시민사회의 구조

1) 다문화적 시민사회의 권리체계 : 자유, 정치, 사회, 문화적 권리

다문화적 시민사회는 먼저 시민권 일반에 해당하는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을 포함

한다. 이 중에서 자유권은 그 용어가 의미하듯 시민이 신분, 성, 인종, 종교, 사상, 직업, 지역 등에 관계없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제 활동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모든 시민에게 법과 기회에 있어서 평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이다.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치권은 인민주권의 사상을 실현하고 시민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적 통치원리에 충실하면서 시민의 정치적 역량을 향상시켜 나아가기 위한 권리로 투표권과 피선거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오늘날 정치적 참여라는 의미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참정권의 의미 이상의 것이다. 대표자를 선출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하여 정당 활동에의 참여,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 집단 활동에의 참여, 여론형성에의 참여, 사회운동에의 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들이 허용되고 장려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은 위의 자유권과 정치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권리들은 사회, 경제, 정치적 불평등을 종식시키지 못하며 그러한 불평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민족, 인종, 문화적 차별을 종식시키지도 못한다. 그러한 불평등을 종식시키지 위해서는 교육, 보건, 주거, 고용 등의 영역에서 기본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한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사회권은 시민의 사회적 평등, 경제, 문화, 교육 등 복지혜택의 기회를 확대해 가고자 하는 권리이다.

다문화적 시민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시민의 문화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문화권은 문화적인 삶을 향유할 권리, 즉 인간답게 살 권리이다. 그 어떤 권리보다도 일상 속에서 절실하게 느끼는 다양한 욕구들을 더 잘 담아낼 수 있는 권리가 문화권이다. 유네스코에서는 문화권 선언(the Declaration of cultural rights)의 초안에서 문화권의 내용으로 문화적 정체성과 그 전승, 문화공동체로서의 인식, 문화적인 삶에의 참여, 문화정책에의 참여, 국가의 책임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리앤더(Leander)는 문화권을 11개 범주, 즉 신체적·문화적 생존에 대한 권리, 문화적 공동체와 연대하고 동일시할 권리,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권리 및 그에 대한 존중, 물리적·무형적 유산에 대한 권리,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 문화정책검토에 참여할 권리, 문화적 삶에 대한 참여권과 창작의 권리, 내생적 발전을 선택할

권리, 자신의 윤리적, 문화적 환경에 대한 권리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권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와 집단에게 귀속되는 권리로 구분된다.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후자로서 집단권으로서의 문화권이다. 집단권으로서의 문화권은 인종문화, 하위문화, 지역문화, 소수문화들이 그 자신의 문화를 유지할 권리로서 이는 곧 문화적 자결권, 또는 주권이다.

이를 위한 권리로서는 첫째,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자기의 소속, 문화적 계통을 선택할 권리와 또 원할 때는 이미 선택한 것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시민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인정해야 하며 시민으로서의 요구조건과 배치되지 않고 또 사회 내에서 의미 있게 존재하는 모든 문화적 표현들에 대해 동등하게 대우해야만 한다.

둘째, 각 문화집단은 그 집단의 의사를 표현하여 정치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권리, 즉 대표권을 갖는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의 다양한 범주와 감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배제되거나 충분히 대표되지 못한 집단과 개인들이 정치생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점에서 사회의 다차원적(이념적, 문화적, 민족적, 종교적)인 다양성을 보다 잘 반영하는 정치계층을 구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정치계층 내에서 여성과 이민자 그리고 동성애자 등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것은 우선 상징적인 중요성을 떨 수 있고 정치계층이 진정으로 국민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정치계층의 다양화는 아마도 더 많은 상이한 주제와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사회의 의도와 목표를 정의하는데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도의 일환이 된다.

2) 시민의 합리적인 문화 능력

다문화적 시민사회는 시민의 권리체계와 같은 형식적 틀과 더불어 시민의 합리적인 간문화 능력을 그 중심적인 구성요소로 한다. 시민의 권리체계가 시민 스스로 문화를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반면 시민의 합리적인 간문화 능력은 이 공간에서 시민 스스로 합리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실재적인 요소가 된다. 시민의 이러한 문화생성능력은 동사로서의 문화개념과 합리성 개념을 포함한다.

다문화적 시민사회에서 문화는 통약 불가능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호이질적인 고정된 실체, 즉 명사로서의 문화가 아니며 단선적으로 진화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로 수렴될 존재도 아니다. 이보다 문화는 그 자체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그 나름의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아가며 그러한 과정에서 다른 문화와 공유하는 부분을 형성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다양한 문화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각 문화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아가는 다양화 또는 분화과정이며 두 번째는 문화 간 상호작용 속에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통문화를 형성해 나아가는 융합 또는 통합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IV. 프랑스의 다문화 수용 실태

1. 프랑스의 다문화 수용

한 이민자가 특정국가에 유입되어 그 곳에서 장기 또는 항구적 삶을 지속하려 할 때 그 과정은 진입과 동화 그리고 통합이라는 수순으로 이어진다. 이민자가 프랑스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찾아가는 적응을 통한 역할의 진입은 사회 참여의 과정이다. 프랑스는 1789년 혁명이래 공화국의 이념인 공화주의를 통해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인권은 국가가 존중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왔다. 이에 입각한 프랑스의 이민자 수용정책/형태는 이민자들이 프랑스 사회에 철저히 동화되는 것을 전제로 한 사회통합을 지향해 오고 있다

즉 이주민의 언어와 문화적 요소 등 그들 고유의 정체성을 포기하기를 요구하는 일방적 과정을 통한 사회체제에 순응시키는 프랑스식 동화주의 모델을 적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민족이나 인종 문화 등을 구현하는 소수 정체성 집단들을 하나의 국가나 사회내부에 받아들이는 다문화주의 담론 즉 사회에 내재한 “다름”과 “차이”를 가진 복수의 정체성 집단들을 어떻게 하면 주류를 이루는 다수의 정체성 집단의 양식과 함께 나란히 갈수 있느냐의 실천의 문제에서 거론되는 수용적 다문화 주의와 거리가 있는 듯하다.

더구나 지난 2005년 10월 27일 파리 북동부의 Clichy-sous-bois 에서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두 소년이 인근 변전소 시설에 감전사 하면서 이 사건은 큰 소요로 번져서 제5공화국 사상 처음으로 프랑스 본토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정도로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소요 발생 12일만에 차량 5800여대 불타고 1,500여명이 체포되었으며 두 명의 사망자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소요 사태를 계기로 프랑스에서는 기존의 이민정책은 물론 이민자들에 대한 동화정책과 사회통합 정책 일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사실 이 소요사태는 그 이면에 매우 복잡한 프랑스 사회의 작동논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여겨지며 그런 점에서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

이 소요사태의 발단이 된 두 소년이 무슬림 이민자라는 점 그리고 이 소요사태의 이면에는 다분히 인종적 종교적 분쟁의 성격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 모리타니아와 튀니지에서 이민 온 부모 따라 평범한 일상을 보내온 두 소년이 죽음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프랑스 사회가 이민자 사회 특히 알제리를 비롯한 마그레브(Maghreb :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포함하는 북 아프리카) 출신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의 무슬림 이민자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신과 차별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는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 깊은 이민의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무슬림 이민자들은 유럽계 이민자들과 달리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차이로 말미암아 프랑스 사회로의 동화와 통합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

따라서 이들 두 소년이 프랑스에서 출생하고 공화국의 이념에 따라 교육받고 성장한 이민 2, 3세대라는 점에 주목해 볼 때 프랑스가 오랫동안 고심하면서 추진해 왔던 이민자들의 동화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은 실패로 끝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유럽 각국은 이민자 통합에 관한 한 고유의 전통과 원칙을 갖게 되는데 특히 동화주의(Assimilationnisme) 또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e)통합모델을 둘러싼 선택의 문제는 각 국의 역량과 상황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EU의 회원국 수가 27개국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통합정책을 하나로 묶는 수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2000년대 추세 속에서 프랑스도 2002년 이래 유럽연합의 이민자 통합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자체 통합정책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프랑스는 오랜 이민국가로서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인근 후발 유럽국가들(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의 이민이 시작된 이래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북 아프리카로부터, 1990년부터는 동유럽으로부터 다수의 이민이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서 특

히 프랑스의 식민지인 알제리를 비롯해 북 아프리카 출신 무슬림 이민자들이 대거 프랑스에 유입되면서 프랑스 혁명이래 강조되어온 “하나의 불가분의 공화국” 원리에 입각한 정 교 분리원칙(Laïcité) 이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전체인구의 8.1%에 해당하는 493만 명이 이민자인 나라 (2004년 통계)에서 무슬림 이민자 수가 400만에 이르는 현실에서 종교적,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이들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통합정책의 성패여부는 앞으로의 국가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로 작용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프랑스가 직면한 최대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무슬림 이민자의 통합문제는 프랑스 혁명이 낳은 공화국 원칙 즉 “프랑스식 통합모델”(Modele d'integration a la francaise) 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프랑스가 이민정책을 통하여 다문화를 수용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이민자 통합정책의 틀 속에서 역사적으로 국적법, 이민법의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프랑스는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공화주의의 원칙아래에서 다양하고 상이한 요소들을 통합하는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했으며 그 성공적인 통합의 표시가 국적취득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적법을 중심으로 이민에 관한 문제의 고찰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여겨진다.

프랑스는 대혁명 이후 나타난 국적에 관한 개념인식이 국민적인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당시 프랑스 국민이라는 정치적 자각으로 혁명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면 인종과 종교를 막론하고 개인은 프랑스 시민이 될 수 있었다. 혁명의 산물로서 개방적인 프랑스 특유의 국적법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까지 프랑스 국적법을 관통하는 원칙은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에 기초한다. 프랑스 국민이라는 정체성의 전통에 대해 말할 때 다음의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프랑스 국민은 자유의지에 따라 인민의 동의에 의해 모이고 존재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프랑스는 출생지에 의해 개인의 국적이 결정되는 원칙의 전형적인 나라이다.

혈통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독일의 경우보다 개방적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프랑스 국적을 결정하는 범주들은 비록 출생지 전통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었다. 프랑스 국적법의 변화는 정치적 성격이 짙다.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급증하는 이민자의 추세에 따라 집단적 정체성을 통하여 국민을 일치시키고 소속과 정치적 통합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프랑스 국적법에 의한 국적취득은 프랑스적인 통합모델의 핵심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민자 개개인의 동화 가능성에 대한 확증 절차인 동시에 통합의 최종적인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국적법은 이민법과 사회통합의 원칙과 상호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이민자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은 이민법과 국적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1804년 나폴레옹 민법전 이래 프랑스에서는 크게 6차례 -1889, 1945, 1973, 1993, 1998 - 에 걸쳐 국적법 개정이 있었다.)

2. 프랑스의 다문화사회 변천 과정

가. 구체제에서 19C 까지

1) 구체제(Ancien regime)의 속지주의

이 시기에 프랑스인은 왕국과 왕의 관계에 의해 정의되었다. 왕국의 영토에서 태어나 거주하는 자는 왕의 시민으로서 인정 된다. 이러한 원초적 개념으로서의 속지주의는 국왕의 영토에 결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영토를 떠날 때는 상속의 권리와 함께 국왕에 종속되어 있는 조건에 상응하는 권리들을 모두 상실한다.

2) 1789년 혁명기의 혈통주의와 속지주의의 이중의 국적 부여 원칙

구체제의 시스템을 타도한 혁명을 거치면서 당시 더불어 사는 의지에 따라 개방적 국적부여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나폴레옹 민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속인주의

즉 혈통주의가 국적을 부여하는 원칙에 있어서 우세를 보였다.

한편 프랑스는 근대적 국민의식에 기초한 시민(citoyen)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체계가 성립되었다. 외국인에게도 시민의 자격이 부여되는데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공화국에 봉사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조건에서만 이루어졌다 .

3) 1804년 나폴레옹 민법전

나폴레옹 민법전은 단순한 출생지 원칙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직계 혈통을 통해 프랑스 시민권이 자동 승계되도록 제도화하였다. 즉 영토적 권리를 포기하고 혈통주의에 의해 국적이 정해졌다.

국적은 혈연관계에 의해 전달되었고 거주지를 외국으로 옮기더라도 상실되지 않았다. 1804년의 민법은 이민을 떠난 프랑스인들과 아이들의 프랑스로의 귀국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제도였던 것이다 한편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가 성인(21)이 되었을 때도 국적을 취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외국인과 결혼한 프랑스 여성은 자신들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혈통에 기반을 둔 국적법이 여러가지 불편함과 단점들이 나타나자 1831년이후 지속적인 논쟁이 의회에서 전개되었다.

4) 1851년 2월7일 법 - 속지주의로의 회귀와 이중속지주의 원칙의 수립

산업혁명시기 프랑스는 인구가 증가하지 않자 벨기에, 스위스, 독일 등으로부터 대규모의 노동자들을 프랑스로 유입하였다. 인구의 증가를 원하였으므로 제2공화국의 프랑스는 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을 완화하면서 이민자를 끌어들이었다.

“외국인이지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그들의 자녀가 프랑스에서 태어날 때에는 그들 자녀는 자동적으로 프랑스인이 된다.” 라는 프랑스의 독창적인 이중 속지주의의 원칙이 세워진다.

그러나 이 법은 곧 국적을 취득 할 수는 있지만 군의 의무복무에 대한 기피현상으

로 대다수의 이민자 자녀들은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회피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들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성년에 이르러 프랑스 국적을 포기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889년 제3공화국에서는 다른 방식의 속지주의를 채택하게 된다. 즉 이들이 성년이 되어도 국적을 포기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나오게 된 것이다 .

5) 1865년 7월 14일 법

이 법으로 무슬림 알제리 원주민과 이스라엘인도 프랑스 국적을 취득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프랑스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 할 수 있었지만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했다.

6) 1889년 6월26일 법

이 법은 민법을 수정하고 완전하게 개혁하면서 이중속지주의 원칙을 다시 확립하였다. 출생에 의하거나 취득에 의한 국적의 부여 조건을 용이하게 하여 알제리인에게 즉시 적용하였다. 그리고 “신고에 의한 국적취득” 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국적 부여 요건이 만들어졌다. 이 법으로 인하여 프랑스 국적의 역사에서 <국적의 취득은 속지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는 대전제가 확립되었다.

이 법은 모든 젊은 프랑스인 사이의 평등을 내세우면서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 부모의 프랑스 태생의 자녀는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국적을 취득하며 취득된 국적은 포기 할 수 없게 규정하였다.

또한 “프랑스에서 태어나지 않은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일지라도 프랑스에서 태어나면 성인이 되어 자동적으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성인 되는 그 해에 프랑스 국적을 거부하면 외국인으로 남는 여지를 둔다. 이는 이전의 속지주의보다 한층 더 강화된 형태로서 평등이나 국적 취득에 걸맞은 의무를 부과하면서 국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이탈이민 (emigrant)에 대해 경계의 의

도가 내포되어 있다.

봉건적 시기 또는 구체제 시기에는 국왕의 영토 내에서 국왕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왕의 시민이 되는 자격이었다.

반면 대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국가와 개인 또는 시민이라는 관계가 정립되어 속주주의와 혈통주의를 서로 오가며 보완하는 형태의 새로운 국적법이 나타났다. 그러나 1889년 법에서는 “영토 내 거주” 라는 조건이 국적부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럼으로써 국적의 취득은 프랑스 영토 내에서 교육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회화에 중요성을 두는 기본적 원칙이 서게 되었다. 계약에 기초한 혹은 종족적 혈통에 기초한 시민자격 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운영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의지와 동의를 동반한 사회화에도 중요성을 둔 것이다.

1889년 법에서 결국 프랑스 사회통합의 원칙이 되는 동화주의 개념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이 세워졌다고 볼 수 있다

나. 20C 초에서 1973년 까지

1) 1927년 8월 10일 법

1차 세계대전의 커다란 인명손실 (150만 명의 사망자, 200만 명 이상의 부상자)로 프랑스는 인구 보충, 국토 재건, 경제 사회 기반을 위하여 외국 노동자의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였다. 즉 자유로운 귀화 규정을 내세우며 유입된 인구들에게 프랑스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완화된 귀화 조건 : 정착 후 프랑스에 3년의 거주 기간 도달하면 국적 취득 할 수 있게 한다.

민법 규정에 외국인 남편을 둔 프랑스 여성은 프랑스 국적을 상실 하였으나 1927년

법에 의해 이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국적을 유지 할 수 있었고 그들 사이의 태어난 자녀도 프랑스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의 혜택으로 1927-1938년 사이 년 평균 38,000명이 국적취득을 하였고 1938년에는 최대 81,000명에 이르렀다.

2) 비시체제하의 1940년 7월 22일 법

1927년 법에 의해 너무나 많은 이들이 쉽게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비시정부는 귀화를 전면적으로 중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간 시행해 온 국적법을 개정하여 이미 부여한 국적을 취소 할 수 있게 하였다. 국적 취득자 중 50,000명의 서류를 심사하여 15,000명의 국적을 박탈하였다. 이들의 대부분은 유대인이었다.

3) 해방 후의 1945년 10월 19일 법

해방 후 드골 정부는 이주 노동자들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적법을 공포하게 된다. 비시 정부 때 세워진 억압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대부분의 법령들을 전면 취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드골 정부의 이 법은 출생지주의와 혈통주의를 혼합한 형태의 국적법 형태를 띤다. 이 시기에는 레지스탕스에 참가한 외국인에 대해 보상하기 위한 측면과 대중정치의 수단으로 삼은 의도도 있었다.

4) 1962년 7월 21일 시행령

조상이 알제리 원주민일지라도 법정의 판사들 앞에서 프랑스 국적취득을 위한 옵션(option)이라고 불리는 “서약”(confirmation)을 한다면 국적을 취득 할 수 있는 제도가 나왔다.

1962년 7월21일 시행령인데 알제리 독립 (1962년 7월 3일) 후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국적 취득을 하게 하였다. 알제리인 뿐만 아니라 사하라이남 국가(세네갈, 말리)에서 온 부모 자녀들에게도 그 혜택의 범주를 확대 하였다.

5) 1973년 1월 9일 법

프랑스 연방으로 구성되었던 대부분의 영토가 독립함으로써 국적법을 개정 할 필요가 생겼다.

이 법 23조에는 “적자이든 혹은 사생아이든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는 적어도 그 부모 중 한 명이 프랑스에서 태어났다면 프랑스인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44조에는 “외국인 부모를 두었지만 프랑스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 아이들은 16세부터 21세까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 조건으로 ‘의지선언’ (manifestation de volonte)을 해야 하는데 이때의 조건이 프랑스에 거주하여야 하며 그 이전의 5년 동안 프랑스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주증명서로 확인되어야 한다.” 고 되어 있다.

이런 조치들의 근거는 프랑스에서 부모세대가 거주하며 살아 왔을 경우 그 흐른 시간만큼 이미 사회화라는 과정을 통하여 프랑스 사회에 적응하고 동화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가정을 둔 것이다. 이중속지주의 원칙의 보다 완화된 형태의 조건을 부여한 것이다 .

또한 국적체계에서도 남녀평등이 보장되었다. 프랑스 여성과 결혼한 외국 남성은 이전에는 귀화에 의해서만 프랑스인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결혼직후 하는 ‘의지선언’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프랑스인 될 수 있다. 물론 프랑스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의지선언’후 프랑스인이 된다.

다. 1974년의 이민 중지에서 1999년 까지

1) 1974년도 이민중지 선언

70년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프랑스가 취한 정책이 노동이민의 공식적 중단이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들의 본국 귀환을 장려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민 중지선언으로 외국인 수의 감소를 가져오는 효과를 거두게 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가족 재결합은 새로운 형태의 이민 즉 노동이민이 아닌 사회적 이민의 증

가를 불러오게 되며 외국인 노동자의 토착화를 가져오게 된다. 가족이민 불법이민이 성행하여 마그레브에서 유입되는 자, 아프리카 대륙의 흑인들, 아시아 중동 터키 등 다양한 지역 출신이 들어오게 된다.

2) 1981년 10월 27일 법

1981년 집권한 사회당 미테랑 대통령은 우파 정부의 자발적 귀국 혹은 강제 추방과 같은 상대적으로 강경한 정책을 일단락 지으며 이민자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민자에 대한 유입의 통제는 유지 하지만 프랑스 내의 정착한 외국인의 삶은 개선하는 인도적 정책을 펼쳐 나갔다.

- 불법 체류자라 해도 현재 안정적 직업이 있고 1981년 1월1일 이전에 프랑스에 입국했다는 증명만 있으면 체류를 합법화한다는 내용의 '비합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따른 법률'의 시행 -

그리하여 외국인 부모를 가진 아동이민자의 강제추방금지 조치와 불법 이민자의 합법화로 1981년 한해 합법화 된 외국인 노동자가 14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가족 재결합의 행정적 절차는 간소화 되었으며 이에 대한 권리가 재확인되었다.

<1984년부터 오랜 기간 프랑스에서 거주해 온 이민자에게 10년 기간의 체류 증(Carte de Resident)을 부여 하였다. 이는 10년간 프랑스에서 살았다면 프랑스에 완전한 동화가 이루어졌다는 정부의 확신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

3) 1984년 5월7일 법 : 이민의 정치화 시작

1980년대 초반의 상황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나 배척의 국민적 목소리가 나오던 시기이다. 특히 민족전선(FN - Front National)의 등장은 실업과 범죄율 증가, 국가 정체성의 상실 등 사회적 위협을 이민자에게 뒤집어씌우며 이민에 대한 유화정책을 펴던 사회당 정부의 정책들을 비난하며 국민을 호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반 이민 또는 이민자에 대한 국민들의 적대 감정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미테

랑 정부는 더 이상의 유화정책을 펴지 못하였다.

4) 1986년 반 이민적 정치적 상황

1986년 총선에서 우파 공화국 연합(RPR)과 중도 프랑스 민주주의 연합(UDF)이 연합하여 좌파 누르고 승리하여 제1차 좌우동거정부의 총리가 된 작 시락은 국민에 대한 선택적인 개념 공동의 삶에 대한 분명한 의사표현의 '의지주의'와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국적 개정을 제안한다.

법무부 국적과에서 제시한 내용은 출생 시 국적 자동부여 조항 삭제, 의지적 동기 확인, 위장결혼 적발, 다른 의심스러운 것들의 철저 확인 등인데 내무부 장관인 파스쿠아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이민에 대한 제한적인 법(파스쿠아법 - loi Pasqua)을 시행했는데 향후 이민자들의 지탄 받게 된다.

가장 이슈가 되는 점은 1889년 이래 프랑스 국적법의 토대가 되고 있던 출생지주의를 삭제한 것이다.

우파 정치인이나 국적법 개정을 찬성하는 시민들은 2세대 이민자녀들이 국적을 너무 쉽게 취득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프랑스 사회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사회와 문화에 적극적인 동화지지를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주장 중 하나는 프랑스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만 국적을 부여하고 외국인 부모에게서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는 귀화신청을 받아 심사 후에 국적을 부여하자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시민 공동체 내에서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시민권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단체의 요구도 거세었다. 이들은 좌파 정당과 연합한 각종 시민 단체들, 성직자, 학생들이었다. 결국 이들의 반대집회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지지 요구로 마침내 1987년 제안자인 시락 총리는 법안을 철회하게 된다.

5) 1988년 대선 정국 이후

작크 시락이 대선에서 패하고 결국 미테랑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국적법의 논의는 미테랑의 선택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된다. 미테랑은 국적에 관한 모든 논의를 중단시켰다. 80년대 초부터 미테랑의 사회당 정부는 이민자 집단을 포함한 모든 소수자 문화의 '다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면서 다원적 탈중심적인 정책을 시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슬람을 대표하는 공식기구를 조직하고, 아랍어 수업도 학교에서 실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리고 무슬림들의 사회적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1980년에서 1986년 사이에 이민자의 소수집단 위한 기금 (FAS- Fonds d'Action Sociale)에 예산을 배로 증액하여 지원하고 지원협회의 수도 4배로 늘리는 등 소수자 권익보호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6) 1993년 7월22일 법 - 히잡 사건의 후폭풍

잠정적 국적법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서 1989년 히잡사건은 다시 국적법의 재개정이란 논의가 재 점화되었다. 1993년 총선은 이민자 문제에 대하여 국민의 선택은 우파 정부 장악에 표심을 주었다. 2차 동거정부(미테랑 대통령, 발라뒤르 총리)가 태어났고 우파정당 중심의 국정운영이 되었다.

파스쿠아법의 제한적인 국적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그 내용 중 하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는 16세에서 21세 사이에 프랑스인 되겠다는 의지 선언(manifestation de volonte)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거친 후에 국적을 부여 받을 수 있게 하였다. 1973년 법안에서는 성년이 되면 별다른 조건 없이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 받았던 것인데 개정법에서는 공동의 삶에 대한 개인의 분명한 의지표현이 국적의 기본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법으로 뒷받침 한 것이다.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어오던 이민자 특히 불안정 하고 완전하지 못한 무슬림 이민자들을 동화하기 위한 강제적 성격을 띤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프랑스 국적취득의 기본원칙을 지켜오던 출생지주의를 서서히 축소하거나 삭제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프랑스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이전에는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었던 프랑스 국적을 2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에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국적법 개혁의 목적은 국적법 취득에 용이한 이런 저런 조건들을 폐지하거나 축소시키면서 국적의 취득조건을 강화하는데 있었다.

7) 1997년 P. Weil 보고서

1995년 작 시락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사회당 당수인 조스팽이 총리가 되면서 3차 동거정부가 형성되었다. 이전 두번의 동거정부에서는 우파가 정권을 장악하였기 때문에 이민법과 국적법의 법안들이 외국인과 이주 노동자의 국적취득에 불리한 조건들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형태는 이민자에게 보다 관용적인 좌파 정당이었다. 즉 사회당이 다수당으로 그동안 쟁점이 되어 온 국적법 논란을 종합적으로 개선 하고자 하였다.

조시팽 총리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관하여 연구의뢰를 맡겼던 베이(Patrick Weil) 보고서에 따르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숙지주의 원칙으로의 회귀, 의지선언의 폐기 등 이민자에게 유화된 정책들이 채택되기 시작한다.

불법 체류자에 강경했던 파스쿠아법은 드브레 법(loi Debre)으로 완화된 모습으로 개정되었다.(1997년 4월 27일 법) 불법 체류자라도 프랑스에서 태어난 청소년을 추방할 수 없는 조항을 삽입 등 불법체류자들을 인권존중의 입장에 비추어 시행하고자 한 것이다. 쥐페(Alain Juppe)가 총리였던 때는 이민자의 입국보다는 이미 입국한 불법체류자들의 처우문제에 관심을 돌렸다 불법으로 거주하던 많은 사람들이 '합법화 조치'(Regularisation, Circulaire du 24 juin 1997)의 시행으로 합법적 지위부여를 받았다. 이에 따라 그 가족들도 방문의 자격으로 프랑스로 들어오게 되었다.

8) 1998년 3월 16일 법 : 국적취득의 조건 완화

베이의 보고서에 따라 이루어진 1998년 국적법 개정은 문화적인 폐쇄 경향을 보였던 1993년 법안에 비하여 외국인에게 실질적이고 혜택이 부여되는 호의적인 조건들을 다시 보완하였다. 이민자 차별에 반대하는 통합정책을 재정비하였고 사회 및 경

제정책을 수정하였다. 사회당 정부는 정치적 이슈를 '이민'에서 '차별반대'로 전환시키기에 애를 썼다.

강요된 의지선언의 폐지라든지 부모가 5년간 프랑스에서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자녀의 국적취득의 조건이 되는 부모거주 조항의 삭제 같은 것이다.

비록 불법이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프랑스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면 영주권을 부여 주었다. 북아프리카 아이들의 이중속지주의 권리의 복구 등 출생지 주의로 회귀를 가져왔다. 이민자 부모에게서, 프랑스에서 태어난 자는 18세에 프랑스에 일상적으로 거주했다면 또는 불연속적이라도 11세 이후 최소 5년 동안 거주했다면 프랑스 국적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6세 이상은 거주 조건 충족한다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간단한 선언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13세 이상은 8세 이후 프랑스에 지속적으로 살았다면 부모의 동의 없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한편 이 법안은 결혼에 의한 국적취득의 유예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 하였다.

라. 2000년대 이민정책의 강경화

1) 2003년사르코지 법(Loi no 2003-1119 du 26 novembre 2003)

범죄에 대항하는 치안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치안부재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 우려를 종식하기 위함이다.

2) 2006년 7월24일 법 - 이주와 통합에 관한 법률

2005년의 소요사태로 프랑스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관용적 태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 프랑스에 10년 거주하면 불법체류자라도 영주권 부여하던 제도 폐지
- 경제이민 장려, 가족이민 제한
- 행정당국에 의해 체류 증 허가 거절되면 프랑스 영토 즉각 떠날 것
- 장기체류허가 얻기 위해서는 프랑스 공화국의 원칙과 가치 존중하는지 프랑스어를

충분하게 사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조건이 충족 될 것

1974년 이래 중단되었던 노동이민이 재개된 상태에서 이 법안으로 선별적 이민정책 도입 또 다른 모습은 프랑스어 능력시험의 도입과 추방에 관한 것이다. “프랑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프랑스를 떠나라 “ “ 우리는 프랑스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이민자로 받아들이겠다.” 는 의지 표명된다. 또한 재학 중인 자녀들이 있는 불법체류자 가족이 고국에 돌아갈 경우 커플 당 3,500유로 아이 당 1,000유로 이상에 해당 하는 비용을 지불해 줄 것을 제시하는 조항도 눈에 띈다. 프랑스에서 수년째 학업을 하고 있는 젊은 학생들까지 체류증이 없는 불법체류자라는 명목으로 추방함에 따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이로써 좌파 정치인들 및 종교인들 아프리카 이민자 사회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불거져 나왔다.

특히 불법체류자의 국경으로 강제추방(이전에는 “프랑스 영토를 떠날 것을 권고”) , 10년 이상 불법체류자에 대한 자동 영주권 부여 관행 폐지 등은 이민자 사회에 강한 우려를 안겨 주었다.

3) 2007년 11월 20일 법(이민통제, 동화 망명에 관한 법률)-선별적 이주정책의 시행

사르코지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이민, 통합, 국가 정체성, 공동 발전부(Ministere de l'immigration, de l'integration de l'identite nationale et du codeveloppement)를 신설하고 이 부서를 통하여 선별적 이주 정책, 가족 여부 검증위한 DNA 검사, 불법 이민의 통제를 위한 단속 쿼터제 실시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안을 내 놓았다.

가족 재결합 요건의 강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보호 유치기간을 12일에서 30일로 늘려 밀입국 불법체류 억제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결과로 10년간의 지속적 증가세에 있던 이주민의 수가 감소하였고 망명허가도 감소한다.

4) 2009년 유전자 법안

프랑스에 거주하는 가족과의 재결합을 희망하는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DNA 검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유전자 DNA) 법안이 반 인종단체들이 반 인권적 처사 나치 망령

의 부활이라고 비난과 시위에도 불구하고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였다. 또한 가족 재결합으로 프랑스로 이민을 신청하는 자는 프랑스 최저임금의 1-1.2배를 벌어들여야 한다는 재정요건도 포함되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출신의 이민 희망자들에게는 노골적인 차별이 될 위험의 소지가 많은 것이다. 이는 불법이민의 근절을 핑계삼아 이민의 조건들을 까다롭게 하여 이민을 강력하게 억제하려 한 것이다. 프랑스는 또 한번 새 이민 법안으로 “이민문제”를 정치 쟁점화 하였다.

3.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정책 평가 및 열린사회를 위한 제언

프랑스는 오랜 기간 동안 외국인을 자국민으로 받아들인 이민국가임을 상술한 국적법/이민법의 개정. 변경 추이를 통하여 알 수 있다. 19세기 이후 낮은 인구문제, 제 1, 2차 세계대전 직후의 국토재건 그리고 산업화로 이행되는 성장시점에 대규모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프랑스로 유입되었다. 이들의 유입과 정착은 프랑스의 인구정책에 안정을 주었으며 이들의 노동력은 프랑스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후 프랑스에 영구적으로 정주하게 된 이주 노동자들이 프랑스 구성원으로 되면서 프랑스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회가 되었다.

다문화 사회가 된 프랑스를 통합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위에서 살펴 본 대로 좌파 정부나 우파 정부냐에 따라 이민자에 대한 정책의 차이가 있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고 합법 이민자들을 프랑스 사회에 통합시킨다는 명제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렇듯 다문화주의보다 ‘동화’에 근거한 프랑스의 통합정책은 외국인이 프랑스에 살면서 프랑스의 사회 관습과 프랑스 국가의 기본 원칙을 습득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이에 맞게 적응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정책은 이민자들의 성격, 정치적 경제적 환경에 따라 변화해 왔음을 위에 서술에서 찾아 낼 수 있다. 프랑스 혁명이래 프랑스가 전통적 가치로 지켜 온 공화국 정신과 그에 따른 공화국 통합모델은 다양한 도전에 맞닥뜨렸지만 여전히 프랑스의 소중한 가치로서 인정받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프랑스 이민자들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그 목적이 프랑스의 언어와 역사 및 법 제도에 대한 이해, 평등과 권리 등 인권과 관련된 교육, 시민으

로서 참여 및 시민적 역량 강화, 직업 및 사회교육, 문화이해 등을 통해 자국민과 이민자들 사이에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러나 2005년의 프랑스의 소요사태가 보여주는 것처럼 외국인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프랑스식 관용을 통한 동화정책은 이민자가 동화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점, 동화되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분리와 배제로 인해 서로 다른 문화간의 충돌과 사회적 이질감이 증대됨으로써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이민자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며 소요의 주축을 이루는 무슬림 이민자들이 갖는 가장 큰 불만은 다른 유럽계 이민자들이나 프랑스인들보다. 월등히 낮은 생활수준과 삶의 질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존 사회 시스템의 전복이나 새로운 가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에 있어서 차별방지와 기회균등을 통한 문화적 다양성과 보편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보장받는 것이란 것이다.

그러므로 “히잡사건”이나 ‘프랑스 소요’사태는 무슬림 이민자들의 동화문제를 둘러싼 프랑스 사회의 분열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자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을 고수하려는 이민자 집단과 정.교 분리 원칙을 내세워 이들을 프랑스 사회에 동화시키려는 공화국 사이에 벌어지는 일종의 “문화전쟁”으로 규정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이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 한계를 살펴보는 작업은 현재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등의 증가로 ‘외국인 100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사회가 다른 문화와의 공존이라는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민족주의와 국가의 경계가 약화되고 경제 및 문화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는 국민국가의 영토에서 민족간 인종 간 융합의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 및 결혼이민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민자 2세, 3세에 이르면 국적 취득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프랑스가 공화주의의 기본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무슬림 이민자를 안정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망해 본다면 이상적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는 통합의 방식은 이민자들의 자발적 동화에 의한 통합의 기대이

다. 즉 자신이 원래 속했던 문화보다는 삶을 지속하는 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선호하면서 기꺼이 동화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는 이민자들의 동화 의지가 우선적으로 상정되어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동화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들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프랑스적인 동화주의라는 이민자 정책의 기본적 인식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상정한다면 이민자의 자발적 동화를 기대하는 다문화 공존을 위한 해법을 찾기에는 결코 쉽지 않다.

다문화 갈등의 해결은 특수한 사회적 영역마다 제각기 차이가 있기에 다문화주의 담론만이 무성 하게 된다. 이에 프레이저 (Nancy Fraser) 의 통합이론적 논리를 빌려오면 프랑스 이민자 통합의 갈등 해소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본 장에서는 프랑스에서의 다문화 공존을 기대하기 위해서 역시 인식론적이며 이론적인 프레이저의 두 차원에 의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즉 재분배의 문제와 인정의 문제이다.

첫째, 경제적 재분배의 정치이다. 결과의 평등이 필요하다.

무슬림의 열악한 경제적 조건들은 자원이나 부와 같은 물질적 재화를 할당하거나 직업과 같은 사회적 지위를 분배하는 분배적 정의를 필요로 한다. 경제적 조건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라는 기본적인 생존권과 밀접하게 연관되기에 우선적으로 국가가 해결해야 할 것은 제도적 규범과 규칙에서 야기되는 경제적 불평등의 개선이다.

둘째, 정치적 권리에서의 분배 약속이다. 즉 정치적 권리에의 수용이다.

정치적 권리의 수용과 타협은 소수집단과 국가 또는 사회집단 상호간에 이루어져야 할 약속의 지정을 말한다. 상호 존중 가운데 합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을 필요로 한다. 정치참여의 결과는 이민자 자신이 속한 국가공동체, 사회공동체, 운명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스스로 갖게 한다. 시민으로서의 참여는 자연스레 사회적 연대를 불러오고 구성원의 시민성을 갖추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이민자의 입장에서는 국가 정체성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정치적 권리의 수용에서 중요한 문제는 정치적 대표성의 허용이다. 국적을 갖지 않았지만 장기 체류증을 가지며 프랑스에 영구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의 투표권의 허용은 정치적으로 소외된 이민자를 통합하는 좋은 정책이 된다 하겠다.

셋째, 문화에 대한 인정 정치이다. 이질적 문화와의 공존으로 갈등이 표출된 오늘날 소수집단의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분배의 정치 못지않게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타문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무슬림 청소년들이 사회의 경계 밖에서 다른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외부의 시선, 외부의 인식, 차이의 강요 때문이다. 문화적 인정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조건이자 개인들이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얻게 되는 심리적 조건이다. 사회는 그 당연한 조건들을 다시 이민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문화적 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의 예로써 공공기관에서의 히잡착용 금지 같은 규정을 없애는 것이다.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인정을 행하는 것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넷째, 심리적인 상호인정이다. 재분배와 인정의 정치라는 두 차원의 실행은 정서적인 상호 인정이 뒷받침 되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심리적인 수용과 이해, 관용은 합리적 대화를 가져온다. 합리적 대화는 소통과 타협을 이끌어낸다. 소수집단이 배타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들이 사회에 갖는 항변과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그래야만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가 이들에게 요구하는 목소리를 진정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상호존중과 사회적 인정이 뒷받침된 대화와 타협은 성공적 다문화 사회를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 통합된 다문화사회를 위한 제언

다문화사회가 거슬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등 우리 사회의 소수 집단과 소수 문화는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소수 집단과 소수 문화를 한국의 주류 문화와 통합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향후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불안의 요인이 되고 말 것이다.

실제로 유럽의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상대적으로 민족적 정체성이 강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프랑스, 독일 등)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차별적 배제와 일방적 동화 정책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이러한 실패는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무슬림 소요로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들 국가,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이 과거의 일방적 동화를 목표로 한 이주자 프로그램에서 양방향적인 통합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화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일부 유럽 국가들은 (영국, 네덜란드 등)은 지나치게 다문화주의적 정책을 시도하다가, 사회 통합에 실패한 사례이다. 소수 집단과 소수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이를 주류 문화의 일부로서 통합시키는 데는 실패하였다. 서로 상이한 문화가 교류와 접촉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로 통합 및 발전해 나가기보다는 서로 분리된 채로 독립적인 형태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들 국가들은 현재 보다 통합 지향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해 나가고 있다.

앞에서의 논의에 근거할 때,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은 다음의 세 가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첫째는 양방향성이다. 사회통합이 서로 다른 문화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면, 사회통합 정책은 일방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양방향적인 교류와 접촉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화를 목적으로 한 주류사회 문화의 일방적인 교육이 초기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필요하겠지만, 프로그램의 큰 방향은 양방향적인 교류에 맞추어져야 한다.

둘째는 포괄성이다. 여기서 포괄성은 프로그램 내용의 포괄성과 대상의 포괄성을 모두 의미한다. 먼저 사회통합 정책과 프로그램의 내용은 단순한 언어 교육, 직업 교

육 및 문화 교육을 넘어서, 이민자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제도 교육, 민주시민 교육, 자본주의 교육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방적 교육뿐만 아니라 양방향적 교육과 교류를 포함해야 한다.

사회통합 정책 및 프로그램의 내용 뿐만 아니라, 대상도 보다 확대해야 한다. 현재는 주로 결혼이민자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남편과 자녀 등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사회통합은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진정한 사회통합은 주류 사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소수 집단의 문화를 관용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장기적, 단계별 접근이다. 사회통합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로 사회통합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사회통합의 여러 단계에 주목하여, 단계별로 적절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초기 적용 단계에서는 언어 교육과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추되, 시간이 갈수록 문화 교육과 교류를 강화하고, 더 높은 단계에서는 이들이 한국의 시민으로서 정체성과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 등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기정·변미희(2010),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정책 비교분석”, 「한국가족자원 경영학회지」, 14(3).
- 관계부처합동(2012), <2012 외국인주민정책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자료집.
- 김승권 외(2010),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정근 외(2012), “다문화정책: 동화에서 융화로”, CEO Information 제853호, 삼성경제연구소.
- 김혜순(2008),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42(2).
- 문경희(2007), 「호주의 이주·난민 청소년 정책」, 보건복지가족부 무지개청소년센터.
- 박세훈(2011), “한국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의 비판적 성찰: ‘다문화 도시정책’의 제언”, 「공간과 사회」 통권 제36호, 한국공간환경학회.
- 박정은(2007), 「다문화사회에서 생각하는 모어교육」, 일지사.
- 박정은(2009), “캐나다의 언어정책과 다문화주의: 공용어와 계승어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6(1).
- 서문희 외(2010),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지원 방안: 영유아·초등학생·중도입국자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 성상환(2010), 「다문화가정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신원무(2009), “인력의 다양성이 글로벌 경쟁력 되고 있다”, LG Business Insight(9.30-10.7).
- 신혜정(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안상수 외(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
- 안은미(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양계민 외(201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희정 외(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글로벌 인재양성 방안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 윤인진(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 로”, 「한국사회학」, 42(2).
- 윤인진(2012), “다문화사회의 공존과 통합 과제”, <다문화사회의 소통과 공존방안> 토론회 자료집,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정책네트워크.
- 이남철 외(2009), 「국제결혼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인재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로미·장서영(2010), “다문화국가 이민자 정착 정책 및 지원 서비스 분석: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4(1),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
- 이민경(2010), <이주가정 자녀 사회통합 정책>, Working Paper No.2010-03, IOM이민정책연구원.
- 이영주(2008), “다문화가족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 박사논문
- 이정민(2008), “한국사회의 다문화 교육방향성 고찰: 서구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8(2).
- 이혜승(2010),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0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이환성(2012), 「다부처 프로그램의 평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1-68.
- 전혜정(2008), 「국제결혼가정 자녀 실태조사 및 성장지원 방안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 정일선·배옥현(2011),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자녀 실태와 지원프로그램 개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정하성·우룡(200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조원권·정철원(2010), 「글로벌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문화가족의 효과적인 지원방안」,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 최홍 외(2010), “다문화사회 정착과 이민정책”, CEO Information 제756호, 삼성경제연구소.
- 홍기대(2011), “다문화 가정 학생 편견 감소를 위한 다문화교육 방향성 모색: 광주·전남지역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4).

정책연구 2012-3

한국 다문화가족 정책연구 III

발행	2012년 12월
발행처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주소	대전시 동구 자양동 155-3(300-718) 전화 : (042) 629-6570 팩스 : (042) 629-6574 http://www.kimcf.or.kr
인쇄처	종려나무 (042) 255-030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